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 책의 내용은 2019. 12. 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진행 중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http://whatsnew.moef.go.kr>

CONTENTS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72)

01 금융·재정·조세 (64)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기획재정부)	14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15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16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기획재정부)	17
•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	18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 양도소득세 과세 (기획재정부)	19
•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기획재정부)	20
•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21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22
•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기획재정부)	23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24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25
•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26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27
•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기획재정부)	28
• 주류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29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기획재정부)	30
•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기획재정부)	31
•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32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33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기획재정부)	34
•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35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36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37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기획재정부)	38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40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41
•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42
•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43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기획재정부)	44
• 접대비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45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46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기획재정부)	47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기획재정부)	48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49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50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기획재정부)	51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52
•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53
•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기획재정부)	54
•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기획재정부)	55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	56
•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기획재정부)	57
• 등유 등을 경우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기획재정부)	58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기획재정부)	59
•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기획재정부)	60
•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기획재정부)	61
•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62
•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기획재정부)	63
• 통고처분 면제 가능 (기획재정부)	64
•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구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기획재정부)	65
•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66
•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기획재정부)	67
•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기획재정부)	68
•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소득 3천만원 비과세→최대 8천만원 비과세) (해양수산부)	69
•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	70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금융위원회)	71
•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등급제→점수제) (금융위원회)	72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금융위원회)	73
•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74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위원회)	75
•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76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금융위원회)	77
•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78

02 교육·보육·가족 (19)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교육부)	84
•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교육부)	8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교육부)	86
•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87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보건복지부)	88
•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89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90
• 가족돌봄휴가 신설 (고용노동부)	91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92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93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여성가족부)	94
•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95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96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여성가족부)	97
•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98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	99
• 청소년의 정책·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100
•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병무청)	101
•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경찰청)	102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3 국방·병무 (14)

•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잠정) (국방부)	106
•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국방부)	107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국방부)	108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국방부)	109
•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국방부)	110
•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국방부)	111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국가보훈처)	112
•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 (국가보훈처)	113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병무청)	114
•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병무청)	115
•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병무청)	116
•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병무청)	117
•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병무청)	118
•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무청)	119

04 행정·안전·질서 (42)

•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기획재정부)	126
•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127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28
•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29
• 재사용 환한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30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1
•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132
•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3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4
•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135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 구매목표 비율 상향 (고용노동부)	136
•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137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138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139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여성가족부)	140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141
•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142
•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해양수산부)	143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144
•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	145
•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146
•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147
•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148
•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양수산부)	149
•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50
•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조달청)	151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경찰청)	152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경찰청)	153
•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	154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경찰청)	155
•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소방청)	156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소방청)	157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소방청)	158
•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소방청)	159
•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소방청)	160
•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소방청)	161
• 응·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특허청)	162
•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특허청)	163
•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특허청)	164
•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청)	165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020. 1. 1.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166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국민권익위원회)	167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5 문화·체육·관광 (12)

•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172
•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유소년)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173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174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175
• 국립공원 탐방인프라/프로그램 확충 (환경부)	176
•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해양수산부)	177
•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해양수산부)	178
•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해양수산부)	179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청)	180
•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문화재청)	181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문화재청)	182
•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문화재청)	183

06 농림·수산·식품 (31)

•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92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93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94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95
•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96
•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197
•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198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99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200
•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201
•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202
• 대체조식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03
•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204
•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농림축산식품부)	205
•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6
•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7
•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8

•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9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210
•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211
•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해양수산부)	212
•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해양수산부)	213
•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214
•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15
•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216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산림청)	217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218
•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산림청)	219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220
•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산림청)	221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산림청)	222

07 환경·기상 (25)

• 종아·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부)	227
•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환경부)	228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환경부)	229
•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환경부)	230
•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환경부)	231
•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환경부)	232
•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환경부)	233
•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환경부)	234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환경부)	235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환경부)	236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환경부)	237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238
•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환경부)	239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환경부)	240
•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 (환경부)	241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환경부)	242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

• 원도우7 기술지원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6
• 보안관계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7
•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8
•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259
•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산업통상자원부)	260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261
•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262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조달청)	263
•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방위사업청)	265
•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266
•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 (방위사업청)	267
•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방위사업청)	268
•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269
•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270
•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271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272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신규) (중소벤처기업부)	273
•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274

09 보건·복지·고용 (41)

• 임신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85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286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287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288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289
•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보건복지부)	290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291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292
•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보건복지부)	293
•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294
•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보건복지부)	295
• 청년저축계좌 신설 (보건복지부)	296
•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보건복지부)	297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보건복지부)	298
•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보건복지부)	299
•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 (보건복지부)	300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 (보건복지부)	301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보건복지부)	302
•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303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고용노동부)	304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305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고용노동부)	306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용노동부)	307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고용노동부)	308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310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11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312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313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14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고용노동부)	315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316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17
•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318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319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10 국토·교통 (6)

•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국토교통부)	331
•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	332
•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국토교통부)	333
•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국토교통부)	334
•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 (국토교통부)	335
• 모바일 승선권 확대 (해양수산부)	336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72)

기획재정부 (55)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14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15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16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17
•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18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 양도소득세 과세	19
•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20
• 지정지역(특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21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22
•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23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24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25
•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26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27
•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28
• 주류 과세체계 개편	29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30
•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31
•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32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33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34
•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35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6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7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38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40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41
•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42
•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43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44
• 접대비 한도 상향	45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46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47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48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49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50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51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52
•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53
•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54
•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55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56
•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57
•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58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59
•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60
•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61
•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62
•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63
• 통고처분 면제 가능	64
•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65
•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66
•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67
•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68
•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126

교육부 (3)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84
•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8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86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256
•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	257

국방부 (6)

•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잠정)	106
•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107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108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109
•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110
•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111

문화체육관광부 (4)

•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172
•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유소년)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173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174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175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7)

•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87
•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127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128
•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129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130
•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192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193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194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	195
•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196
•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197
•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198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199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200
•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201
•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202
• 대체조식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203
•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204
•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205
•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206
•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207
•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208
•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209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210
•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211
•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258
•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285

산업통상자원부 (8)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	131
•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132
•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	133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	134
•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실시	259
•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260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261
•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262

보건복지부 (21)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보건복지부)	88
•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89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90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86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287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288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289
•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290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291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292
•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293
•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294
•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295
• 청년저축계좌 신설	296
•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297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298
•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299
•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	300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	301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302
•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303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환경부 (26)

•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135
• 국립공원 탐방인프라/프로그램 확충	176
•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227
• 대기관리구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228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229
•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230
•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231
•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232
•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233
•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234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235
• 행정·공공기관 자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236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237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238
•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239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240
•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	241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242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243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244
• 가축분 퇴비 부속도 검사 제도 도입	245
•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246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247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248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확대	249
•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250

고용노동부 (20)

• 가족돌봄휴가 신설	91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92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 구매목표 비율 상향	136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304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305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306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307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308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310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311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312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313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314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315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316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317
•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318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319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320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321

여성가족부 (14)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93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94
•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95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96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97
•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98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99
• 청소년의 정책·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100
•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137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138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139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140
•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	322
•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323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5)

•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331
•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332
•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333
•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334
•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	335

해양수산부 (17)

•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소득 3천만원 비과세→최대 8천만원 비과세)	69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141
•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142
•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143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44
•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145
•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146
•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147
•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148
•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149
•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177
•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178
•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179
•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212
•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213
•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251
• 모바일 승선권 확대	336

중소벤처기업부 (4)

•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270
•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271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272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신규)	273

국가보훈처 (2)

- | | |
|-----------------------------|-----|
|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 112 |
| •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 | 113 |

식품의약품안전처 (7)

- | | |
|------------------------------|-----|
| •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 150 |
| •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 214 |
| •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실시 | 215 |
| •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 216 |
| •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자원체계 구축 | 324 |
| •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 326 |
|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 327 |

조달청 (2)

- | | |
|---------------------|-----|
| •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 151 |
|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 263 |

병무청 (7)

- | | |
|-------------------------------------|-----|
| •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 101 |
|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 114 |
| •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 115 |
| •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 116 |
| •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 117 |
| • 불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 118 |
| •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 119 |

방위사업청 (5)

- | | |
|--|-----|
| •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 265 |
| •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 266 |
| •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 | 267 |
| •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 268 |
| •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 269 |

경찰청 (5)

- | | |
|------------------------------|-----|
| •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 102 |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 152 |
|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 153 |
| •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 154 |
|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155 |

소방청 (6)

- | | |
|----------------------------------|-----|
| •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 156 |
|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 157 |
|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158 |
| •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 159 |
| •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 160 |
| •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161 |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문화재청 (4)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180
•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181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182
•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183

산림청 (6)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217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218
•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219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220
•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221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222

특허청 (4)

•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162
•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163
•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164
•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165

공정거래위원회 (1)

•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274
--------------------------	-----

금융위원회 (9)

•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됩니다.	70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71
•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등급제→점수제)	72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73
•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74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75
•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76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77
•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78

국민권익위원회 (2)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020. 1. 1. 시행	166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167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72)

2020년 1월 (138)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기획재정부)	14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15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16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기획재정부)	17
•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	18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 양도소득세 과세 (기획재정부)	19
•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기획재정부)	20
• 지정지역(특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21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22
•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기획재정부)	23
• 최다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24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25
•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26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27
•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기획재정부)	28
• 주류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29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기획재정부)	30
•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기획재정부)	31
•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32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33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기획재정부)	34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36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37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기획재정부)	38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40
• 설비투자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41
•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42
•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43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기획재정부)	44
• 접대비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45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46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기획재정부)	47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기획재정부)	48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49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50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52
•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53
•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기획재정부)	54
•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기획재정부)	55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	56
•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기획재정부)	57
•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기획재정부)	58
•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기획재정부)	61
• 통고처분 면제 가능 (기획재정부)	64
•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기획재정부)	67
•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기획재정부)	68
• 원도우7 기술지원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6
•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국방부)	107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국방부)	108
•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국방부)	111
•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172
•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유소년)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173
•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87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94
•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96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99
•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6
•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7
•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8
•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9
•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211
•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85
•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8
•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259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90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287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288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289
•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보건복지부)	290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291
•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보건복지부)	293
•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294
•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보건복지부)	297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보건복지부)	298
•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보건복지부)	299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 (보건복지부)	301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보건복지부)	302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환경부)	229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환경부)	235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환경부)	236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238
•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환경부)	239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환경부)	240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환경부)	242
•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환경부)	246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환경부)	247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확대 (환경부)	249
• 가족돌봄휴가 신설 (고용노동부)	91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92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 구매목표 비율 상향 (고용노동부)	136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고용노동부)	304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305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고용노동부)	306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고용노동부)	308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310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11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312
• 60세 이상 교령차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313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고용노동부)	315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316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17
•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318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319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고용노동부)	320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고용노동부)	321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93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여성가족부)	94
•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95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여성가족부)	97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	99
• 청소년의 정책·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100
•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137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139
•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322
•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국토교통부)	333
•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142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144
•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	145
•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양수산부)	149
•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해양수산부)	177
•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해양수산부)	178
•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270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272
•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감치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216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병무청)	114
•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병무청)	115
•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병무청)	116
•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병무청)	118
•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무청)	119
•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266
•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 (방위사업청)	267
•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269
•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소방청)	159
•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문화재청)	183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산림청)	217
•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76
•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78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020. 1. 1.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166

2020년 2월 (11)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93
•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132
•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환경부)	250
•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	332
•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해양수산부)	143
•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146
• 모바일 승선권 확대 (해양수산부)	336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신규) (중소벤처기업부)	273
•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 (국가보훈처)	113
• AI(챗봇) 기반,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병무청)	117
•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방위사업청)	265

2020년 3월 (16)

•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교육부)	8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교육부)	86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국방부)	109
•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국방부)	110
•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29
•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산업통상자원부)	260
•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262
• 가축분 퇴비 부속도 검사 제도 도입 (환경부)	245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314
•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여성가족부)	323
•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50
•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병무청)	101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경찰청)	152
•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	154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경찰청)	155
•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특허청)	163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10)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기획재정부)	59
•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기획재정부)	60
•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기획재정부)	65
•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66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1
• 청년저축계좌 신설 (보건복지부)	296
•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환경부)	228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환경부)	237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부)	248
•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소방청)	161

2020년 5월 (11)

•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92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용노동부)	307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여성가족부)	140
•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국토교통부)	331
•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국토교통부)	334
•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 (국토교통부)	335
•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324
•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문화재청)	181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문화재청)	182
•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274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국민권익위원회)	167

2020년 6월 (6)

•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03
•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3
•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시행 (환경부)	232
•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147
•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271
•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산림청)	219

2020년 하반기 (27)

•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62
•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기획재정부)	63
•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기획재정부)	126
•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127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30
•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197
• 농어촌민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198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200
•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201
•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202
•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농림축산식품부)	205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210
• 원유(原乳) 국가전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14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34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261
•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보건복지부)	295
•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303
•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환경부)	234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환경부)	244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141
•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해양수산부)	179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소방청)	157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소방청)	158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218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220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금융위원회)	71
•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등급제→점수제) (금융위원회)	72

기 타 (53) : 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날짜 미정)

•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3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기획재정부)	51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교육부)	84
• 보안관계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7
•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잠정) (국방부)	106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174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175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28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95
•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204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보건복지부)	88
•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89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286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292
•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 (보건복지부)	300
•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135
• 국립공원 탐방인프라/프로그램 확충 (환경부)	176
•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부)	227
•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환경부)	230
•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환경부)	231
•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환경부)	233
•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 (환경부)	241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환경부)	243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96

•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98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138
•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소득 3천만원 비과세→최대 8천만원 비과세) (해양수산부)	69
•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148
•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해양수산부)	212
•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해양수산부)	213
•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해양수산부)	251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국가보훈처)	112
•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15
•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326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327
•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조달청)	151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조달청)	263
•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방위사업청)	268
•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경찰청)	102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경찰청)	153
•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소방청)	156
•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소방청)	160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청)	180
•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산림청)	221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산림청)	222
•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특허청)	162
•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특허청)	164
•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청)	165
•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	70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금융위원회)	73
•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74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위원회)	75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금융위원회)	77

<http://whatsnew.moef.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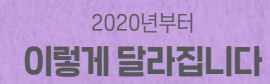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0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01 금융·재정·조세
- 02 교육·보육·가족
- 03 국방·병무
- 04 행정·안전·질서
- 05 문화·체육·관광
- 06 농림·수산·식품
- 07 환경·기상
-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09 보건·복지·고용
- 10 국토·교통



Education ·
Childcare · Family

금융·재정·조세



1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14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잠정)

Before

'20년부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After



3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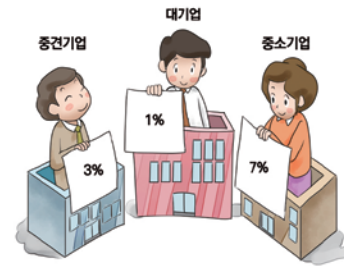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19년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19.12.31.) 및 공제율이 대·중견·중소 (1%/3%/7%)이었습니다.



After

'20년부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21.12.31.) 연장 및 공제율을 대·중견·중소 (2%/5%/10%) 한시 상향합니다.



•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 상향은 1년간 적용('20년 2%, '21년 1%)

2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1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꾸준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After

'20년부터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 세액 감면 대상 배제 :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

4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17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이었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가입대상 제한
 -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

After



Infographic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18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20년부터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도입합니다.

After



6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20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잠정)

Before

지금까지 신축건물에 대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없이 신고 가능하였습니다.



After

'20년부터 신축·중축(중축의 경우 85㎡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건물에 대해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7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21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사업용토지는 중과대상이었습니다.



After

'20년부터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2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잠정)

Before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제도	개정내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10년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범위 확대	소분류 내 변경 허용

After

'20년부터 가업상속기업이 탄력적인 경영여건 변화에 맞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도	개정내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7년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범위 확대	• 중분류 내 변경 허용 • 중분류 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 허용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유지의무 완화	• 자산처분비용 산정시 예외범위 확대 - 업종변경에 따라 기계설비 등 대체취득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유지의무 완화	• 중견기업 의무 완화 •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 • 고용유지의무 이행시 총급여액 기준 사용 가능

Infographic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9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23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잠정)

Before

'20년부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행위의 시기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까지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탈세·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분
- 사후관리기간 후 행위: 적용대상이 아님

After



11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25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잠정)

Before

지금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8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After

'20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0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24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잠정)

Before

지금까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행		
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용		
기업규모	일반 기업	중소 기업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하	20%	10%
50% 초과	30%	15%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 배제(조특법)		



After

'20년부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률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율을 폐지하는 등 주식할증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정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구분	일반 기업	중소 기업
할증률	20%	0%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 (상증법에 반영)		



12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26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잠정)

Before

지금까지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다른 단기적 현금확보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구분	현행
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억원 이하 중견기업
피상속인	• 10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 (상장 30%, 비상장 50%) •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상속인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기업 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After

'20년부터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다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대상기업	• 중소기업 • 전체 중견기업
피상속인	• 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 (상장 30%, 비상장 50%) •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상속인	• (사전 기업종사 요건 삭제)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연부연납특례)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10년 분납, 50% 이상 : 20년 분납(일반 연부연납) 5년 분납

Infographic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3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27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을 사용하여 했습니다.



After

'20년부터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자금사용 기한이 확대됩니다.



15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29

주류 과세체계 개편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잠정)

Before

지금까지 전 주종에 대해 종가세 방식으로
주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종가세 : 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After

'20년부터 맥주·탁주 두 주종에 한해 종량세
과세체제로 전환합니다.

• 생맥주 세율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의 물가 연동



• 종량세 : 용량이나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

14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28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잠정)

Before

지금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After

'20년부터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16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30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승용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매 시
개별소비세(출고가의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부가가치세(최종소비자가의 10%) 부과

After

'20년부터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또는 수출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개세세 등 143만원 한도)됩니다.



• 지원대상: '09.12.31.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
'19.6.30. 기준으로 등록하고 소유하고 있는 자

17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69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시행일 : 2020년 상반기

Before

현재 어로·양식을 합하여 소득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교세됩니다.



After

'20년부터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 5천만원, 양식소득 3천만원까지 비교세됩니다.



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원*까지 비교세됩니다.

* (현행) 3천만원(어로·양식 합산) 초과세

* (개선) 최대 8천만원(어로 5천+양식 3천) 초과세

18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70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이상 (부부 중 연장자) 으로 변경됩니다

시행일 : 2020년 1분기 중

Before

'20년부터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됩니다.

•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After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55세 이상 가입

‘주택연금’



*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연금지급액과 보증료(이자 포함)의 총 합계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19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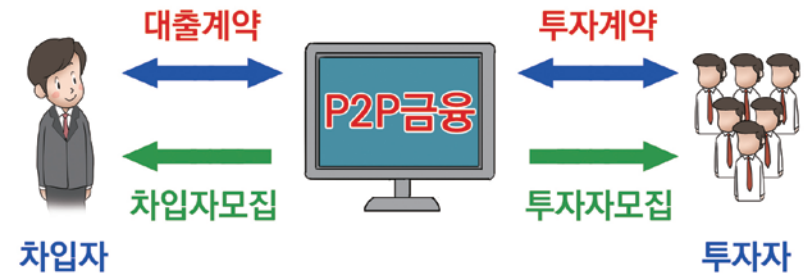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7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시행일 : 2020년 8월 27일

After

-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P2P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영과 (☎ 044-215-4153)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 추진배경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
 -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 가능
- 시행일 2020년 1월 1일(개정안 국회심의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되었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 다만, 서비스업 중 ①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②고소득·고자산 업종**, ③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 도·소매업 등
 - ** 전문 서비스업(변호사·의사 등),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 *** 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서비스산업 혁신 전략('19.6월)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19.7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추진배경 창업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
 - 현행 : 148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 개정 : 148개 + 97개(추가) = 245개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다만,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은 지속 적용 배제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19년→'21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기존의 공제율(대·중견·중소, 1%/3%/7%)이 대기업('20년 2%, '21년 1%)과 중견·중소기업('20·'21년, 5%/10%)으로 구분하여 각각 상향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가입대상을 제한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이었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 또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19.12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 추진배경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
- 주요내용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 ① 적용기한: '19.12.31
 - ② 공제율: 대·중견·중소(1%/3%/7%)
 - 개정 : ① 적용기한: '21.12.31
 - ② 공제율: 대·중견·중소(2%/5%/10%)
 - 다만,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 상향은 1년간 적용('20년 2%, '21년 1%)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 추진배경 취약계층 지원 취지에 맞게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가입대상을 제한
- 주요내용
 - 적용기한 1년 연장
 - 현행 : 2019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20년 12월 31일까지
 - 가입대상 제한
 -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도입합니다.

-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 투자액 5천만원을 한도로 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 다만,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1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특례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추진배경** 국민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
- **주요내용**
 - (적용대상)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및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 (과세특례) 투자액 5천만원 이하 9% 분리과세
 - (사후관리) 투자자 3년 미만 투자 시 감면세액 추징, 10% 가산세 부과
 - (적용기한) '21.12.31.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 양도소득세 과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은 영업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촉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

- 다만, 이촉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 양도소득세 과세

- **추진배경** 부동산과 분리하여 거래하기 어려운 이촉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 방법 합리화
- **주요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 다만, 이촉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신축·증축일(증축의 경우 85㎡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시 실질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 ● (적용대상)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 시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는 건물 ● (가산세율) 환산가액의 5%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적용대상) 신축·증축(85㎡ 초과 증축에 한함) 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 취득일·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는 건물 ● (가산세율)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5%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 (지정지역 외) - 기본세율* + 10%p 중과 ● (지정지역 내) - 기본세율* + 20%p 중과 * 기본세율: 6% ~ 42% 〈단서 신설〉	■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분은 20% 중과대상 배제 ● (지정지역 외) - 기본세율* + 10%p 중과 ● (지정지역 내) - 기본세율* + 20%p 중과 * 기본세율: 6% ~ 42% -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20%p 중과배제 * 10%p 중과만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으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추진배경**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사례 방지
- **주요내용** 신축·증축(85㎡초과 증축에 한함)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 **추진배경**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
- **주요내용**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 적용 배제(10% 중과만
적용)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 도	개 정 내 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 현행 10년→ 7년으로 조정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범위 확대	●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 → 중분류 내 변경 허용 ● 중분류 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승인을 거쳐 허용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유지의무 완화	● 자산처분비율 산정시 예외범위 확대 - 업종변경에 따라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유지의무 완화	● 중견기업 의무 완화 -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기준인원의 120% → 100% ●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가능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행위의 시기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까지입니다.

탈세·회계부정행위 시기	형 확정 시기	효과
공제 전 행위	가업상속공제 전	공제 배제
	가업상속공제 후	추징
사후관리기간 중 행위	사후관리 기간 중	추징
	사후관리 기간 이후	추징

* 사후관리기간 후 행위: 적용대상이 아님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탈세·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 추진배경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원
-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사후관리 기준 완화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 추진배경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 강화
- 주요내용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률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율을 폐지하는 등 주식할증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 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최대주주 지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50%이하	20%	10%	할증률	20%	0%
50%초과	30%	15%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 배제(조특법)			*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상증법에 반영)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인상됩니다.

* (제도개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이면서 함께 동거한 소유주택을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 (종전)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8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 (개정)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 추진배경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 주요내용 할증률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 할증배제 영구화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추진배경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
- 주요내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연부연납특례)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10년 분납, 50% 이상: 20년 분납(일반 연부연납: 5년 분납)

구분	현행	개정
대상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체 중견기업
피상속인	·10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 (상장 30%, 비상장 50%)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 (상장 30%, 비상장 50%)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상속인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사전 가업종사 요건 삭제) ·(좌 동)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 추진배경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 완화
- 주요내용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 및 요건 완화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 (제도개요)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 적용

- (종전)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
- (개정)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자금사용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추진배경 세대간 자금 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
- 주요내용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 확대
 -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 확대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제도개요) 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

- (종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 (개정)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3자명의 재산의 상속·증여 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있음을 안 분부터 적용하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 추진배경 포착이 매우 어려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 합리화
- 주요내용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주류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됩니다.

-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맥주 : (기존) 출고가의 72% → (개정) ㄹ 당 830.3원
 - 탁주 : (기존) 출고가의 5% → (개정) ㄹ 당 41.7원
-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됩니다.
-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 다만,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 1일 시행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주류 과세체계 개편

- 추진배경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맥주·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
 - (주세율) 맥주 : 830.3원/ ㄹ 탁주 : 41.7원/ ㄹ
 - 생맥주 세율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의 물가 연동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 * 다만,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 1일 시행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4)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허용됩니다.

- 현재는 기한 후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나
- 앞으로는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내용을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추진배경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산업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09.12.31. 이전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19.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자
 - 지원내용 :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한도 100만원)
- 시행일 2020년 1월 1일~2020년 6월 30일(6개월)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기한 후 신고자에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 추진배경 납세자 권익 보호
- 주요내용 기한 후 신고자에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 시행일 2020년 1월 1일(개정안 국회심의중)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서비스 R&D 분야에서는 자체 R&D 비용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탁·공동 R&D 비용도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 다만, 서비스 R&D는 그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통상적인 경영개선활동과의 구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어 과학기술과 결합*된 위탁·공동 R&D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예시)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R&D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19.7월)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일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서비스 R&D 비용으로서 위탁·공동 R&D 비용을 추가 (다만,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서민 주택마련 지원
- 주요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 2019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1)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어느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가 가능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어느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 그 결과, 실제 발생한 순소득보다 높은 세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어느 한 쪽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며 실제 순소득에 맞는 과세가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주식 또는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 추진배경 실제 순소득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양도차손 발생시 양도소득과 통산 허용
- 주요내용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던 것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을 확대합니다.

- * (계산서 부실기재)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1%
(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0.5%
(거짓계산서)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 2%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공급일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공급가액 0.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공급가액 0.5%
-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적용하던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합니다.
 - 다만,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등은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또한,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업자도 사업자로 의제하여 등록한 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재화·용역을 거래하고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 추진배경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 주요내용
 - 기존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 현행 : 복식부기의무자
 - 개정 :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거래없이 계산서를 수취·발급한 사업자(단,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제외)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5)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현행	개정		
		50세 미만	50세 이상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700만원)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12%

*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현행) 연 1,800만원 이내 → (개정)연 1,800만원+ISA 만기시 계좌금액

**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추가납입 당해연도에만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 **주요내용**
 -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추가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됩니다.
- 2020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주요내용**
 - 비과세 한도·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현행 :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연간 2천만원 한도)
 - 개정 :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 한도)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고,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등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일부 확대 하였습니다.

- 점증구간*인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 (단독) 총급여액 등 400만원 (홑벌이) 700만원 (맞벌이) 8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가구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8.21 ~ 9.10 → 9.1 ~ 9.15
 - (하반기 근로장려금) 2.21 ~ 3.10 → 3.1 ~ 3.15
- 또한 신청자 편의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및 제도 정비

- 주요내용 ①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

소득 구간	종전	개정
단독 가구 400만원 이하	3만원	10만원
홑벌이 가구 7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800만원 이하		

- ②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가구 인정

종전	개정
70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 * 부모 각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 * 직계존속 각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 ③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종전	개정
● (상반기 근로장려금) 8.21 ~ 9.10 ● (하반기 근로장려금) 2.21 ~ 3.10	● (상반기 근로장려금) 9.1 ~ 9.15 ● (하반기 근로장려금) 3.1 ~ 3.15

- ④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423)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게는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 됩니다.

- 기존의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이법 시행이후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기준내용연수의 50%(대기업)·75%(중견·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현행

- 대상자산 : 2018.7.1.~2019.12.31. 취득한 다음의 자산
 - 중소·중견기업 → 설비투자 자산* 전체
 -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 직접사 용되는 경우 한정)
 -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19.7.3~'19.12.31 취득분)

■ 개정 : 적용기한 연장('19.12.31. → '20.6.30.)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추진배경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게 추가적인 혜택 부여
- 주요내용
 - (기존)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 (개정)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소득세 감면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 연장

- 추진배경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주요내용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20.6.30.까지 연장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공급-수요기업간 협력모델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22.12.31.까지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취득가액 5%)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 적용대상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
- 출자범위 :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
- 사후관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정
 - 유상증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내국법인이 지분취득 후 5년 이내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처분주식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액만 추정)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수요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유상증자에 공동으로 참여 시 지분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신설
- 시행일 2020.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소재·부품·장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2.12.31.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M&A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 적용대상 :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 인수방법 : 주식취득 및 자산·사업양수
- 공제율 : 5% (중견 7%, 중소 10%)
- 적용요건(다수의 내국법인이 공동인수시 지분율 합산) :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경영권) 이상
 -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사후관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정
 -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피인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지분비율이 인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보다 낮아지는 경우(50% 이상 유지 시 줄어든 비율 상당액만 추정)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소재·부품·장비 M&A를 통한 수급 원활화
-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
- 시행일 2020.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3)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인상(2% → 5%)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접대비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였습니다.

■ 기본한도 :

- 일반기업 : 1,200만원
- 중소기업 : 2,400만원 →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

〈현 행〉		〈개 정〉	
수입금액	한 도	수입금액	한 도
100억원 이하	0.2퍼센트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 초과분의 0.1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 초과분의 0.2퍼센트)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 초과분의 0.03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500억 초과분 의 0.03퍼센트)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 추진배경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
- 주요내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율 2%에서 5%로 인상
- 시행일 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 한도 상향

- 추진배경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 주요내용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 시행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출연금의 10%) 대상 출연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22.12.31.까지 일몰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적용대상 :

-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적용대상 확대 :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

■ 적용기한 : '19.12.31. → '22.12.31.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 추진배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 주요내용 상생협력 출연금 등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추가
- 시행일 2020.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한 경우에도 전액 손금인정되는 금액을 상향(1,000만원 → 1,500만원)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0년 1월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추진배경 조세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1,000만원→1,500만원)
- 시행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박물관 등 시설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분납특례가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됩니다.

■ 동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현 행	개 정
● 박물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특례 ● (적용대상)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 ● (적용요건)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중전 시설)를 양도 * 신규시설 개관일부터 2년 내에 중전시설 양도 또는 중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신축하는 경우 3년) ● (양도세 특례)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 (적용기한) '19.12.31	● 특례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양도세 특례)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 '22.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 **추진배경**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박물관 등의 시설이전 지원
- **주요내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박물관 등 시설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3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확대되고 동 규정이 2022.12.31.까지 연장 적용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분납특례를 확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현 행	개 정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 요건) -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 -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 *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 ● (특례 내용) - 2년 거치, 2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 (적용기한) '20.12.31.	● 요건 완화 및 분납특례 확대 -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 또는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 ● (특례 내용) -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 (좌 동)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지원
-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및 요건 완화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분납특례를 확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현 행	개 정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분납특례 확대
(적용 요건) - 공익사업시행으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좌 동)
(특례 내용) 3년 거치, 3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특례 내용)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적용기한) '21.12.31.	(좌 동)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50~70%)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주택까지만 적용됩니다.

■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용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적용 요건)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	(좌 동)
(과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이상 임대: 50% 10년 이상 임대: 70%	
(신설)	(적용기한) '22.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된 주택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 추진배경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이전 지원
- 주요내용 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분납특례 확대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기한 신설

- 추진배경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
-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50~70%)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주택에 한하여 적용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합니다.

- (적용요건)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는 경우
-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 (종전) 양도소득세 15% 감면 또는 과세이연
 - (개정)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 (종전) 자산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
- (추가)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기부받는 공익법인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추진배경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
- 주요내용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인상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 추진배경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기부받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외부회계감사 대상으로 추가
- 시행일 2020.1.1(잠정)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 * (현행) 신탁수익만 인출. 단,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용도로 신탁원금 인출 허용
 - 위탁자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조부모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 (현행) 증여재산을 장애인 본인이 위탁하는 경우(자익신탁)만 허용
-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하는 개정내용은 2020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위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 추진배경 장애인 지원
-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의 신탁원금 인출 허용 및 위탁자의 범위 확대
- 시행일 (원금인출) 2020년 상반기 적용 예정 (타익신탁) 2020년 1월 1일(잠정)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 추진배경 납세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의무자를 (현행) 위탁자에서 (개정) 수탁자로 변경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소규모 개인음식점사업자(공급가액 2억원 이하)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특례 공제율(8/108→9/109)이 21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음식점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에서 2/102로 축소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2%에서 1%로 축소하였습니다.
 - * 본점과 지점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지점에서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발급한 경우
-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다 기재한 부분에 한하여 가산세가 2% 부과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등

- 추진배경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소규모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기한 2019년말 → 2021년말
 - 과세유흥장소 경영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4/104 → 2/102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 추진배경 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혼란 방지 및 권익보호
- 주요내용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2% → 1%
 - 과다기재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복적용 배제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 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부터 적용됩니다.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 공제율이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여 축소됩니다.

■ (현행) 매월 제조장 반출수량의 0.5% → (개정) 매월 제조장 반출수량의 0.2%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등유 등을 경유 차량 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 추진배경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
- 주요내용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할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판매분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 추진배경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 등을 감안하여 '01년 이후 유지되어 온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실화
- 주요내용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행 0.5%에서 0.2%로 축소
- 시행일 2020년 4월 1일(잠정)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와 (☎ 044-215-4416)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에 불법행위(예: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 포탈죄로 처벌합니다.

- 구매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매대행자가 관세를 편취한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 : 미납 관세를 구매자(관세법 상 납세의무자(화주))로부터 추징
 - 개정 : 미납 관세를 구매대행자에게 추징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 추진배경 구매대행업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 주요내용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 등을 받은 후에 불법행위(예: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
- 시행일 2020년 4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기획재정부 관세제도와 (☎ 044-215-4411)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합니다.

- 중첩적으로 운영되던 비슷한 두 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와 가산금[(미납세액 × 3%)⑥+ 매 1개월마다 월 0.75%⑦] 별도 운영
 -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 (⑦+⑧) + 3% (⑥)}]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추진배경 납세 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 주요내용
 - 중첩적으로 운영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현행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와 가산금[(미납세액 × 3%)⑥+ 매 1개월마다 월 0.75%⑦] 별도 운영
 -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 (⑦+⑧) + 3% (⑥)}]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합니다.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 절차 : ①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1차 세관, 2차 관세청) → ②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③결과 통지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물품 적발 등의 공익목적에 위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 다만, 수출입 관련 법령(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총괄
 -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관세조사에 대한 불복 등) 심의
 -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신설
- 시행일 2020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 추진배경 공익목적의 선별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지원
- 주요내용
 -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부담
 - 공익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검사하는 경우
 - 검사결과 수출입법령(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2020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통고처분 면제 가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및 범칙금 부담능력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면제 기준은 범칙금 30만원(추징금·몰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정하며, 통고처분의 면제 여부는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등의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 연고관계 선전 금지 외에도 등록 및 징계 시에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매년 수입 업무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 **추진배경**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부담을 감면
- **주요내용**
 - 통고처분의 면제 가능 근거 마련
 - 신분, 전과, 법 위반 동기,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면제 가능
 - 면제 기준 : 범칙금 30만원(추징금·몰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 **추진배경**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비위 사전 방지
- **주요내용**
 - 관세사의 의무 신설
 -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 등록 및 징계 시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 기록
 - 수입 업무실적 관세사회 제출
- **시행일** 2020년 4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215-447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됩니다.

- (변경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변경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잠정, 시행령 개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이내
 - ※ 품목분류 변경 이외의 사유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적용(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215-4472)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수입자가 적용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 등으로 인한 추징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 추진배경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수입자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 변경전 신청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 변경후 신청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잠정) 이내
- 시행일 2020년 4월 1일(잠정)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 허용

- 추진배경 관세율이 동일한 경우, 적용 세율의 종류를 수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자의 선택권 보장 및 권리구제
- 주요내용
 - 수입물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 적용방법
 -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세율이 상이한 경우 : 낮은세율 적용
 - 양자가 동일한 경우 : 수입자가 적용세율 선택 가능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215-4472)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이 수입자의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됩니다.

*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

** 납부 전에 신고한 세액을 정정

■ 또한,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부과하던 과태료가 폐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세액 과다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 **추진배경**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적 혼선을 줄이고 수입자 권리구제
- **주요내용**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로 인하여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 (변경전)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변경후)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여부 선택가능, 미이행시에도 과태료 없음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소득 3천만원 비과세→최대 8천만원 비과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200-5431)

현재 어로·양식을 합하여 소득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020년 상반기(잠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 5천만원, 양식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현행) 3천만원(어로·양식 합산) 비과세 → (개선) 최대 8천만원(어로 5천+양식 3천) 비과세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12.11)

어업인 소득세 개요

- **근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일** 2020년 상반기(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23)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됩니다.

-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연금지급액과 보증료(이자 포함)의 총 합계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 ('19.11.13일 배포)

주택연금의 가입연령 인하

- 추진배경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 공백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의 노후소득 보장
- 주요내용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변경
- 시행일 2020년 1분기 중(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02-2100-2536)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수수료 수취시 준수사항 및 이용자 보호·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의무 사항 등이 법적으로 규율됩니다.
-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하여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대출채권 도산절연 등의 제도도 도입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산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연계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80% 이하 시행령 규정)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됩니다.
- 해당 업권 법령을 준수하는 내에서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관련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법 시행

- 추진배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주요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 도입
- 시행일 2020년 8월 27일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등급제→점수제)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5)

2020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됩니다.

- 점수제 전환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유연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 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 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점수제 전환 후 신용정보회사(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들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됩니다.

-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점수 등을 활용한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차별화된 여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
(등급제→점수제)

- 추진배경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 추진
- 주요내용 개인신용평가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
- 시행일 2020년 하반기 중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00-2945)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험약관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만들 예정입니다.

* (예) ①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등 주요정보 쉽게 찾기(해당 조문의 쪽 번호 등 표시)
②시각화된 약관요약서, 가나다順 특약색인 등의 활용방법 등

-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명을 정비하겠습니다.

-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등의 부가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 개선내용은 2020년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보험약관 쉬워지고 착해집니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 추진배경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마련
- 주요내용
 -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마련, '약관이용 가이드북' 신설
 - 소비자가 오인가능성이 높거나 보장내용이 다른 보험상품명을 정비
 -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등의 부가 제한, '맞춤형 약관' 교부
- 시행일 2020년 중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 02-2100-2991)

소비자 신용카드에 연동된 자동납부를 한번에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 2019년 12월 30일(잠정)부터 소비자의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

※ '20년 말부터는 불필요하게 등록된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타 카드로 옮길 수 있는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3)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24%) 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하게 되어 채무자 분들이 더 이상 불법적인 추심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드립니다.

■ 또한,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동 지원 사업은 2020년 1/4분기 중 시행 예정으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감원(☎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별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및 지부, ☎ 132)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19.12.30. 보도예정)

카드 자동납부 조회서비스 시행

- **추진배경** 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이 확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가 없음
- **주요내용**
 -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19.12.30~)
 - ※ 불필요해진 자동납부는 즉시 해지 및 타 카드로 자동납부 이동('20.12월~)
- **시행일** 2019년 12월 30일(잠정, 시스템개발중)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0년 1/4분기 보도예정)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소득 취약채무자의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에 대한 법률구제 활성화
- **주요내용**
 - 미등록대부·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관련소송(반환청구 등) 대리 지원
- **시행일** 2020년 1/4분기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02-2100-2662) /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 02-3145-5199)

퇴직연금(개인형 IRP)·개인연금(연금저축)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연금상품 및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입자가 통합연금포털에서 각 연금상품의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영업점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원하는 금융회사의 원하는 연금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동 서비스는 2020년 1월 말(잠정)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논의 결과”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보도자료> “11.25.(월)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보도자료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 추진배경**
 - ‘19.11월 시행된 연금계좌 이동절차 간소화(기존 연금상품 취급 금융회사 및 신규상품 취급 금융회사 2회 방문 →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의 후속과제로,
 - 가입자의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PC·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계좌 이동이 가능하도록, ‘통합연금포털’-금융회사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
- 주요내용**
 - 가입자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이체 서비스를 시행*,
 - *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으로, 온라인 계좌이체 채널 구축이 완료된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 시행일** 2020년 1월 말(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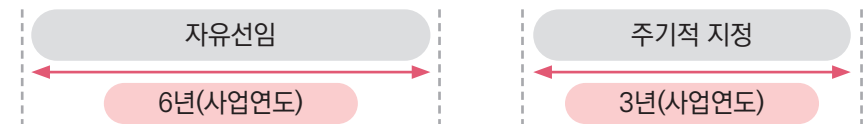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02-2100-2693)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 지난 11월, 총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통지하였으며, ‘20년에도 총 220개 회사(잠정)에 대해 지정 감사인이 통지될 예정입니다.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 실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 추진배경**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 주요내용**
 -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위(금감원)에서 지정하는 제도
 -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이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시행일** 2019년 11월 1일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6

은행자금이 가계대출보다 혁신·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이 변경됩니다.

■ 현재 은행은 예대율 규제에 따라 전체 원화예수금에 대한 원화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 '20년부터는 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disincentive)하고, 법인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incentive)하게 됩니다.*

* 가계대출 100%→115%, 법인대출 100%→85%, 개인사업자대출 100%→100%

현행	개선
원화대출금 원화예수금	$\frac{(가계대출 \times 1.15) + (법인대출 \times 0.85) + (개인사업자대출 \times 1.0)}{원화예수금} \leq 100\%$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보도자료('18.7.11.)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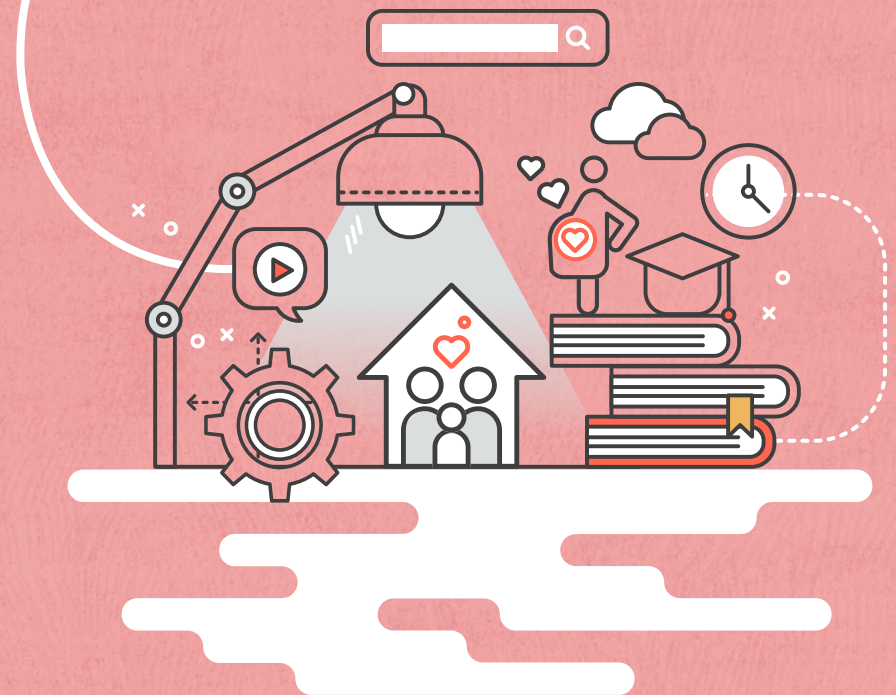
- **추진배경** 은행들의 과도한 가계부채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혁신·중소기업 등 보다 생산적 분야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를 제공
- **주요내용**
 - 예대율 산정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 조정
 - * 가계대출 100%→115%, 법인대출 100%→85%, 개인사업자대출 100%→100%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2

Education ·
Childcare · Family

교육·보육·가족



Infographic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84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시행일 : 2020년 학년도

Before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하고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하였습니다.



After

'20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2 · 3학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3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88

아동수당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시행일 : 2020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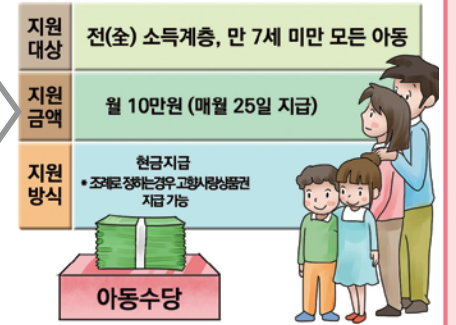
Before

아동수당 도입으로 국내 거주하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247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fter

'20년부터 아동수당을 국내 거주하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263만명)에게 확대 지원합니다.



2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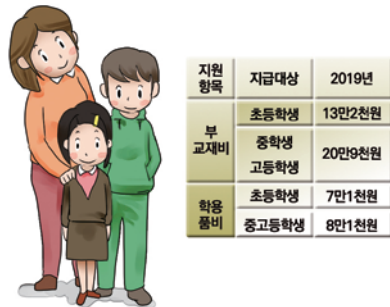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85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시행일 : 2020년 3월

Before

지금까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를 지원하였습니다.



After

'20년 3월부터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4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93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3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After

'20년에는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60개소로 확대하여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5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94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시행일 : 2020년 1월

Before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시 대기 기간을 미리 알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을까?



After

'20년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대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 신청 및 확인, 취소, 변경 가능
- 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대기 순번, 예상되는 대기 기간 확인



6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95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시행일 : 2020년 1월

Before

지금까지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민간중심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1,313명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231개

After

'20년부터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지자체 전담인력도 확충하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9개소

청소년 동반자
1,377명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17개소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238개

7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96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시행일 : 2020년 상반기

Before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출장검진
10개 지역(1000명)

꿈드림센터
214개소

전용공간
52개소

After

'20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급식지원

전용공간
72개소

찾아가는 출장검진
12개지역 1,200명

• 자원문의 :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청소년전화(1388)
• 시군구별 사업운영 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기 상이

8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9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시행일 : 2020년 1월

Before

지금까지 청소년 방과후 활동 기반을 확충해 왔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80개소

진로체험프로그램
시범 9개소

After

'20년에는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등 활동기반을 더욱 확대합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310개소

진로체험프로그램
310개소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17)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홍보자료>「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됩니다」등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개요

- **추진배경**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 (시행방안)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학년(완성)
※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2.3.)
- **시행일** 2020 학년도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24)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 중위소득 50%(예 : '20년 기준, 4인가구 237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 '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 이는, 고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 '20년 교육급여 1인당 지원금액 : (초) 206천원 (중) 295천원 (고) 422천원

〈 '20년 교육급여 항목별 연간 지원금액 (1인) 〉

지원항목	지급대상	2019년	2020년
부교재비	초등학생	132,000원	134,000원
	중학생	209,000원	212,000원
	고등학생		339,200원
학용품비	초등학생	71,000원	72,000원
	중고등학생	81,000원	83,000원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추진배경**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확대
- **주요내용**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시행일** 2020년 3월
-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교육비(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등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
- **문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 044-203-6730)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합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 대회, 수학여행 등)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의 수업일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 됩니다.

-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 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합니다.
 - 현행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
 - 개정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그리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합니다.
 - 현행 : 4개월 운영
 - 개정 : 4~6개월 운영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 추진배경 주 5일 수업제 의무 실시 및 제한적인 토요일과 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등을 통한 사회변화 대응 및 학교의 자율성 강화
- 주요내용
 -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초·중·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통일
 -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 *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최되는 학교 행사에 한정
- 시행일 2020년 3월 1일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 추진배경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주요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자 확대
 - 현행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
 - 개정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 확대
 - 현행 : 4개월 운영
 - 개정 : 4~6개월 운영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15)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아동수당 지급 확대('19년 247만 명→ '20년 263만 명, 예산기준)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됩니다.

아동수당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 (0~83개월) 모든 아동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 지원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사업안내 : 아동수당 홈페이지 (ihappy.or.kr) 아동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 **시행일** 2018년 9월~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044-202-3361)

2020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희망자가 직접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 '다함께돌봄 홈페이지(www.dadol.or.kr)'를 통해 주변의 이용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조회하고 이용신청 및 이용결정 통보를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개요

-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 **내용** 상시·일시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 **공간**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 활용
- **돌봄인력**
 - 상근 2인(관리자·돌봄선생님 각 1인)
 - * 돌봄선생님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인이 시간제 근무 가능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46)

2020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사업 첫 해인 2019년에는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4,920명)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 2020년부터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8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아울러,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 **추진배경**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립수당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으로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
 - 아동일시보호·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가족돌봄휴가 신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됩니다.

-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더 넓어졌습니다.
 -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개정) 조부모, 손자녀도 포함
- 이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설명자료

가족돌봄휴가 신설

- **추진배경** 맞벌이 노동자의 양육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무급) 신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
 - 가족돌봄휴직 기간(연간 90일)을 포함하여 최대 연간 90일 범위 내 사용
 -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
 -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만에 대해 급여 지원
- 앞으로는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추진배경 임신 노동자의 모성보호
- 주요내용
 -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 인상(180→200만원)
 - ② '20.1.1.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20.1.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 적용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4)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9년 35개소에서 '20년 60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 취업여성들에게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등을 제공하고, 기업 대상으로는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 기업문화개선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경력단절예방정책 강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경력단절 사전예방 기능 확대 및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
- 주요내용 경력단절예방 지원 기관 확대(35개소 → 60개소)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636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대기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 현재는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하거나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 대기 등 이용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이 운영됩니다.
 - 서비스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되는 대기 기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선 내용은 2020년 1월부터 단계별 시범운영을 거쳐 3월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 **추진배경** 서비스 신청 및 대기 과정에서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대기 관련 정보 제공 필요
- **주요내용**
 -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신청 및 확인, 취소, 변경
 -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 순번, 예상되는 대기 기간 등 확인
- **시행일** 2020년 1월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5, 6276)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31개에서 238개로 확대 운영되고,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313명에서 1,37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또한,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청소년 안전망팀'(9개소)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자체가 위기청소년 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기초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갖추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위기 청소년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 아울러 가출·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개소)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 지원문의 : 청소년전화 1388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추진배경**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위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인프라 확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대 231개→238개소, 청소년동반자 확충 1,313명→1,377명
 - (공공성 강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설치(9개소)(신규)
 - (맞춤형 지원) 고위기청소년 발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17개소)(신규)
- **시행일** 2020년 1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9)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자립, 건강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8개소 확대됩니다.
* 꿈드림센터 : ('19년) 214개소 → ('20) 222개소
-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이 지원됩니다.
- 꿈드림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이 20개소 확대됩니다.
* 전용공간 : ('19년) 52개소 → ('20) 72개소 (20개소 추가 설치)
-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 등에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건강검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찾아가는 출장검진 : ('19) 10개 지역 1,000명 → ('20) 12개 지역 1,200명
** (기존) 꿈드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20) 온라인(전자메일)으로도 신청 가능

참고 지원문의 :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청소년 전화(1388)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추진배경**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접근성 제고 및 지원 서비스 강화
- **주요내용**
 - ① 꿈드림센터 확충(214개소→222개소)
 - ②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 지원
 - ③ 꿈드림센터 전용공간 확대 설치(52개소→72개소)
 - ④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 확대 및 온라인 건강검진 신청
- **시행일** 2020년 상반기
※ 시군구별 사업운영 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기 상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50, 6259)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확충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을 30개소 확대합니다.
* 운영기관 확대 : ('19) 280개소 → ('20) 310개소 (30개소 ↑)
-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전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로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을 지원합니다.
※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 ('19) 시범운영 9개소 → ('20) 전국 310개소

참고 인근 운영기관 찾기 : www.youth.go.kr/yaca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다양한 활동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초등4학년~중등3학년 청소년
 - (운영내용) 체험활동 프로그램(진로·직업, 문화·예술·과학, 체육, 자원봉사 등), 보충학습, 상담, 식식 제공
 - (시간/공간) 방과후 1일 4시간 /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 (신청방법)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시행일** 2020년 1월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32)

2020년부터 부모의 자녀 돌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15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자녀돌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교육, 네트워킹 등 돌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 (돌봄대상) 만 0세 ~ 초등 6학년
 - * (운영시간)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 * (프로그램)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 돌봄 친화적인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하고, 전담인력 증원으로 운영시간도 늘어납니다.
 - * (개소수) ('19년) 218개소 → ('20년) 268개소
 - * (인력) ('19년) 개소당 전담 1명 → ('20년) 개소당 전담 1명, 시간제 1명
-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별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을 확대합니다.
 - * 가족센터(착공연도 기준) : ('19년) 5개소 → ('20년) 64개소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추진배경** 부모의 돌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주요내용**
 - 지역사회 부모자조모임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
 - 다양한 가족형태를 감안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확대
- **시행일** 2020년 상반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2)

2020년부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의료비를 지원해, 입소 미혼모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전에는 의료급여 신청 후 선정 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등 의료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내년부터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모와 자녀가 각각 연간 35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의료급여 선정 이전에도 병원비, 비급여 병원비, 건강검진, 질병치료·입원, 진단서 발급, 일반 의약품 구입비용 등 지원
- 입소가정에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참고 한부모가족상담 : 1644-6621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지원

- **추진배경**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6 신설에 따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입소가정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입소 미혼모자가족의 건강관리 강화 도모
- **주요내용**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자 대상 산전·분만·산후관리 및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한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
- **시행일** 2020년 1월

청소년의 정책·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8)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지역과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활동 창구를 다양화합니다.

-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에 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참여포털'(www.youth.go.kr/ywith)을 내년부터는 상시 운영하여 "시공간 제약없이, 청소년 누구나" 정책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규모 원탁회의를 개최(연 2회 이상) 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구 비활동 청소년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책·지역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추진배경** 청소년들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 추진
- **주요내용**
 - 청소년정책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등에 청소년 위원 위촉 ('20년 신규)
 - '청소년참여포털'을 통한 청소년 정책제안 상시화 및 원탁회의 개최 ('20년 신규)
- **시행일** 2020년 1월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770)

저출산 시대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 지원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예비군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 요건을 완화합니다.

-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동원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연기처리 대상 기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전·후 21일로 연기 대상기간을 확대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0년 3월부터 입영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 **추진배경** 저출산 시대 정부차원 출산지원 대책 마련 및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과 가족들의 부담 해소
- **주요내용**
 - 배우자 출산(예정)일과 동원훈련 중복 대상기간 확대 적용
 - 종전 : 출산(예정)일과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중복될 경우
 - 개정 : 출산(예정)일과 훈련기간 전·후 21일이 중복될 경우
- **시행일** 2020년 3월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부터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 02-3150-0935)

경찰대학 입학연령 상한이 현행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 현행 :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

■ 개정 :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

※ 단,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는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 연장

■ 개정내용은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경찰대학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기준 완화

- 추진배경 경찰대학에 다양한 인재가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 주요내용
 - 입학연령 제한 완화
 - 현행 :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
 - 개정 :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한 연장
- 시행일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부터('21학년도 신입생 모집전형)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National Defense ·
Military Affairs

국방·병무



Infographic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106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

시행일 : 2020년 (잠정)

Before

헌법상 영창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兵)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합니다.

-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을 도입
 - 군기교육은 15일 이내에서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
- 감봉·견책 신설
 - 감봉은 1~3개월 범위에서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훈계

After



3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108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시행일 : 2020년 1월

Before

'18년에는 병사의 봉급을 '17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구분	봉급액
병장	405,700
상병	366,200
일병	331,300
이병	306,100

After

'20년부터 병사의 봉급을 '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 ('19년 대비 33%인상)으로 인상 할 예정입니다.

'20년 : '17년 최저임금의 40%

구분	봉급액
병장	540,900
상병	488,200
일병	441,700
이병	408,100

*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2 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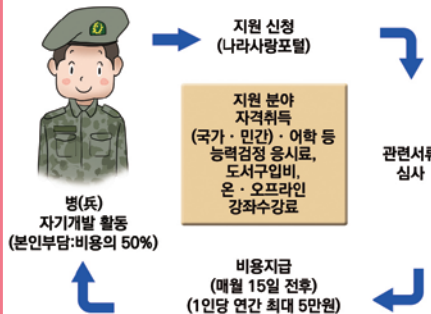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07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시행일 : 2020년 1월

Before

지금까지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은 본인 부담 과다 등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After

'20년부터 지원금액은 높이고, 본인부담률은 낮출 예정입니다.



4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114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20년 1월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됩니다.

- 신청대상 :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
- 복무기간/기관 : 36개월/교정시설
- 예비군대체복무 : 복무 후 8년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
- 제제사항 : 거짓서류 작성·제출 또는 허위 진술 등 형사처벌
- 법률안이 현재 국회 심사 중으로 연내 법률 공포를 전제

After

· 신청기한 :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잠정)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 02-748-6818)

헌법상 영창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兵)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합니다.

■ 군기교육은 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운영할 예정

현 행	개 정	비 고
강등	(좌동)	
영창	군기교육	영창 폐지/신설
휴가제한	감봉	신설
근신	휴가단축	용어수정
	(좌동)	
	견책	신설

■ 병사 징계종류로써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별목을 신설하여 병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엄정한 군 기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군인사법개정 보도자료

영창폐지 및
군기교육 신설

- 추진배경 인권존중의 군 문화 정착
- 주요내용
 -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을 도입
 - 군기교육은 15일 이내에서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 감봉·견책 신설
 - 감봉은 1~3개월 범위에서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훈계
- 시행일 2020년(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02-748-5122)

병사의 군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병사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20년부터 지원금액은 높이고(1인당 연간 5만원→10만원), 본인부담률은 낮추어(비용의 50%→20%)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도 국방예산 확정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추진배경 다양한 개인의 적성·희망·여건을 고려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
- 주요내용
 - 병사의 군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

구분	2019년	2020년
지원금액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본인부담	비용의 50%	비용의 20%
지원 분야	자격취득(국가·민간)·어학 등 능력검정 응시료, 도서구입비, 온·오프라인 강좌수강료	
지원 대상	소 부대 대상 자기개발을 희망하는 병	
지원 절차	자기개발 활동 실시 → 지원 신청(나라사랑포털 이용) → 관련서류 심사 → 비용지급(매월 15일 전후)	

• 시행일 2020년 1월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병사의 봉급을 2019년 대비 33% 인상하였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540,9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도 국방예산 확정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추진배경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

'18년 : '17년 최저임금의 30%		'20년 : '17년 최저임금의 40%		'22년 : '17년 최저임금의 50%	
구분	봉급액	구분	봉급액	구분	봉급액
병장	405,700	병장	540,900	병장	676,100
상병	366,200	상병	488,200	상병	610,300
일병	331,300	일병	441,700	일병	552,100
이병	306,100	이병	408,100	이병	510,100

- 시행일 2020년 1월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4)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가 인상됩니다.

-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3.2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4.2만원으로 보상비가 인상됩니다.
- 또한,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019년 교통비*는 7천원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8천원을 지급하며, 중식비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여 급식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단,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입소자로 30km 초과하여 이동하는 경우 2019년에는 116.14원/km를 추가 지급하였으며, 2020년에는 131.82원/km를 추가 지급
- 예비군에게 인상된 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추진배경 예비군훈련 보상비 현실화 필요
- 주요내용 동원훈련 보상비 및 지역예비군훈련 실비 인상
- 시행일 2020년 3월('20년 예비군훈련 일정 시작시부터)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4

예비군 훈련시 미세먼지로부터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확대합니다.

-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2019년도에 연간 18일에서 2020년도는 50일로 확대하여 101만개를 지급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예비군의 건강보호 및 훈련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6

장병들의 병영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피복류 보급기준 개선과 신규 품목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먼저, '19년 최전방 부대 근무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한 패딩형 동계점퍼를 '20년에는 입대하는 병사 전체에게 보급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여름철 체온상승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임무수행여건 보장을 위해 기능성 원단을 적용한 컴뱃셔츠를 신규 보급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장병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기존 1인당 연 68,976원에서 94,440원으로 증액하여 장병들의 위생여건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품목 :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 이를 통해, 장병들의 피복 만족도가 향상되고 병영생활 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일수 확대 시행

- 추진배경 미세먼지 관련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의 건강보호 필요
- 주요내용
 - ①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2,631대)
 - ② 미세먼지로부터 예비군 보호를 위해 연간 마스크 지급 일수 확대 (18일→50일)
- 시행일 2020년 3월('20년 예비군훈련 일정 시작시부터)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피복류 보급 개선

- 추진배경 병사들의 병영생활 여건 개선
- 주요내용
 - 패딩형 동계점퍼 확대 보급/컴뱃셔츠 보급/일용품 현금지급액 증액
 - ① 패딩형 동계점퍼 : '19년 최전방 부대 병사 124,250명 → '20년 입대 병사 전체
 - ② 컴뱃셔츠 : '20년 신규 보급
 - ③ 일용품 현금지급액 : '19년 연 68,976원 → '20년 연 94,440원
- 시행일 2020년 1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 044-202-5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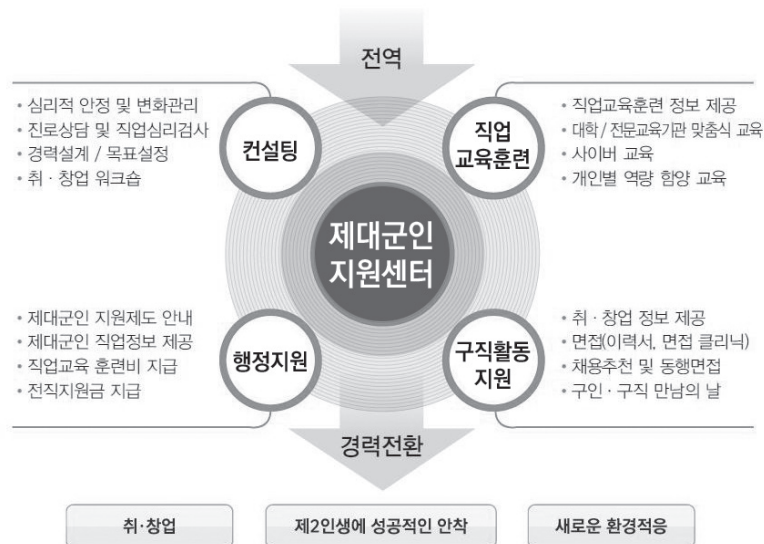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체계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기존 7개 광역권(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북부, 경기남부)에서 3개소를 추가하여 10개소로 확대합니다.

- 추가개소지 : 인천, 강원(춘천), 경남(창원)지역

-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www.vnet.go.kr)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합니다.

- 제대군인지원센터 주요기능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 044-202-5271)

국가보훈대상자가 각종 기·예상 수혜 정보를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기존의 자기정보조회(약 9종의) 서비스를 대체하여 본인의 수혜내역과 자격 변동 시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사항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모의예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공공서비스 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민원을 원스톱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개인 맞춤형 보훈 서비스 구축

- **추진배경** 국가보훈대상자의 각종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민원 지원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수혜사항을 개인이 직접 확인·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민원인은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접수 즉시 응답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20년 2월 29일(예정)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1932)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됩니다.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상반기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도록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가 달라집니다.

-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12월에 결정되었으나, '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21년도)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전산분류되어 확정·고지됩니다.
※ '20년 1월부터 현역병본인선택(다음연도 '입영월') 신청은 폐지
- 이에 따라 학사(취업)등 안정적 일정관리와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 지원으로 진로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 **추진배경**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2018.6.28.)
- **주요내용**
 - 신청대상 :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
 - 신청기한 :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
 - 복무기간/기관 : 36개월/교정시설
 - 예비군대체복무 : 복무 후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
 - 제재사항 : 거짓서류 작성·제출 또는 허위 진술 등 형사처벌
- **시행일** 2020년 1월 1일(편입신청 접수 시작은 위원회 구성 이후)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결정·안내

- **추진배경** 입영일자·부대의 조기 결정, 의무자 안내로 학업일정 관리, 취업·휴직 등 입영준비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입영신청 및 방법 개선
 - 당초 : 다음해 '입영월' 선택, 병무청에서 입영일자 결정·안내(12월)
 - 개선 : '입영일자' 선택과 동시에 입영부대 확정(전산시스템)
- **시행일** 2020년 1월(2021년 입영일자 신청은 2020년 7월부터)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이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은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을 외관상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적용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는 난치병 중 서류심사로 병역감면처분이 가능한 질병까지 확대하여,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이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역감면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신체적 취약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지원
- 주요내용
 - 악성 혈액질환 확진된 사람은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병역감면 처분
 - 악성 혈액질환(5개) :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관해 후 5년이상 경과한 혈액암
- 시행일 2020년 1월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병무청 정보기획과 (☎ 042-481-2646)

챗봇과 대화로 상담하고 민원 신청도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그동안 한정된 상담원과 상담시간으로 인해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제약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 단순한 민원은 AI기반 민원상담 챗봇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 입영연기 등 39종의 민원은 대화형 민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상담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상담원은 고충민원과 심화상담에 집중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병무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AI(챗봇) 기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 추진배경 신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병무민원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역의무자 편의성 증대
- 주요내용
 - 기존 : 민원상담소(09:00~18:00) 근무시간 민원상담 가능
변경 : 단순상담 24시간×365일 민원상담 가능
 - 기존 : 민원신청과 상담 별개의 절차로 진행
변경 : 대화형 민원신청 시스템으로 상담과 동시에 민원신청 가능
- 시행일 2020년 2월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병무청 정보기획과 (☎ 042-481-265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그동안 온라인 민원서류 제출 시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함에 따라 본인인증과정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에 불편한 공인인증서를 대신하여 블록체인과 전자증명(Digital ID)기술을 활용,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인증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 국가보훈처와 병적증명서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병적증명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보훈처에서 원스톱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 국립묘지 안장 신청 등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공인인증서폐지(국정과제)에 따른 민원출원 시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 및 부인방지 기능 구현
- **주요내용**
 - 기존 : 병역의무이행 민원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변경 :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 없이 민원신청 가능
 - 기존 : 보훈처에서 병적증명서 요청 시 병무청 방문 후 종이증명서 제출
 - 변경 : 보훈처에서 직접 시스템으로 발급 신청, 병적증명서 전송
- **시행일** 2020년 1월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15)

병역의무자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를 1km당 15.68원 인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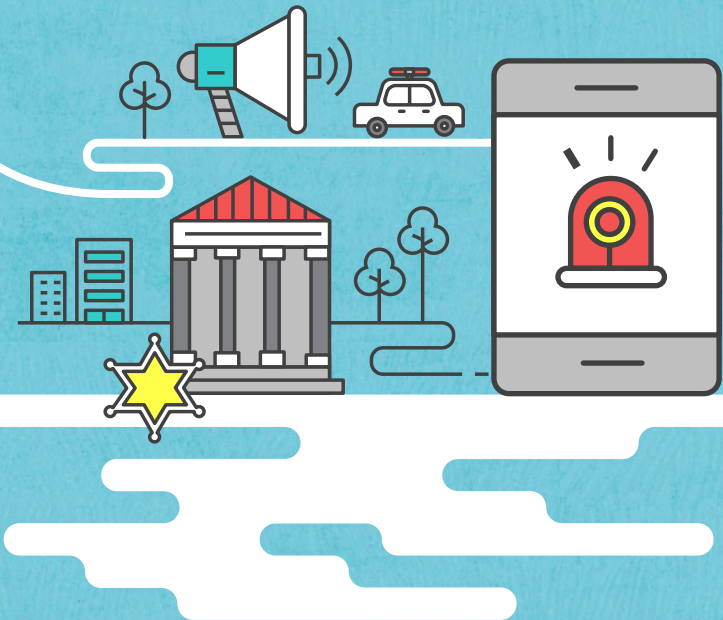
-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 시 지급받는 여비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이며, 이 중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시외버스 운임단가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교통비는 '19년 3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교통비 단가로 지급합니다.
 - (현행) 116.14원/km → (개정) 131.82원/km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 **추진배경** 병역의무자여비 현실화 추진
- **주요내용**
 -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1km 당 15.68원 ↑)
 - 현행 : 116.14원/km
 - 개정 : 131.82원/km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Administration ·
- Safety · Public Order

행정·안전·질서



Infographic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137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시행일 : 2020년 1월

Before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였습니다.



After

입국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이주여성에게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2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138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시행일 : 2020년 상반기

Before

지금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하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종이·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After

'20년 상반기부터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하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및 모바일 전자고지를 희망하지 않는 세대는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3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139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시행일 : 2020년 1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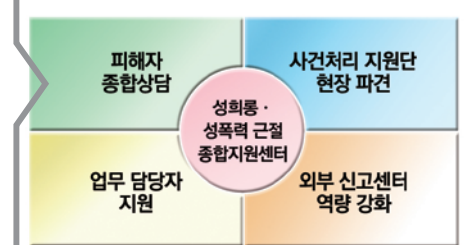
Before

지금까지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이 분야별 신고센터에서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After

민간·공공 구분 없이 분야별 지원내용, 사건처리절차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2020년 1월부터 새롭게 운영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운영

4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41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Before

그동안은 갑작스러운 사고시 어업인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After

'20년 8월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 안전은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5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42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20년 1월 1일부터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 됩니다.

- (현행) 디젤연료 추진 선박 건조 허용
- (개정) 해양오염저감기술적용선박, 환경친화적에너지(LNG, CNG, LPG, Methanol, Hydrogen 등) 사용선박,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의무화

After



7 경찰청

자세한 내용은 p.15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시행일 : 2020년 3월 말

Before

'20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After



6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50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시행일 : 2020년 3월 14일

Before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After

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나만의 맞춤형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8 국민권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6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부정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되며 국민 누구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을 신고하면,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보상금과 포상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fter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044-215-515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외의 자가 국유지 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됩니다.
- 또한, 생활SOC를 전문기관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사용·수익(전대)하게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유재산법 개정 보도자료(예정)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 가능

- **추진배경**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 **주요내용**
 - 국유지 위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SOC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SOC의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2020년 7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044-201-1590)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변경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 **추진배경** 성범죄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
 - 폐쇄명령을 받은자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 2년간 금지
 -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농어촌민박사업 1년간 금지
- **시행일** 2020년 7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044-201-1590)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및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① (기본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연면적 150㎡ 이하), 피난구유도등(150㎡ 초과), 완강기(3층이상 건물)
- ② (화기취급처(보일러실, 주방 등) 안전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객실 포함), 가스누설경보기(가스 사용시), 자동확산소화기

■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추진배경**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 농어촌민박 시설의 소방·안전 시설기준 강화
 -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2시간으로 강화
- **시행일** 2019년 12월 31일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044-201-2074)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식물병해충 연구자들이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적기 대응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이 '09년부터 '18년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 가운데 딸기세균성모무늬병 등 13종은 연구자 논문발표 후 알려지는 등 연구자가 최초로 발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따라서, 2020년 3월 11일부터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이나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 또한,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법령>식물방역법

식물병해충 연구자에게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 부과

- **추진배경** 외래병해충에 의한 자연환경 및 국민건강 등의 피해 예방
- **주요내용**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의무자에 기존의 식물재배자 외 식물병해충을 조사·연구한 연구자를 포함
 - 연구자가 병해충을 최초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신고대상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추가
 -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20년 3월 11일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61~2)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정내용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보도자료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 추진배경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주요내용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 시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
- 시행일 2020년 8월 21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574)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중복된 시험·검사를 면제하고 제작 시 사용 가능한 소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기준을 개정합니다.

■ 우선,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그네, 미끄럼틀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조합놀이대)을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하여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업체의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소재는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가능하였으나, 이러한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의 경우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개정

- 추진배경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 주요내용 (어린이놀이기구) 기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 면제 및 사용 가능한 소재의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
- 시행일 2020년 4월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451)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준을 개정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무게(30 kg)는 제한하고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460)

휴대용 사다리 제품의 안전기준을 가정용(용도)에 맞게 조정합니다.

- 휴대용 사다리란, 가정에서 간단한 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로,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됩니다.
- 가정용 사다리의 소형화 동향을 반영하여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된 안전기준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되며,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 추진배경 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 주요내용 전동보드 방식의 개인이동수단을 별도 관리하고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요구사항을 추가
- 시행일 2020년 2월 16일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 추진배경 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 주요내용 (휴대용 사다리)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톨)에 대한 안전요건 신설
- 시행일 2020년 6월 1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458)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됩니다.

-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을 관리하게 되며,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권장 기한,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들은 시험·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개정

- 추진배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행을 위해 건전지 안전관리 대상범위 확대
- 주요내용 (건전지) 건전지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원통형에서 단추형까지로 확대하여, 단추형 건전지에 대해 중금속 등 안전기준 적용
- 시행일 2020년 11월 14일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54)

영·유아, 어린이가 자주 찾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20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 종전에 키즈카페는 비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중금속인 ‘납’,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민감계층인 아이들에게 노출시켰어도 법적 제재(制裁)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 * 2018년 키즈카페 환경조사 결과 : 전국 키즈카페 약 1,894곳 대상 유해물질 검출농도 조사에 따르면,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 이중 1,430곳은 중금속 검출 기준 초과
- 앞으로는 붕붕뿔뿔, 미니에어바운스와 같은 유기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와 슬라이드, 블록 등 완구를 놀이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법정시설로 관리됩니다.
 - * 중금속 ‘납’ 농도는 600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mu\text{g}/\text{m}^3$ 이하, 녹 및 크랙 금지
- 키즈카페 중 영세한 곳은 유예기간(3년) 동안 환경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 중금속 및 실내공기질 진단, 토양 기생충란 검출여부 검사 등
- 이제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던 위험요인들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활동공간 범주 확대)

- 추진배경 관리사각 어린이활동공간 관리강화를 통한 어린이 건강 보호
- 주요내용 키즈카페를 법정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 시행일 2019년 12월말
 - *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관할 시·군·구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상향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현행** : 총 구매액의 1,000분의 3(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69호)■ **개정** : 총 구매액의 1,000분의 6■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장애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 **추진배경**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 상향 추진
- **주요내용**
 - 구매목표 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현행보다 상향 조정 (잠정 : 1,000분의 6)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70)

결혼이주여성은 입국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됩니다.
 - ※ (현지사전교육) 결혼이주 예정자에게 한국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베트남, 필리핀 지역에서 시행 중, 태국은 상반기중 시행 예정)
 -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와 관계 법령 습득 기회를 제공(2019.10.1.부터 결혼이주여성 교육참여 의무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주여성에게 전화·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독려합니다.

- 센터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방문교육지도사, 사례관리사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멘토-멘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합니다.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 **추진배경**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전후부터 초기 정착까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
- **주요내용**
 -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20년 1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 6406)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20년 상반기부터 실시합니다.

-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기존대로 우편고지 실시
-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시행

- **추진배경**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가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
- **주요내용**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여부를 묻는 안내문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 열람 가능,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우편고지
- **시행일** 2020년 상반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 02-2100-6164)

어디에·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폭력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관련 분야별(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사건처리 절차, 지원내용 등을 한 곳에서 상담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 ※ **현행** : 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분야별 신고센터 운영
 - 개정** : 종합지원센터 및 분야별 신고센터 운영
-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담당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1월중 설치·운영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 **추진배경** 폭력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각 분야별 지원내용, 사건처리절차 등 종합 상담
 - 상담, 법률, 노무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사건발생 기관에 파견하여 현장 컨설팅 지원
 - 사건 종료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
- **시행일** 2020년 1월중
 -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8, 6409)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됩니다.

-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이 되었습니다.
-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044-200-5527)

2019년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다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착용하기 쉬운 어선용 구명의도 입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 「선박안전조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처벌하던 사항을 법에 반영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항지 인근 신고기관에 미신고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아울러, 조업한계선 이탈, 서해 5도에서의 군부대장 통제불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 추진배경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
-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현행법령 검색>“어선안전조업법” 공포(‘19.8.27), 시행(‘20.8.28.)

어선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확보 및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주요내용
 - 기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어선의 위치 통지 절차, 구명조끼 착용 요건, 안전조업교육 시행기관 및 실시방법 마련
 - 출어등록 절차·방법,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항행 제한 해역 및 기간 설정 등
-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6, 5838)

2020년 1월 1일부터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 됩니다.

■ 현행 : 디젤연료 추진 선박 건조 허용

개정 : 해양오염저감기술적용선박, 환경친화적에너지(LNG, CNG, LPG, Methanol, Hydrogen 등) 사용선박,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의무화

■ 해양수산부는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노후선박 상태평가, 표준설계 마련 및 정부·지자체 대상 기술자문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관공선, 친환경 선박으로 본격 전환한다(2019.10.28.)

환경친화적 선박,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정의

- **추진배경**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가.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 나.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 다.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 라.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 마. 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 1. 액화천연가스(LNG), 2. 압축천연가스(CNG), 3. 액화석유가스(LPG)
 - 4. 메탄올(Methanol), 5. 수소(Hydrogen), 6. 암모니아
 -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20)

선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 인증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며, 상생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전략이 우수한 선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화주는 심사를 통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 기업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18.)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 **추진배경** 해상운송분야 상생협력과 투명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제도 필요
- **주요내용**
 - 선화주기업의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시행일** 2020년 2월
 - * 심사를 통해 인증 대상 기업 선정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3)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 그동안 도서민이 여객선 이용 시,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왔으나,
 - * 단, 고운임 여객선 구간의 경우 도서민은 최대 7천원까지 부담하고 차액은 국가·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소형과 경형 승용차는 각각 30%와 50% 지원 중
- 앞으로는 약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도서민 소유의 비영업용 화물차는 이전보다 30% 추가 인하된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와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입니다.

참고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6.27.)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 **추진배경**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 **주요내용**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 개정 및 국비 소요예산 반영
 - ① (지침 개정) 도서민 단거리 여객 운임과 도서민 소유 화물차의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 ② (국비 반영) '20년 예산 반영(국비 50%)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3)

2020년 상반기부터 사진정보를 활용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승선권 발급 및 탑승 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 그간 여객선 발급 및 승선 시에 반복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데서 오는 불편을 호소하는 도서민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 * 고령의 도서민의 경우 신분증을 미소지하는 경우도 많고, 지문 마모로 터미널에 비치된 주민등록 등본 발급기 사용도 어려운 경우가 다수
- 이에, 지난해 말까지 웅진군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희망하는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거주지 소재 지자체를 통해 도서민운임지원 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매표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상의 사진정보와 도서민의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갈음하게 되어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 * 승선 시에는 승선관리스캐너에 표출된 사진정보를 확인하여 신분 확인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도서민 여러분, 여객선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2019.10.22.)

도서민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도서지역 주민의 여객선 이용 불편 해소 통해 정주여건 개선
- **주요내용**
 -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및 시범 사업 확대 실시
 - ① (방침 확정)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방침 확정 및 승선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신분 확인 시행
 - ② (시범사업 확대) 웅진군과 실시한 시범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로 확대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044-200-5523)

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하였으나, 2020년 2월부터는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현행** : 어선용 소화기
- **개정** : 어선용 소화기 또는 육상용 소화기
- 다만, 분말소화기에 한하며 소화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간이식은 3.3kg 이상, 휴대식은 6.5kg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체 어선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1일(잠정)부터 적용됩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044-200-5965)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①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를 명문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②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③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로 갈음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부터 적용(잠정)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총톤수 10톤미만 소형기준 기준” 및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2.1. 잠정)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 **추진배경** 쉽게 구입·교체 가능한 육상용소화기를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화재사고 예방
- **주요내용**
 -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기 종류 확대
 - 현행 : 어선용 소화기
 - 개정 : 어선용 소화기 또는 육상용 소화기(다만, 분말소화기 중 간이식 3.3kg 이상, 휴대식 6.5kg 이상에 한함)
- **시행일** 2020년 2월 1일(잠정)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항만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2018.6.5.)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 관련 항만법 주요 개정 항목

- **추진배경** 행정절차 투명화 및 간소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 ②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타당성 검토 실시 의무화
 - ③ 경미한 사업의 경우 신고로 갈음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 처리
- **시행일** 2020년 6월(잠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4)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선령 50년 이상인 소형유조선은 화물창을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로 갖추고 운항하여야 합니다.

■ **현행** : 단일선저(홀겹 바닥)구조 허용

■ **개정** :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 의무화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DWT)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 중,
- 선령 50년 이상(1969년 12월 31일 전에 인도)인 선박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 선령 40년 이상(1970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인도)인 선박은 2021년 1월 1일 전까지,
 - 선령 40년 미만(198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인 선박은 2022년 1월 1일 전까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고 운항하여야 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 (2019.2.13.)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 **추진배경** 단일선체 유조선의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에 대하여 이중선저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
- **주요내용**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은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함
- **시행일** 선령 50년 이상은 '20.1.1.', 40년 이상은 '21.1.1.', 40년 미만은 '22.1.1.'부터 적용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8)

2020년 1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에 탑승하는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됩니다.

■ **현행** : 연안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 비치

■ **개정** :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추가* 비치

*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 (참고) 구명조끼 종류별 착용범위

기 준	유아용	어린이용	성인용
몸무게	15kg 미만	15~43kg	43kg 이상
키	100cm 미만	100~155cm	155cm 이상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연안여객선에 유아용구명조끼도 꼭 비치해야 합니다 (2019.6.4.)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추진배경**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 증가 중으로, 비상시 유아의 안전확보를 위해 유아용 구명조끼 의무비치규정 신설
- **주요내용** 연안여객선(유·도선 포함)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기준 신설(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
- **시행일** 2020. 1. 1.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043-719-3403)

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향이나 색깔 등 개인의 기호가 반영된 '나만의 화장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판매장에서 향료, 색소 등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나누어 담게 되는 제품의 특성 상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담당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통하여 소비자가 더욱 다양한 화장품을 선택·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제도

- **주요내용**
 - (맞춤형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만들어 판매하는 화장품
 - * 혼합 : 내용물+내용물 또는 내용물+원료
 - ** 소분 : 화장품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소재지 별로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시행일** 2020년 3월 14일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조달청 해외물자과 (☎ 042-724-7311)

2020년부터 외자 국제입찰에서 협상계약 및 규격가격동시입찰 등 낙찰자결정 방식에 있어 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및 평가합니다.

- 외자 국제입찰에서 제안서 접수는 조달청 내부시스템(EDI)과 e발주시스템의 불완전 연계로 제안서를 인쇄물 형태로 접수하였으나, 시스템을 개선하여 제안서를 전자적으로 접수처리
- 외자 국제입찰에 e발주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제안업체의 입찰비용 경감과 협상계약의 투명성 향상 및 계약관리 효율화로 조달행정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 연간 50여건에 달하는 외자 국제입찰에서 제안서 제본비용, 교통비 등 비용을 절감하여 입찰기업에 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 발생
- 외자 협상계약 시 제안서 보관 등 통합관리 및 데이터 축적·분석이 가능해지고 제안서 보관장소 문제 해결 및 사후관리 등 사업의 효율적 관리 가능
- 장기적으로 조달청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이 국제입찰에 e발주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검토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252) | 경찰청 교통운영과 (☎ 02-3150-2753)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 2019년 12월 1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일로부터 3월 후 시행 예정이지만 공포일이 미정인 상태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597)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말,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추진배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시행일** 2020년 3월 말(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일 미정)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 **추진배경**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필요성
- **주요내용**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 포함)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시행일** 2019년 12월 말(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일 미정)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597)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한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 2019년 12월 1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일로부터 3월 후 시행 예정이지만 공포일이 미정인 상태임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 **추진배경**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등 문제 발생
- **주요내용**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시행일** 2020년 3월 말(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일 미정)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현장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경찰서에서 사전통지서 교부 후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처분 결정 후 우편으로 통지(최장 40일 소요)
- **개정** : 현장(경찰서)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급

현행	→	개정 후
① 진술서 작성		(없음)
② 사전통지서 발급		① 사전통지서 발급, 서명·날인
③ 결정통지서 발송 또는 발급		② 결정통지서 바로 발급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잠정, 법제처 심사 중)부터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 **주요내용**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현행 : 경찰서에서 사전통지서 교부 후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처분 결정 후 우편으로 통지
 - 개정 : 경찰서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급
- **시행일** 2020년 3월 1일(잠정, 법제처 심사 중)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47)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령 사각지대에 노출된 병원급 의료기관 약 1천여개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지 않음

■ 스프링클러 소급적용은 20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법령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스프링클러설비) - 6층 이상 모든 층 - 600㎡이상 요양병원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 6층 이상 모든 층 -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600㎡미만 요양병원	-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47)

소방시설 전문가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으로 '셀프점검' 부작용을 해소하겠습니다.

■ 셀프점검으로 인한 부실점검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 연면적 5천㎡ 이상이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아파트는 11층 이상만 해당)
- 변경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이고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층수와 관계없이 아파트 포함)

- ①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 점검(모든대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 설치 대상은 소방관서 보고(이하는 자체보관)
- ②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 등이 적합한지 점검(연면적 5천㎡이상+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종합정밀점검 대상) - 5천㎡ 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아파트는 11층 이상만 해당)	(종합정밀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대상 - 5천㎡ 이상 + 물분무등소화설비(층수와 관계없이 아파트 포함)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47)

고장난 소방시설 수리·보수 기간을 단축시켜 국민 여러분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다음과 같이 단축됩니다.

- 현행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
- 변경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47)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 기준 강화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강화됩니다.

- 현행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 변경 :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합격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시험합격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험합격은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52)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현행 : 화재위험평가대상(①2,000㎡지역 안에 50개 이상 밀집된 경우 ②5층 이상 건물에 10개 이상 있는 경우 ③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 변경 : 화재위험평가대상(①+②+③)+신종업종

■ 개정내용은 2020년 법령개정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추진배경 신종업종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화재 위험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 주요내용
 - ① 신종업종을 화재위험평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 ②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관리 활성화 및 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고시 제정
 - ③ 전국단위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 실시
 - ④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토록 시행규칙 개정
- 시행일 2020년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52)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하여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현행 :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
- 변경 :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하여 상영

■ 피난 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조치합니다.

■ 제도개선 내용은 2020년 4월 22일 부터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추진배경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하여 화재시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을 보장
- 주요내용
 - ①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은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최소화하거나 포함하지 않음
 - ②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
 - ➔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피난안내정보가 미흡하여 피난안내 내용 인식 어려움을 개선
 - ※ 영화관 피난안내 상영관련 진정*에 따른 인권위원회 개선권고('18.3.8.)
- 시행일 2020년 4월 22일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특허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 042-481-5800)

4차 산업기술에 대해 심사관 1인의 단독 심사 한계를 보완하고자 3인 심사관에 의한 협의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융·복합분야의 출원이 증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심사관의 눈높이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특허 심사에 참여하는 합의형 협의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합의형 협의심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특허청, 융·복합 기술분야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 042-481-5736)

내년 3월 11일부터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무단 유통하는 행위는 특허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존속 중에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특허침해

- 종전에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만이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에 의해 SW의 유통과정(온·오프 라인)에 상관없이 특허법으로 보호됩니다.
- 개정법은 실시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제2조제3호나목)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물건의 발명인 경우(기록매체)와 함께 ‘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온라인 전송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실시 형태는 다양한데, 단순한 SW 전송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여 SW를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동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SW 온라인 전송 보호

- **추진배경** 유통경로에 상관없이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를 보호
- **주요내용**
 - 방법발명의 실시예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포함
 -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침
- **시행일** 2020년 3월 11일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5399)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의 제출 형식이 다양화됩니다.

- 종전에는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할 경우 정해진 양식(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정해진 항목(발명의 명칭,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작성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 이제는 정해진 양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어, 논문 등 연구자료를 별도의 편집 과정 없이 그대로 출원함으로써 신속한 출원일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불어, 종전에는 전자출원시에 명세서는 특허청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파일형식(.xml)으로만 제출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PDF나 한글문서 등으로 작성된 명세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동 개정내용은 2020년 2월(잠정)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명세서 형식 다양화

- **추진배경** 명세서 작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신속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경우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는 명세서 제출 허용
 - 전자출원시 PDF, 한글문서, 워드문서 등 다양한 파일형식으로 제출 가능
- **시행일** 2020년 2월(잠정)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716)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를 70%(20만원→6만원) 감면합니다.

-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2024년까지 연간 10건에 한해 우선심사신청료를 70% 감면합니다.
 -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 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개정 내용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 후 「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추진배경**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특허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주요내용**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연간 10건까지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20만원→6만원)
- **시행일** 2020년 상반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후 시행 예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020. 1. 1.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 044-200-7613)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부정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됩니다.

-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하면 전액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이 각각 5배, 3배 2배 부과됩니다.
-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는 이름이 공표됩니다.

국민 누구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을 신고하면,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보상금과 포상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을 신고한 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분상 보호)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징계의 보류 등
 - (경제적·행정적 보호) 원상회복,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 부정청구등의 신고로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신고자의 지급신청 필요)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 **추진배경** 공공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일반법 제정으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명단공표 시행
 - 부정청구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포상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044-200-7704)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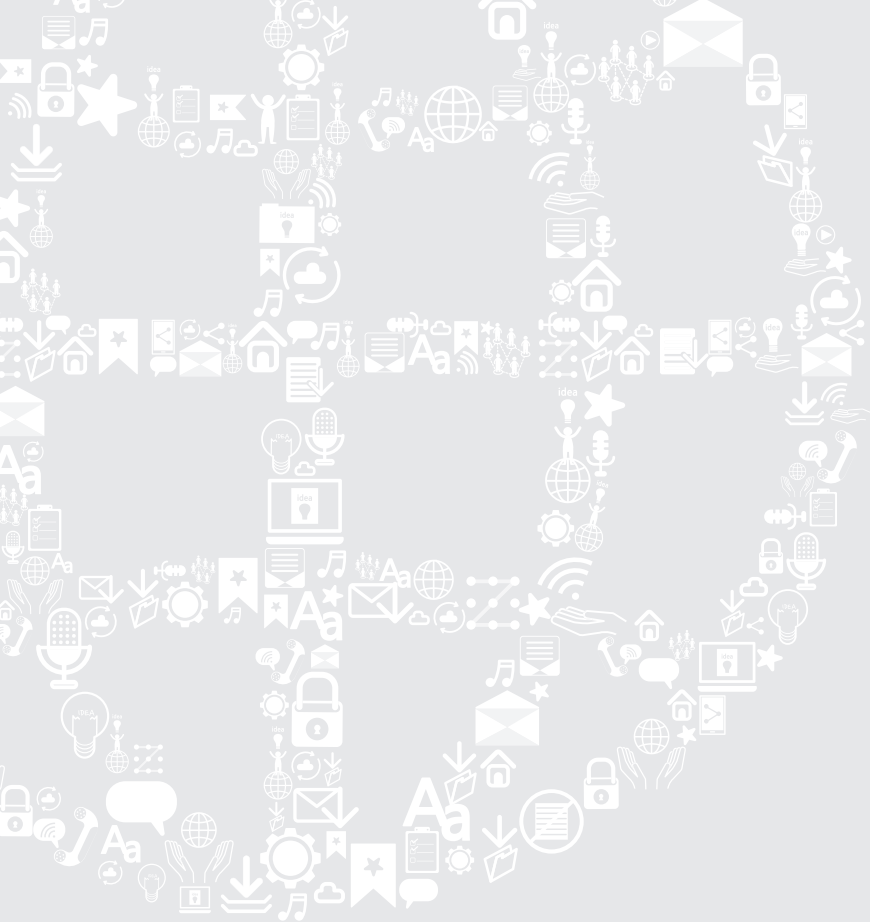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모든 외부강의등(사례금 수수여부 관계없음)
 - 개정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외부강의등 실시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 개정 :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11월1일 보도자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 **추진배경** 외부강의등을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행위 예방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법 개정안(의원발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주요내용**
 -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변경
 - 외부강의등의 신고기한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변경
-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5

Culture · Sport ·
Sightseeing

문화·체육·관광



1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172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 예술활동 특성상 일반사회 · 노동의 시각지대에 놓이는 예술인을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예술 경력단절을 방지(1인 3백만원, 격년제)

After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및 사업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문화재청

자세한 내용은 p.180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시행일 : 2019년 12월 25일

Before

지금까지 급격한 산업화 · 도시화에 의한 근현대문화유산 멸실 · 훼손 사례 지속 발생, 국가 차원의 급격한 문화재 등록 확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After

국가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광역시 · 도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173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청소년)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20년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부터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청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시 필기 시험 및 연수를 간소화하는 연계 취득 절차가 신설됩니다.

- 현행 :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선택과목 4과목)
→ 실기·구술 → 연수(90시간)
- 개정 :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 실기·구술 → 연수(40시간)

After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44-203-2718, 2722)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더 쉽고 폭넓게 개선됩니다.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 현행 : 5,500명
 - 변경 : 12,000명(6,500명 증가)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현행 : 주민등록표 상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 변경 : 주민등록표 상 본인 및 배우자
- 제출 필요 서류가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간소화됩니다.
 - 현행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해당자에 한해)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 변경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로 시스템 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산출·심의
- 변경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사업안내>창작준비금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개선 사항

- **추진배경**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및 사업 개편을 통해 예술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 예술활동 특성 상 일반사회·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예술인을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예술 경력단절을 방지(1인 3백만원, 격년제)
- **주요내용**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지원자 확대(5,500명→12,000명)
 - 소득·재산 심의 대상 완화(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공적자료 확보에 따라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제출 서류 축소(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청소년)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44-203-3130)

‘20년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부터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청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시 필기 시험 및 연수를 간소화하는 연계 취득 절차가 신설됩니다.

-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청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를 응시할 때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현행 :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선택과목 4과목) → 실기·구술 → 연수(90시간)
 - 개정 :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 실기·구술 → 연수(40시간)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 **추진배경** 불필요한 시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험생 편의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배출 확대를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주요내용**
 -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청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응시할 경우 절차 간소화
 - 현행 :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선택과목 4과목) → 실기·구술 → 연수(90시간)
 - 개정 :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 실기·구술 → 연수(40시간)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 044-203-2519)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문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2020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2019년보다 1만 원 올려 1인당 연 9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2019년 발급자는 전화로도 신청(재충전)이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 5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 **주요내용**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전년대비 1만 원 인상
 • ('19년) 1인당 연 8만 원 → ('20년) 1인당 연 9만 원
- **발급기간** 2020년 2월 1일 ~ 11월 30일
- **이용기간** 발급일 ~ 2020년 12월 31일
- **발급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mnuri.kr)
 * 재충전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경우 전화(1544-3412)로도 신청 가능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44-203-3136, 3137)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만5세~만18세)이 꾸준히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

-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합니다.
- '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12월 중순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받을 예정으로, 최종 수혜대상은 '20년 1월 선정할 예정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개요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8개월 이상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수혜 가능
- **지원자격**
 - 지원연령 : 만5~만18세 유·청소년
 - ※ 출생일 기준 2002.1.1~2015.12.31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법정 한부 모지원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국립공원 탐방인프라/프로그램 확충

환경부 자연공원과 (☎ 044-201-7326)

국립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탐방인프라를 확충하고, 스탬프 투어 등을 도입합니다.

- (국립공원 대피소 판매 물품) 2020년 1월부터는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응급 및 안전용품만 판매합니다.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건전지, 우의, 아이젠, 스패치, 랜턴, 면장갑, 생수, 화장지 등 10개 품목입니다.
- (무장애 탐방인프라)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야영지**를 확충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탐방약자의 공원시설 이용을 확대하고,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 * (무장애탐방로, 누적) '01년~'18년 37개소, 36.2km → '19년 42개소, 39.3km
→ '20년 47개소, 45.3km
 - ** (무장애야영지, 누적) '05년~'18년 89동 → '19년 104동 → '20년 123동
- (스탬프 투어) 2020년 하반기부터 품격 있는 국립공원 패스포드에 방문 기념 스탬프를 찍어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코스가 신설됩니다.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044-200-5275)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됩니다.

- 지금까지 마리나업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 시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였지만,
 -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가 폐지되어 마리나 창업자들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종료된 입법예고>“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8.12.26, 의안번호 2017625)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 추진배경 마리나업 등록·변경 등 발생 시 부담하던 수수료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행정적·금전적 부담 완화 필요
- 주요내용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시 발생하던 수수료 폐지
- 시행일 2020년 1월 3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044-200-5275)

마리나 대여업 등록 시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됩니다.

- 사업 등록기간 동안 선박·계류 시설 사용권 확보는 높은 초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등록 시점에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었다면 즉시 등록 가능하여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31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044-200-5275)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기록 관리의무가 신설됩니다.

-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보관
- 입출항 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부터(잠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11.1.)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 (등록)기간 삭제

- **추진배경** 마리나대여업 등록 시 3년 이상 선박 사용권과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사업 진입장벽으로 작용
- **주요내용** 3년 이상 선박 사용권 등을 삭제하여 등록 시 관련 사용권이 확보되면 대여업 등록 가능
- **시행일** 2020년 1월 31일(잠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 진행 중)

참고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종료된 입법예고)>“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8.12.26, 의안번호 2017625)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 **추진배경** 마리나선박의 안전 확보와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입출항 기록 관리의무 부여 필요
- **주요내용** 마리나업 사업자는 입출항시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3개월 동안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함
- **시행일** 2020년 7월 중(잠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 진행 중)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4

국가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는 시·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 **추진배경**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의한 근현대문화유산 멸실·훼손 사례 지속 발생, 국가 차원의 급격한 문화재 등록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 등록되지 못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 관리가 어려운 실정
- **주요내용**
 -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권고
 -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등 보고
- **시행일** 2019년 12월 25일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042-481-4835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확대되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문화재보호법 개정내용

- **주요내용**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② (생략)
-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설>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042-481-4923)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매매업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 법인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 고미술품 등의 유통·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도 문화재매매업이 가능합니다.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수한 사람
 - * 문화재관련 학문을 1년 이상 전공 →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수한 사람
-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문화재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 추진배경 문화재매매업 제도개선을 통한 건전한 문화재매매업 문화확립
- 주요내용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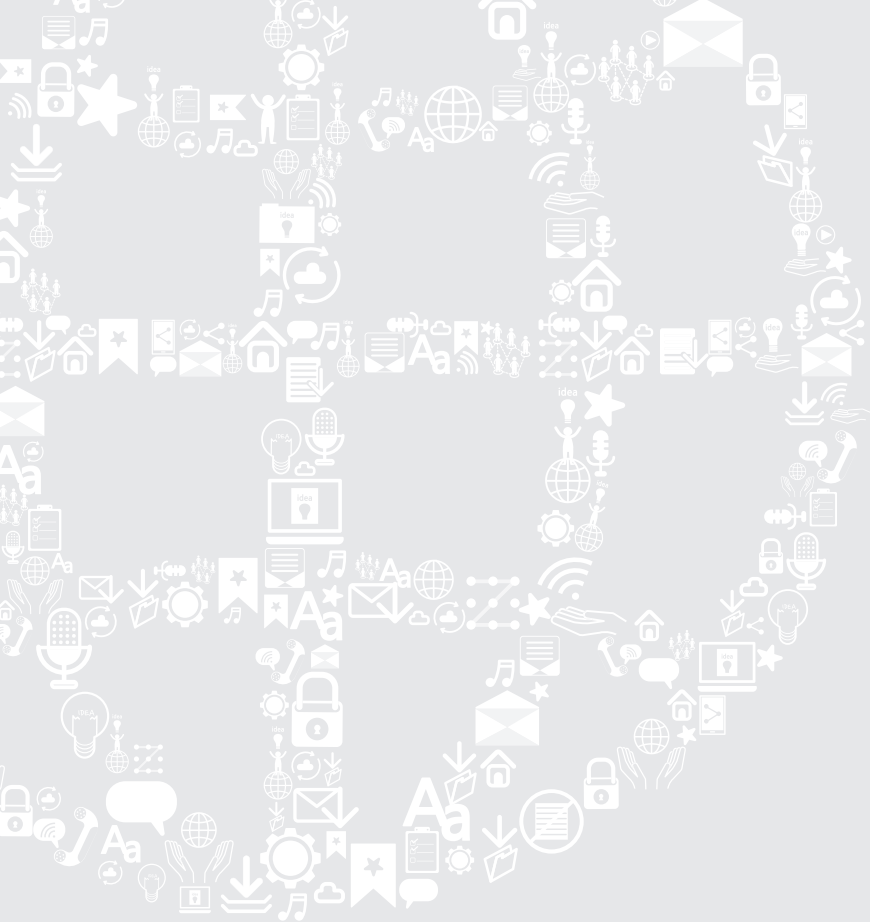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 042-481-3144)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정보·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이 개관합니다.

- 국민 눈 높이에 맞춘 문화유산 지식·정보의 나눔과 소통 장인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이 2020년 1월 중순 개관합니다.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은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디지털문화유산 이해도 제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요

- 위치/시설
 - (위치) 국립고궁박물관 1층 / 716.3㎡
 - (시설) 인터랙티브 미디어월, VR·AR 체험존, 몰입형 영상 체험존, 문화유산 여행길, 카페(휴식공간) 등
- 주요기능
 -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한 문화유산 정보 열람
 -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체험 및 디지털문화유산 강좌 등 운영
 - 전시, 자료 열람 공간과 융화되는 자연스런 휴식 제공
- 시행일 2020년 1월 중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Agriculture and Forestry ·
Marine Products · Food

농림·수산·식품



자세한 내용은 p.192

📅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After

**'20년부터 기존 농업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어 운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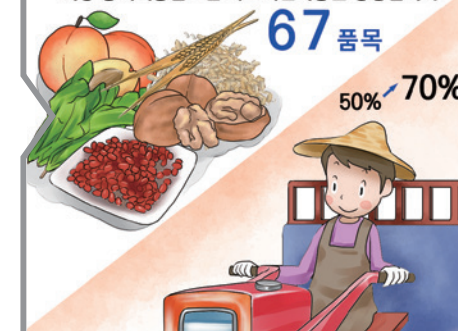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93

 시행일 : 2020년 2월(잠정)

After

'20년 2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영세농가 대상 농기계종합보험 국고지원비용은 상향합니다.

67 품목



• 품목수: ('18) 57 → ('19) 62

3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9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After

'20년 1월부터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개선됩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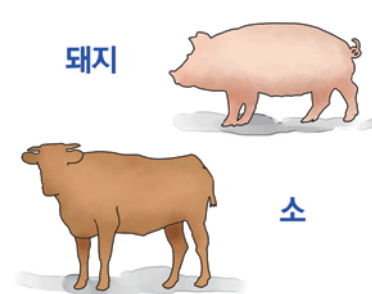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96

축산물 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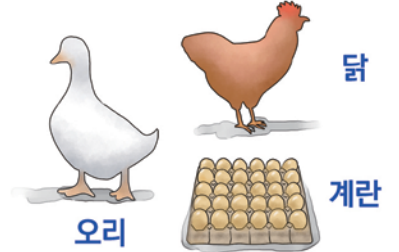
Before

지금까지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에 한하여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After

'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준수사항 : 매월 사육현황 신고, 가축 이동신고,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계시 등

4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95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비농대생까지 확대

시행일 : 2020년 1학기

Before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9.2학기부터 도입되었습니다.



After

'20년부터는 지원대상을 비농대생 (3~4학년 재학생)으로 확대합니다.



6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212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Before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조건부지역 수산직불제는 한·중 FTA 여·야 정 합의('15.11)로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 조건부지역 수산직불제 ('12~'16년) 어가당 50만원/년 → ('17) 55 → ('18) 60 → ('19) 65

After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건부지역 수산직불금이 '20년부터 어가당 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조건부지역 수산직불제 ('19) 65 → ('20) 70

7 산림청

자세한 내용은 p.217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시행일 : 2020년 1월 9일

Before

'20년부터 교육 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After

목재교육 전문과정(176시간) → 자격시험
→ '목재교육 전문가'

목재교육개론
(39시간)

목재교육실무
(88시간)

목재교육방법론
(41시간)

안전교육
(8시간)



9 산림청

자세한 내용은 p.219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시행일 : 2020년 6월 4일

Before

'20년 6월부터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처방전 발급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 나무의사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나무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

After



8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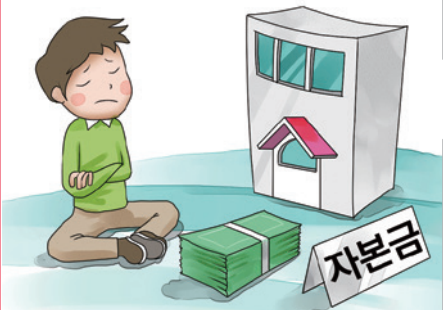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218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시행일 : 2020년 7월 16일

Before

지금까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자격요건 중 '자본금',
'사무실' 마련 등이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After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 인력, 자본금(3천만원이하), 사무실
⇒ 인력, 사무실(사무기자재 갖춘 주택포함)



• 개정 :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 ~ 2020년 새로이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와 이미 등록된 전문업의 경우에도 적용가능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2)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어 운영됩니다.

-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며,
- 이러한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되어 운영됩니다.
-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보도자료

농가 소득안정 및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 **추진배경** 기존 직불제의 쌀 수급불균형 심화 및 중소농의 소득안정망 미흡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직불제 개편 추진
- **주요내용**
 -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 소규모농가 대상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운영
 -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
 -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 가능
- **시행일** 2020년 5월 1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28, 1792)

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하여 농업경영안정망 확충

- (농작물재해보험)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5개 품목(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을 신규도입
 - * 품목수: ('01) 2개 → ('10) 25 → ('16) 50 → ('18) 57 → ('19) 62 → ('20) 67
- (농기계종합보험) 영세농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부터 국고 지원 강화
 - * 국고지원: ('19) 모든농가 50% → ('20) 영세농가 70%, 일반농가 50%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보험 품목확대 및 지원강화

- **추진배경** 자연재해,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험 원리로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신규 5품목 :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 농기계종합보험 영세농가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50% → 70%)
- **시행일** 2020년 2월(잠정, 사업시행지침서 반영)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2)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개선됩니다.

-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 (거치·상환)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 최대 3억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개정 : 최대 3억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 추진배경 짧은 거치기간(3년)으로 신규 창업 후 경영 안정화 이전에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해결
- 주요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3억원, 금리 2%) 지원조건 개선
 - (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 → (개정) 5년 거치 10년 상환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78)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9.2학기부터 도입되었으며
- 2020년부터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비농대생(3~4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합니다.
-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 부여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 비농대까지 확대

- 추진배경 농업 전공 외 다양한 분야 출신의 청년의 농업농촌 진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취창업 의무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 주요내용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농대 재학생(3~4학년)에서 비농대 재학생(3~4학년)까지 확대
- 시행일 20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은 '19. 12월 중 실시 예정)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6)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일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축산물이력법(법률 제16114호)

닭·오리·계란 이력제 확대 등 축산물이력제 안전성 강화

- 추진배경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 증대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
- 주요내용
 - ①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국내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현행) 국내산 소·돼지, 수입산 소·돼지
 - (개정)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계란, 수입산 소·돼지
 - ② 가축거래상인에게 가축(소, 돼지, 닭, 오리) 거래시 이동신고 의무 부여
 - 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 공개(표시·게시)
 - (현행) 수입산 소·돼지
 - (개정) 수입산 소·돼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계란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8)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됩니다.

- 현행 : 65세(근거 : 삶의 질 법 제19조의5 제1항)
- 개정 : 70세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상향

- 추진배경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시 일반적인 취업가능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 상향 필요
 - 대법원은 평균연령·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19.2.21선고)
-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70세로 변경
- 시행일 2020년 7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58)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피해를 주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위생 상 위해하거나 경관 훼손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

■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하여(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빈집정비 사전 절차 부재〉 정비명령 → 직권철거
- 개정 : 공익신고 → 현장조사 → 행정지도 → 정비명령 → 직권철거

■ 개정내용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농어촌정비법」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

농촌빈집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 추진배경 농어촌지역의 위해한 빈집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
- 주요내용 정비명령 전 사전조치로 ‘공익신고 → 빈집조사 → 행정지도’ 절차 마련
- 시행일 2020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59)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어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를 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현행 : 건축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개정 :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이 4,0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 사업대상 토지 등 담보 제공 필요

- 현행 : 3,000만원
- 개정 : 4,000만원

■ 개정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 추진배경 사업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초기 비용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신청조건)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로 확대
 - (선금) 융자·대출금 상한액을 4,000만원까지로 확대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044-201-1410)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 됩니다.
 - 현행 : 유효기간 없음
 - 개정 : 최초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 경과시 등록정보 말소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법령개정 보도자료

경영체등록정보의 유효기간 설정

- 추진배경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부실경영체(특히, 대도시) 최소화 및 경영정보 현행화(3년 이내 정보갱신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등록 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함
 -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등록정보를 말소
- 시행일 2020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044-201-1410)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예) 등록된 경영정보가 농업용 면세유 배정시 등록여부뿐 아니라 시설규모,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을 확인하여 규모에 맞게 적정량 배정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법령개정 보도자료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 추진배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어업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정보를 확인하여 경영정보의 현행화와 보조금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시 경영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 등록정보와 불일치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 시행일 2020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2)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됩니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인증으로 운영됩니다.
 -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축산법 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예정)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 추진배경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축산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 감축 추진
- 주요내용
 - 축산법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운영 근거 마련 (11개조 신설, 6개조 개정)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용어 삭제(부칙 개정)
 - (이관방향)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농약기준 등 항생제 사용 저감 취지와 관련이 적은 인증기준은 삭제 또는 보완
- 시행일 2020년 8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2)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는 대체초지조성비를 한번에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몇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초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는 초지법 하위법령 개정시 확정할 예정입니다.
 - (잠정안)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 이내로 분할납부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초지법 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예정)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제도 도입

- 추진배경 초지를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초지법에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근거 신설(제23조제12항)
 -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
- 시행일 2020년 6월 11일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21)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 기존 민간 가이드라인용으로 제정된 '고령친화식품 표준'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표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19.12)
 - 주요 개정 내용 : ① 식약처 규격을 적용한 영양성분 품질기준 분석법 기준 마련 ② 다양한 물성을 가진 식품의 물성 분석이 용이하도록 각 단계별 분석법* 별도 규정 ③ 표시문안 마련
 - * 1단계 : 고형의 식품용 분석법 적용, 2~3단계 : 페이스트형 식품용 분석법 적용
- 개정된 표준과 제정된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2020년부터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제도시행 보도자료(예정)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 추진배경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인증제(KS) 도입 및 실시
- 주요내용
 -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기존 표준을 개정 및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
 -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인증 신청 시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
 - 인증제품은 표준에서 정한 표기문안(심벌, 단계표시 등)을 제품에 표기 가능
- 시행일 2020년(상반기)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2)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합니다.

-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매년 11월 22일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을 통해, 김치의 날을 기념하여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법령시행 보도자료(예정)

김치의 날 (11월22일) 지정

- 추진배경 김치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를 위해 '김치의 날' 지정·홍보로 김치산업 진흥과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매년 11월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
- 시행일 2020년 하반기(잠정, 「김치산업 진흥법」개정안 국회심의중)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8)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통한 관련 피해 경감 및 우수 기술 확보를 위한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합니다.

- 일몰사업인 '농생명자원산업기술개발' 내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던 작물 보호 분야를 핵심 추진 사업으로 기획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작물 바이러스·병해충의 방제, 무병묘 생산기술, 항바이러스제 개발, 진단기기·검사법 개발 등
-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에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8)

농촌 인구 감소 및 여성·고령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발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농기계의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한 '첨단농기계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합니다.

- 기존 '첨단생산기술개발' 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품목별 일관작업 시스템 확대, 무인·자동생산 기술개발, 부품 및 기술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를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농작업 보조 어시스트슈트, 무인·자동화 수확용 농기계, 고효율 농기계·핵심부품 국산화, 여성·고령 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
-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에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신·변종 작물 바이러스, 병해충의 증가로 생산성·품질 저하 등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상황으로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병 및 병해충 관련 진단 및 방제 기술 개발 등 중점 분야별 연구개발 지원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 개발 지원

- 추진배경 융복합 기술 기반의 첨단 농작업기 개발을 통해 농업 노동력 감소 등 주요 농업현안 대응 및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시장 선점
- 주요내용
 - (농기계 산업혁신) 품목별 일관작업 시스템 확대, 생육데이터를 활용한 무인·자동 생산 기술 개발 및 다중 제어 기반 구축
 - (농기계 단기 고도화) 기 개발 기술(농진청 등) 연계 산업화 제품 개발 및 현장 확산, 부품 및 기술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8)

주요 농식품 분야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합니다.

- 기존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사업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수 대학원 설립 및 벤처·창업기업의 연구인력 재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 기존 연구센터는 신규사업의 내역으로 통합하여 추진
 - 지원분야 : 동물감염병, 스마트 농업 등 교육훈련(특수대학원) 프로그램 구축 및 연구 수행 지원, 벤처·창업기업 연구인력 재교육 및 현장 애로기술 연구 지원
- 관련 공고는 '19년 12월 실시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8)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국민 참여형 R&D로 해결하기 위한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합니다.

- 국민이 체감하고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농촌 현안 문제를 선별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전략적 해결 모델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멧돼지 등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농촌 폭염·가뭄피해 저감 관련 연구, 축산 약취 저감, 농작업 안전관리 등
-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 **추진배경**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식품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주요내용** 현장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분야별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인력 양성 사업으로 차별화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집정, 세부계획 수립 중)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 **추진배경** 농촌 고령화, 농업생산 불리여건 확대, 수급불안정 등 주요 농업·농촌 현안 및 국민 생활 애로사항에 대한 과학기술 기반의 문제해결 요구 증대
- **주요내용** 농업시설·기반 환경, 농촌 생활환경, 농업생산환경 3개 세부 추진 분야를 설정하고 부·청 공동으로 관련 연구 수행 및 지원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집정, 세부계획 수립 중)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6~7)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으로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인증 사업자 등 관리·감독 강화로 친환경농업의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인증기관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친환경농어업법

친환경농어업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①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의 정의를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재설정
 - ②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 ③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
 - ④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 ⑤ 연속 3회 최하위 등급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 ⑥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
 - ⑦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 조치 및 조치명령 공표 근거 마련 등
-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6~7)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 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과 정 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내용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

-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교육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친환경인증 사업자 기본교육 도입

- **추진배경**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 후속조치
- **주요내용**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2020년부터 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12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 * ('12~'16년) 어가당 50만원/년 → ('17) 55 → ('18) 60 → ('19) 65 → ('20) 70
- '20년부터는 접경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되어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 *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61)

해양수산부가 2019년 7월 수립·발표한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전 해역에 걸쳐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각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 또한,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통해 해양에서의 이용·개발 계획이 해양공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 개정 내용은 2020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제정 보도자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개요

- **지원목적**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
- **근거법**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14.10월 제정/'15.4월 시행)
- **신청대상**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

해양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 **관리방향** 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및 해양공간의 계획적 이용
- **주요내용**
 - 해양공간에 대한 공간특성평가, 이용·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용도구역(9종) 지정
 - *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군사, 항만·항행, 안전관리
- **시행일**
 - 2020년 수립 예정 : (영해) 경기만, 부산, 경남, 전남, 제주, 울산, 전북, 충남(EEZ) 서남해안, 서해안
 - 2021년 수립 예정 : (영해) 강원, 경북 (EEZ) 동해안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 043-719-3245)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044-201-2978)

원유(原乳 시중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됩니다.

-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현행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정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시·도 검사기관)
- '19년 12월까지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 *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농식품부 공동 고시) 제정('19.12.)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제도 도입

- 추진배경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보건 증진
- 주요내용
 -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체계 강화
 - 현행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정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시·도 검사기관)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 043-719-3259)

계란 냉장유통 활성화를 통한 식품사고예방을 위해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예산 : 18.75억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내용 :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25백만원)의 60% 지원(최대 1,500만원 한도, 국비 30%·지방비 30%, 자부담 40%)
 - *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1월 중 공고 예정

계란 냉장차량 지원
(차량구입비) 사업

- 추진배경 계란 냉장유통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 주요내용
 - 대상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지원기준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
 - 예산 : 18.75억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내용 :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25백만원)의 60% 지원(최대 1,500만원 한도,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시행일 2020년 1월 (공고 예정)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 043-719-6259)

수입물량이 지속 증가하는 수입김치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 2020년 국민이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 실태조사 및 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위생취약 부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수입김치 수입량(톤) : ('16) 254,911 → ('17) 276,454 → ('18) 294,003

** 유통단계별 보관온도, 청결상태 및 수거검사 등 유통실태 조사

■ 아울러, 해외 김치제조업소에 대해 HACCP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제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주기 수입김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 해외제조업소 HACCP도입 → 수입통관단계 검사 → 유통 구조 개선

수입김치 유통관리 강화 사업

- **추진배경** 수입김치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및 정책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강화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수입김치의 유통단계별 위생관리 실태 조사 실시
 - 수입김치 안전성검사 및 현지 제조업소 HACCP기술 지원
- **시행일** 2020년 1월 ~ 12월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8875)

목재 특성부터 목재 체험, 목공 기술까지 목재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목재 교육 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추후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보유자,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목공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전문교육 과정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목재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 **추진배경** 목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체계적인 교육 및 체험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격
- **주요내용**
 -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강해야하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강의, 실습 시간으로 구분
 - 목재교육개론(39시간), 목재교육실무(88시간), 목재교육방법론(41)시간 및 응급처치교육(8시간)
- **시행일** 2020년 1월 9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042-481-1841)

숲해설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관한 기준은 삭제하고 시설기준인 사무실 기준은 사무시설을 갖춘 주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의 자본금 1천만원 기준과 종합산림복지업의 자본금 3천만원 기준은 산림복지전문업의 청년창업 기회 확대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 또한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만 허용이 되었으나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2020년 새로이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와 이미 등록된 전문업의 경우에도 적용가능 합니다.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76)

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처방전 발급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또한, 나무병원에서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나무의사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나무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공지사항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 추진배경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시 자격요건 중 '자본금', '사무실' 마련 등이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일자리 확대 및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준 완화
- 주요내용
 - 산림복지전문업 자본금 규정 삭제
 -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 추진배경 수목진료 시 농약사용 안전성 강화 및 나무의사 전문성 제고
- 주요내용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 나무의사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
- 시행일 2020년 6월 4일(국무회의 의결 대기 중)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042-481-184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인력기준을 산림복지전문가를 보유한 산림복지전문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시설별 인력기준에 맞추어 산림복지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하나, 해당 시설의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산림복지전문업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2020년 새로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 하려는 경우와 이미 등록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도 적용가능 합니다.

참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 **추진배경**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록기준 완화 필요
- **주요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시 자격요건 중 인력기준을 해당시설별 인력 기준을 충족한 산림복지전문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산림청 산사태방지와 (☎ 042-481-8844)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였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과학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의 자문을 거쳐 해제 기준이 마련됩니다.
 -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후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대피체계 마련 등이 이루어집니다.
- 해제 판정표 및 기준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반영 될 예정입니다(2020년 초).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 기준 마련

- **추진배경**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
- **주요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기준 신설
 -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제45조의8 7항
 - 개선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 시 판정표 및 해제 절차 신설
- **시행일** 2020년 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042-481-8844)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해 실시되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가 개선됩니다.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로 일원화되어 있던 판정표를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하고 현장 반영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합니다.
 - 또한 판정표 내의 조사인자(인가 수, 사면경사, 모암 등)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반영될 예정입니다(2020년 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 추진배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를 개선하여 현장 반영도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정확성 제고
- 주요내용
 - 종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를 기초조사, 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
 - 판정표 내 조사인자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
- 시행일 2020년 초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nvironment · Weather

환경·기상



1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227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Before

환경부는 '17년에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1년까지 반도체, 알콜음료,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9.1.1.부터)
석유정제, 무기·정밀화학
비료, 질소화합물 제조

(18.1.1.부터)
철강, 비철, 유기화학

(17.1.1.부터)
발전, 소각, 중기공급

인허가 절차 간소화

맞춤형
기준 적용

After

'20년부터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됩니다.

(20.1.1.부터)
펄프,
종이,
전자제품

통합환경
관리제도
적용

※ (21.1.1.부터) 플라스틱, 섬유, 알콜,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2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228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시행일 : 2020년 4월 3일

Before

'20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확대)
수도권 외 중부권·남부권·동남권 권역(총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 설정 및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관리
- (사업장 총량관리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5년마다 지역총량 범위 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 또는 배출권 거래로 할당량 준수
- (기타 배출원 관리)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 시행

After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3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229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20년부터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됩니다.

- ①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유기물질 관리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함
- ②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
- ③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함

-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기존 시설 등은 아래와 같이 적용을 유예함
 -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2월 31일까지 총유기탄소량(TOC)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함
 - 기존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함
 - 기존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함

After



4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230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시행일 : 2019년 10월 29일

Before

기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였습니다.



After

'19년 10월부터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나오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하게 됩니다.



5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251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Before

지금까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경유		종유A	종유B	종유C
황 합유량 (%)	현행	국내 0.05	국제 1.0	2.0	3.0	3.5

After

'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되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황산화물 등)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구분	경유	종유A	종유B	종유C
황 합유량 (%)	개정	국내 0.05	국제 0.5 (20.1.~)	

•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도 중간검사·정기검사 신청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됩니다.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044-201-6717)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됩니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 환경부는 2017년에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콜음료,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홈페이지(<http://ieps.nier.go.kr>)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 단계적 적용 계획

- 추진배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 단계적 적용
- 주요내용 ① 10개 개별허가 → 1개 통합허가
② 획일적 기준 적용 → 업종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 적용
- 시행일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044-201-7582)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합니다.

- 첫째,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 둘째,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 셋째,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 대기관리권역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보도자료('19.11.6)

대기관리권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 **추진배경** 대기오염의 광역적 특징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
- **주요내용**
 - (대기관리권역 확대) 수도권 외 중부권·남부권·동남권 권역(총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 설정 및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관리
 - (사업장 총량관리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5년마다 지역총량 범위 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 또는 배출권 거래로 할당량 준수
 - (기타 배출원 관리)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 시행
- **시행일** 2020년 4월 3일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201-7067)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됩니다.

- 폐수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되며,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사업장 등은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추진배경** 수질오염물질 효율적 관리 및 하천 수질 개선
- **주요내용**
 - ①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유기물질 관리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함
 - ②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
 - ③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함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다만,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기존 시설 등은 아래와 같이 적용을 유예함
 -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유기탄소량(TOC)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함
 - 기존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함
 - 기존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함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44-201-736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19.10.29 시행)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나오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치매, 당뇨 등 단순 노인질환자의 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 개별로 포장한 후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하며, 냉장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각처리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하게 됩니다.
- 다만, 제도 시행일('19.10.29) 이후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병원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약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기저귀를 위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자원순환>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회용기저귀의 분류체계 개편

- **추진배경**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통한 안정적 의료폐기물 처리도모
- **주요내용**
 - ①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환자 등의 것, 혈액을 포함한 것으로 한정, 그 외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
 -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 안전한 처리방안 신설
- **시행일** '19.10.29부터 시행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현장혼선 최소화
 - '19.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할 수 있음
 - '19.12.31 이후라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할 수 있음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환경부 생물자원보전기관건강추진단 (☎ 044-201-7259)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할 국가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2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개원 예정입니다.

- 야생동물과 사람, 가축이 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람-가축-야생동물 간 질병 감염의 통합적 접근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 *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드기 매개질환),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메르스, 중동지역 낙타 등 매개) 등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 질병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국가적 대응, 국가방역체계 확립 및 기관 간 공조체계 확보, 야생동물 질병 발생에 따른 행정권 집행 등을 수행합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

- **추진배경** 국가 차원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 설치
-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원
- **규 모** 부지 17,255㎡(건축연면적 6,300㎡), 지상3층/지하1층
- **주요내용**
 -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사·진단, 조사·연구, 질병대응 기술개발
 - 야생동물-사람-가축 간 상호작용하는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확립 및 관련기관 간 공조체계 확보
 - 야생동물 질병 발생 등에 따른 행정권 집행
- **개 원** 2020년(예정)

생태계 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044-201-7222)

생태계서비스 국제 추세에 따라 생태계서비스를 조사·평가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조절·문화·지지서비스로 구분하며,
 - ※ (공급)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조절)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 (문화) 생태 관광, 경관, 휴양 등, (지지)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 정부는 생태계서비스를 조사·평가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원활동 및 정책결정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생태계서비스지불체계' 제도를 도입하여 습지,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노력한 개인, 기관 및 사찰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보호지역 등의 지정에 따른 재산적, 물질적 손실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자연자원의 훼손이 줄어들고, 깨끗한 공기·물 제공,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친환경농업, 습지의 조성 등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증진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 **목적** 생태계서비스 개념 정의 및 조사·평가를 통한 정량화,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
- **주요내용**
 - (정의·원칙)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조절·문화·지지서비스로 구분, 생태계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증진되어야 함
 - (평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자연자산 및 생태계서비스를 평가
 - (생태계서비스지불체계) 주요 보호지역내 토지소유자들의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시
- **시행일** 2020년 6월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51)

건축물·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로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20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연간 약 800만 마리, 하루 약 2만 마리의 야생 조류가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 등의 저감 사업을 매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 및 조사 결과,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점 또는 선 형태의 부착물(스티커, 테이프 등)을 5×10 규칙*에 따라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밝혀졌습니다.
 - * 5×10 규칙 : 대부분의 조류는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음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키로('19.3.14)'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044-201-6711)

2020년 하반기부터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이 추가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판매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금까지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만 해당되었습니다.
-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제품 제조·유통 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 **추진배경** 저탄소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주요내용** ① 법률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 명시(온실가스 감축 기여 추가)
②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 **시행일** 2020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공포 예정,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044-201-6714)

2020년부터 국민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동일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 자동차세 일시납부와 동일한 기간인 1월에 전액 납부 시 기존과 같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연도 상반기분의 10%를 감면해 드립니다.
- 그간 시군구 전화·팩스·방문만 가능했던 일시납부 신청이 온라인(위택스, 이택스(서울시))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 **추진배경**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 증진 및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일치
- **주요내용** ① 국민편의를 위해 일시납부 추가
• (기존) 3.16~3.31
• (변경) 1.16~1.31(자동차세 일시납부기간과 일치), 3.16~3.31
②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일시납부 신청 기간 : 1.16~1.31
- **시행일** 2020년 1월 16일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044-201-6890)

「대기환경보전법」(개정'19.4.2.) 제58조의3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며,
- 2020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75)에 따른 차종은 구매비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대기환경보전법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시행

- **추진배경**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주요내용**
 -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 '20년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용 상향 조정 : '19년 70% → '20년 100%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3)

대형사업장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가 실시간 공개됩니다.

- 현재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여 연 1회 공개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실시간 측정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추진배경**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 핵심 배출원 중 하나인 대형 사업장의 정보 공개와 감시필요성이 커짐
- **주요내용**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전산망에 실시간 공개
- **시행일** 2020년 4월 3일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6)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됩니다.

■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며, 도심 빌딩의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추진배경**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 **주요내용**
 - 배출허용기준 30% 이상 강화
 -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 도서 발전시설, 흡수식 냉난방기기, 동물화장시설 대기배출시설로 관리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6)

'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됩니다.

■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20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합니다.

※ 2021년에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을 부과

■ 한편, '20.1.1. 당시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0.12.31.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 **추진배경**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 **주요내용**
 -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 추가
 - '20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 부과
 - '21년에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 부과
 - '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 부과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3)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년부터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 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경유차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시 70%(1단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 (2단계)를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인정 기간 등 보조금 차등지급의 세부 내용은 예산 당국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 예정이며,
- 개정 내용은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어, 2020년 1월 1일 이후 조기폐차 접수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 **추진배경** 조기폐차 후 경유차의 재구매를 억제하고,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차등지급 도입 예정
- **주요내용**
 - 현행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조기폐차 시 70% 지급(1단계),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구매 시 30% 추가 지급(2단계)으로 개선
- **시행일** 2020년 1월1일(잠정)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

환경부 기후전략과 (☎ 044-201-6647)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18.7)에 따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주관으로 4대 원칙(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 평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부문별 배출목표와 실제 배출실적을 비교하는 종합평가 형태로 추진됩니다.
-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결과는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확정하여 부처에 정책방향을 환류하고 국민들께 공개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

- **추진배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매년 이행점검 실시
- **주요내용**
 - 국조실, 환경부 주관으로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감축실적 분석·평가
 -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결과는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부처에 정책방향을 환류하고, 대국민 공개
- **시행일** 2020년부터 매년 실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044-201-7116)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주민지원사업 지원 범위에 농기계 유지관리비가 추가됩니다.
- 주민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신고, 쓰레기 수거 등 자발적 마을환경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 지침의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 **추진배경**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주민 및 지자체·환경청의 개정수요 반영
- **주요내용**
 - 농기계 유지관리비 지원을 사업 범위에 추가
 - 복지증진사업에 주민의 마을환경 개선활동 지원을 추가
 - 주민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신고, 쓰레기 수거 등 자발적 마을 환경 개선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44-201-7180)

지하수 개발의 전문화 및 책임시공을 위하여 도입된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제의 등록 기준이 개선됩니다.

-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시 평가대상자산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개선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종전 : ① 보유·대여한 시설·장비, 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③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④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⑤ 보유 현금, ⑥ 임차 사무실·창고 등의 보증금
 - 개선 : “⑦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 추가
-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개선

- **추진배경**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자산평가액 산정 시 평가대상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
- **주요내용**
 -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 시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평가대상자산 범위에 허용
- **시행일** 2019년 11월 12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44-201-7049)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20년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의무제도가 없었습니다.
- 2020년 10월 17일부터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하는 등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 **추진배경**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신뢰도 향상
- **주요내용**
 - ①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함
 - ② 성능검사 판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③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 검사 판정서를 제공하여야 함
 - ④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정 취소된 시설 공급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등에 벌칙 부과(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 2020년 10월 17일
※ 성능검사 항목,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 마련중

가축분 퇴비 부속도 검사 제도 도입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044-201-7010)

가축분 퇴비를 부속하여 퇴비의 품질을 향상하고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규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업자 등 가축분뇨처리 업체는 연 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속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검사기준은 1,500㎡이상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업체는 부속후기 또는 부속완료, 1,500㎡미만의 배출시설은 부속중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제도 도입

- **추진배경** 퇴비 부속을 통한 퇴비 품질 향상 및 환경 영향 저감 등
- **주요내용**
 - (검사대상) 가축분뇨법 상 허가·신고 대상자(신고규모 미만 제외) 및 재활용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업체
 - (검사기준) 1,500㎡미만 배출시설 : 부속중기, 1,500㎡이상 배출시설, 분뇨처리업체 : 부속후기 또는 부속완료
 - (검사주기)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연 2회, 신고규모 배출 시설은 연 1회
* (검사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및 민간시험기관 등
- **시행일** 2020년 3월 25일
※ 세부사항은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속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참조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044-201-763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 경쟁우위가 가능한 국내 유망 물기업을 선정, 해당기업의 R&D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 「물산업진흥법」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한 물기업들은 공모 및 평가를 거쳐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된 물기업들은 지정 후 5년간 물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 혁신형물기업들은 정부가 설계한 지원 프로그램 중,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년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기업 신청·공모는 '20년 2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최근 제 개정법령>물산업진흥법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실시

- **추진배경** 확대되는 세계 물시장 선점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국내 물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 필요
- **주요내용**
 - 경쟁우위가 가능한 유망 중소 물기업을 선정,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기업 지원제도를 도입
 -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된 혁신형물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
- **시행일** 2020년 1월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 044-201-7652)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이 개선되어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절감됩니다.

-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그 대가로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 × 365일)로 산정하여,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 하게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 (예) 1~3월에는 일 최대 1,000톤의 하천수를 사용하나, 그 외 기간에는 100톤만 사용
- 이에 환경부는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기간별 산정으로 개선하며, 향후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하천수 제도개선 보도자료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 **추진배경** 하천수 사용료는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 × 365일)로 사전 허가량에 따라 산정·부과하여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 발생
 - **주요내용**
 -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 개선(연 단위 산정 → 기간별 산정)
- (예) 일 최대 1,000톤(1~3월), 100톤(그 외 기간)의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 현행 : 1,000톤 × 365일 × 52.7원(단가) = 약 19백만원 납부
 - 개선 : (1,000톤 × 90일) + (100톤 × 270일) × 52.7원(단가) = 약 6백만원 납부

• **시행일** 2020년 1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8)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19.4.2 공포, '20.4.3 시행)에 따라 '20년부터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관리의 초점이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됩니다.

현 행 (환경부고시)	개 정 안 (환경부령)
- 미세먼지(PM-10) - 지하철 200$\mu\text{g}/\text{m}^3$, 철도·시외버스 150$\mu\text{g}/\text{m}^3$ - 이산화탄소 - 혼잡시 2,500ppm, 비혼잡시 2,000ppm	- 초미세먼지(PM-2.5) 50$\mu\text{g}/\text{m}^3$(차종 구분 없음) - 이산화탄소 - 현행과 같음

-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의 경우 현재는 2년마다 1회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1회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한다' 보도자료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추진배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시행 대비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 **주요내용**
 -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
 - 차량 내 공기질 측정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측정주기, 측정항목, 측정대상 차량 등) 규정
- **시행일** 2020년 4월 3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확대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801)

'20년부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새롭게 지원하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도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 대해서만 지원해주었으나, '20년부터는 소규모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1동당 주택 철거 : 최대 344만원, 지붕개량 : 최대 427만원, 비주택 철거 : 최대 172만원 입니다.
-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창고와 같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새롭게 지원함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 **추진배경**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 **주요내용**
 - 슬레이트 주택의 철거·처리 비용을 동당 최대 344만원 지원
 -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하며, 동당 최대 427만원 지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동당 최대 172만원 지원
- **시행일** 2020년 1월
 - * 사업 신청은 관할 시·군·구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우리나라 '14.9 서명)」 신규 가입에 관한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개정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잔류성물질법)」 및 하위법령이 2020년 2월 20일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2020년 2월 20일부터 수은첨가제품(8종) 생산을 위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은 제조·수출입·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은첨가제품 8종〉

① 전지, ②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③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④ 스위치와 계전기, ⑤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⑥ 화장품, ⑦ 살생물제, ⑧ 비전자 계측기기(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체온계, 혈압계)

■ 또한, 수은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저장 목적에 한하여 수입국이 동의한 경우에 수출이 가능하며

- 수은을 수출하려는 사업자는 수출 90일 전까지 관할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미나마타협약 비준 보도자료

관리대상 잔류성오염 물질 확대

- 추진배경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 주요내용
 - (용도관리) 협약에 따른 수은첨가제품(8종)의 제조·수출입을 위해 수은, 수은화합물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 (수출 승인)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은 수출 90일 전 관할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신청
 - 환경청은 환경부를 통해 수입국에 수출을 통보하고 수입 동의여부(서면)에 따라 수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회신
- 시행일 2020년 2월 20일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 |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1.)으로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20.1)됩니다.

- 현행 : 유종에 따라 0.05%(국내용 경유) ~ 최대 3.5%(중유 C)

- 개정 : 최대 0.5%(국내용 경유는 현행과 같이 0.05%)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도 중간검사·정기검사 신청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됩니다.

【해역·유종별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비교】

구 분		경 유		중유-A	중유-B	중유-C
황함유량 (%)	현행	(국내) 0.05	(국제) 1.0	2.0	3.0	3.5
		II	↓		↓	
	개정	0.05	(국제) 0.5 (‘20.1.~)		(국내) 0.5 (‘21.1.~)	

참고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된다 (2019.6.25.)

■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0.1%)된 선박 연료유 기준을 적용(‘20.9)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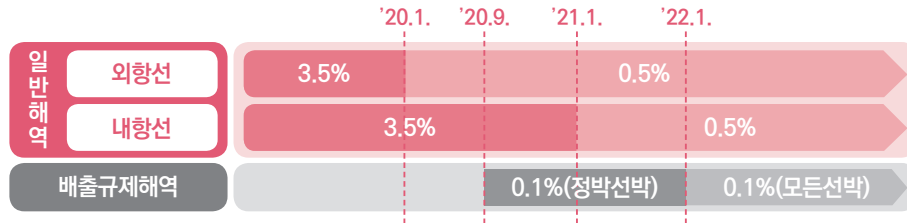
-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5대 대형 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행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5%(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5%)

- 개정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1%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5대 대형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배출규제해역 지정 시 황 함유량별 적용시기*



- (외항선박) '20.1.1.부터 0.5% 적용
- (내항선박) '21년도 해당선박의 검사일부터 0.5% 적용
- (배출규제해역) 1단계('20.9.1.) 정박·계류시, 2단계('22.1.1.) 해역 진입시 0.1% 적용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항산화물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8.28.)

■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신설('20.1)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 항만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은 하역장비의 제작시기 및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 신설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야드트랙터 등 항만전용장비(약 1,200대 규모)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2019.11.19.)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 추진배경 항만미세먼지 저감
- 주요내용 및 시행일
 -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2020년 1월)
 -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 지정(2020년 9월)
 -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2020년 1월)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Industry · Small and medium industry · Energy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세한 내용은 p.256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시행일 : 2020년 1월 14일

Before

'20년 1월 14일 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 7 기술지원이 종료됩니다.

-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PC운영체제인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위협 발생 가능
- 피해예방을 위해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 상위버전으로 업그레이드 권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은 종료일 이후 악성코드 탐지 등비상대중체계를 운영할 예정
- 교체 가능한 운영체제 :
 - 하모니카OS, 구름OS, 레드햇(Red Hat), 센트OS (CentOS), 페도라(fedora), 타이젠(TIZEN), 우분투(ubuntu), 리눅스민트(LinuxMint) 등

After



3 공정거래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274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시행일 : 2020년 5월

Before

지금까지 공사가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더라도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주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하도급자

원사업자

발주자

After

'20년부터 원·하도급업체 간 자율적 대금조정 유도 및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합니다.



하도급자

원사업자

발주자

2 중소벤처기업부

자세한 내용은 p.270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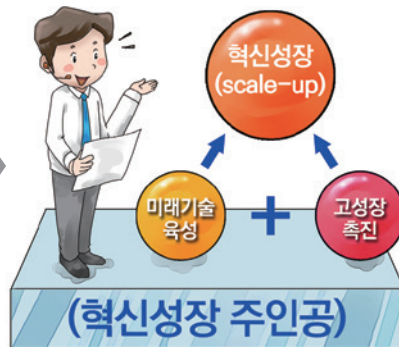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20년부터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합니다.

- 지원대상 : (미래기술육성) 혁신성장 및 미래기술 분야 영위 중인 업력 3~10년 기업 (고성장촉진)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10년 기업
- 대출한도 :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사설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 대출금리 : (업력 7년이상) 정책자금 기준금리, (업력 7년미만) 정책자금 기준금리△0.2%p

After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044-202-6461)

2020년 1월 14일 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 7 기술 지원이 종료됩니다.

-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새로 발견되는 보안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안조치가 불가능하여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등 보안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4일 이전까지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 버전(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교체 가능한 운영체제 : 하모니카OS, 구름OS, 레드햇(Red Hat), 센트OS (CentOS), 페도라(fedora), 타이젠 (TIZEN), 우분투(ubuntu), 리눅스민트(LinuxMint)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기술지원 종료 후 악성코드 탐지 등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윈도우(Windows) 7
기술지원 종료

- **주요내용**
 -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PC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7 기술지원 종료
 -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위협 발생 가능
 - 피해예방을 위해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버전으로 업그레이드 권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은 종료일 이후 악성코드 탐지 등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
- **시행일** 2020년 1월 14일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044-202-6451)

공공분야 보안관제 위탁업체로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양수·양도나 합병이 가능해 졌습니다.

-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사업 양수·양도나 합병에 필요한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행 : 관련 근거 없음
 - 개정 :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양도·합병 절차기준 신설('19.8.9)
- 다만, 보안관제 비전문기업이 양도·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전문기업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업무안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양수, 합병 가능

- **추진배경**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양수, 합병 등에 대한 명확한 절차규정이 없어, 기업 간 결합 및 사업규모 확대 등 곤란
 - 조달청·발주기관 등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기업 간 양도·합병 등에 대해 계약변경(전문기업 지위승계) 승인 사례가 없음
- **주요내용**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양도·합병 절차기준 신설
 - 전문기업 간 : 양도·합병 신청서류 확인 후 전문기업 지위승계
 - 전문·비전문기업 간 : 양도·합병 신청 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과 동일한 절차(서류 및 현장심사 등)를 거쳐 전문기업 지위승계
- **시행일** 2019년 8월 9일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8)

농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확산 모델 마련을 위한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합니다.

- 신기술 개발보다는 타산업분야 적용 기술을 농업현장에 접목하여 최적화하는 연구를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영농형 태양광 활용기술, 고효율 지열 활용기술, 목재펠릿 보일러 성능고도화, 열·전기·연료전지 등 생산된 에너지의 저장 및 효율적 관리시스템 기술 등
-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 043-870-5502)

현행 인증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출시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신규 R&D 사업(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적용 융합신제품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제품이 지원 대상입니다.
- 아울러, 개발된 인증기준에 융합신제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도 지원합니다.
- 이렇게 융합신제품의 적기 시장출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품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 소비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농산업 현장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 에너지 생산·소비 모델을 마련하여 현장에 확산
- 주요내용
 - 지열, 태양열(광) 등을 활용한 농업에너지 자립형 모델 생산·소비 기술 개발
 - 농촌에서 생산된 다양한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저장·관리기술 개발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

- 추진배경 규제 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제품의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개선 연구 지원을 통해서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
- 주요내용
 -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제품의 인증기준 개발 지원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신청제품의 인증기준 개발 지원
 - 개발된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융합신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지원
- 시행일 2020년 1월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044-203-4094)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 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됩니다.

-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국내복귀기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임차할 수 있고, 최대 50년간 장기로 임대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 재산의 임대료 산정 및 감면에 있어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 **추진배경**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 **주요내용**
 - 국내복귀 대상업종(현행) 제조업(개정) 제조업 +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
 -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수의계약, 장기임대, 임대료 산정 및 감면)
- **시행일** 2020년 3월 11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 044-203-588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이 확대됩니다.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판정하고, 제재조치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6월 10일부터는 조사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현행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 개정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참고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정보·자료>무역구제법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기간 변경

- **추진배경**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신청기간 변경
- **주요내용**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변경
- **시행일** 2020년 6월 10일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044-203-5237)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를 ‘액화천연가스냉열 이용자’라 하고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수요자에 포함하였습니다.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 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회사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가스공사에서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업무마당>최근개정법령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 **추진배경** 액화천연가스(LNG, -162℃)를 천연가스로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Cold Energy)의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
 - 냉열이용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제한적 처분
 - 가스공사는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한 냉열이용자에 천연가스를 공급중지
- **시행일** 2020년 3월 10일('19.12.10. 공포,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조달청 혁신조달과 (☎ 042-724-7347)

조달청은 정부혁신 역점분야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20년부터 구축·운영합니다.

- 기존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계약한 상품·규격화된 제품 위주로 거래되어 혁신조달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고 혁신제품의 등록·거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예) 다수공급자계약(MAS)제품의 경우 동일 세부품명기준으로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계약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어 새롭게 개발한 혁신제품을 등록하기에는 제약
- 또한 정부기관이 필요한 혁신수요와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제품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혁신제품의 거래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 조달청은 수요발굴부터 공공구매까지 통합 지원하는 열린장터 형태의 혁신조달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제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속한 등록·거래를 지원합니다.
 - 또한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공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연계를 지원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구체적으로 혁신조달플랫폼은 ▲혁신에 대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 조사 통합운영, ▲혁신제품전용몰,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됩니다.
 - ① 먼저, 혁신조달에 대한 ‘의견제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의 수요와 기업의 공급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해 해당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키고 수요와 공급 간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 또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별로 추진하던 공공 연구개발(R&D)사업의 수요조사 창구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합니다.
 - 통합창구를 통해 수요 제기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이 정부에 원하는 수요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때 유용하게 참고하고자 합니다.
 - ② 다음으로, 혁신제품전용몰을 통해 각 부처 우수R&D제품,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신제품(NEP)·신기술(NET)·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 벤처나라제품 등을 열린장터 형태로 업체가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 그간 수요기관과 업체별로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혁신제품탐색 절차를 플랫폼으로 온라인화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비교가능한 상품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달의 '구글'로 만들어 구매편의를 크게 제고하고자 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플랫폼에서 구현하여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익계약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하고 수요기관의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

**과업규격을 발주자가 설정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쟁을 통해 과업규격에 반영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 기존 종합쇼핑몰은 상용품·규격화된 제품위주로 거래되어 혁신조달업체의 진입장벽이 높고 혁신제품의 등록·거래에 어려움 존재 •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혁신 수요와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부재 → 정부기관과 업체 모두 수요탐색, 제품탐색에 상당한 기간 소요 • 종합쇼핑몰, 벤처나라, 나라장터 등 개별적인 시스템을 각각 검색하여 정보획득	• 조달청이 단가계약하는 기존 쇼핑몰 형태가 아닌 열린장터(Open Market) 형태의 혁신제품 전용몰을 구축 - 혁신조달업체는 개발한 제품을 자유롭게 등록·판매할 수 있어 판로개척에 큰 도움 - 정부기관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향상된 제품·솔루션을 쉽게 비교 검색하여 구매가능 • 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정부부처의 한 단계 높은 수요제시 → 제시된 수요를 기반으로 기업은 제품·솔루션을 개발 → 특허거래전문가 등 전문가pool을 통한 수요공급 매칭으로 정보비대칭 해소하여 수요와 공급간 신속한 매칭 지원 • 인공지능(AI) 기반의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종합쇼핑몰, 벤처나라, 나라장터에 존재하는 제품정보, 업체 정보, 입찰공고 내용 등을 통합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편의를 크게 제고	조달청 혁신조달과 (042-724-7347)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 02-2079-6983)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주관: 방사청)와 보안감사(주관: 국방부)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근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20년, 기존의 방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안감사가 통합 추진됩니다.

- '20.1월,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공통점검항목을 기반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자가진단표'를 사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취약점 점검 등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1년 이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유출방지대책에 '20년도 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 "통합 실태조사 점수" 및 "통합 실태조사 우수업체 표창" 항목을 신설할 예정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추진 계획

- 추진배경 방산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관행 확산
- 주요내용
 - ① 실태조사와 보안감사를 통합실시하여 업체의 부담 경감
 - ② 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 반영
- 시행일 2020년 2월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 02-2079-6932)

방위사업청에서는 1974년 이후 45년만에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유인하고 절감된 원가는 업체의 이윤으로 보상되는 구조로 개선하였습니다.
-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 → 6개)하고, 수출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윤구조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증대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특히, 국산화부품 사용 시 체계업체 이윤 상향(3% → 10%)과 중소기업 외주가공시 이윤 상향(4% → 10%)을 하였으며, 원가부정 시 과도한 이윤 환수 제도 등을 폐지하였습니다.
- 업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원가자료의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 방산업체가 책임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의 원가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예정가격 결정절차를 간소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참고**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2.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3.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4.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 **추진배경** 집행정지 남용으로 인한 적격심사의 실효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기간 중 감점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불공정행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의 행위 이력에 대한 감점
 -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무효 또는 취소 확정 전이라면 평가에 반영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 「방산원가구조 개선」의 제도 운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의 제도 운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 02-2079-6958)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원가/통계팀 (☎ 02-3270-6033)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권리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및 사용지침을 작성하였습니다.

-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위에서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방산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계약형태별(확정/정산) 원가검토 기준 등 방산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표준문안으로 작성하고, 개선 취지 등 세부내용을 “사용지침”에 담았습니다.
-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방위산업분야 하도급거래(계약)에 적용되며, 표준양식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권고사항)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방산정보>업무서식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신설

- **추진배경** 방산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관행 확산
- **주요내용**
 - 방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하도급거래 표준양식 신설
 - 계약형태별(확정/정산) 원가검토 및 제출 기준 개선내용 해설(사용지침)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예정)
 - *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의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김(권고사항)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2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격심사 감점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신설된 사유인 불공정행위 이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적용합니다.
 - 또한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28일 발령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 추진배경 집행정지 남용으로 인한 적격심사의 실효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기간 중 감점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불공정행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의 행위 이력에 대한 감점
 -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무효 또는 취소 확정 전이라면 평가에 반영
- 시행일 2019년 11월 28일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분석과 (☎ 02-2079-6326)

민간분야 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를 개선합니다.

*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주요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국과연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보유기술이 국방분야에 최대한 활용되어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해명자료)보도자료)민간 기술자원을 국방 연구개발로 활용 확대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신설

- 추진배경 폐쇄적 국방연구개발 환경을 개방형으로 전환, 국내 연구개발, 업체주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국방기술을 국과연, 방산업체 위주로 평가하던 현 제도를 정출연 및 민간연구기관 등의 국가기술 역량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변경
- 시행일 2020년 1월 1일(예정)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2-481-4382)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6,000억원)을 신설합니다.

■ 미래기술육성 및 고성장촉진자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지원 대상 】

구분	지 원 대 상
미래기술육성	혁신인프라 및 3대 신산업, 8대 선도사업 등 혁신성이 높은 미래기술 분야에 영위 중인 업력 3년~10년미만 중소기업 * 혁신 인프라 분야 : Data-AI-5G 등 핵심 인프라, 산업간 연결·융합 촉진 * 3대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경쟁력이 높은 핵심분야 * 혁신성장 공동기준 : 9테마, 45분야, 300품목
고성장촉진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년~10년 미만,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지방 소재기업은 15%), 3년 연속 고용이 증가한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서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 기업 *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동 자금은 중소기업의 업력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며,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10년으로 운용됩니다.

참고 중소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공고>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
신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미래기술육성) 혁신성장 및 미래기술 분야 영위 중인 업력 3~10년 기업
 - (고성장촉진)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10년 기업
 - 대출한도 :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 대출금리 : (업력 7년이상) 정책자금 기준금리, (업력7년미만) 정책자금 기준금리△0.2%p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042-481-1643)

벤처투자에 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현재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투자제도를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도입합니다.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방식으로서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이 결정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집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총 운용자산(자본금 + 운용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 제정내용은 2020년 6월 이후(잠정, 제정안 법사위 가결) 적용됩니다.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 **추진배경** 벤처투자 제도의 일원화 및 벤처투자 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
- **주요내용**
 - 현행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 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산정기준을 총 운용자산 기준으로 변경
 -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 **시행일** 2020년 6월 이후(잠정, 제정안 법사위 가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1688)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존에는 39세 이하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 동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20년부터 40세 이상 중장년층 포함)
 - 지원대상(규모) : 일반, 소셜벤처, 여성, 4차산업 등 1,700명
- 개선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추진배경 40세 이상(중장년층)의 예비창업자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주요내용
 - 지원대상을 기존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에서 중장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신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4523)

스타트업의 창업초기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단계까지 패키지형 일괄 지원사업이 '20년부터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를 통해 운영됩니다.

-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수축사회 진입에 따라 대기업 중심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경제로 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 창업초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검증하고, 글로벌 제품 출시, 투자유치 등 글로벌화를 지향합니다.
 - 아울러 정책지원(정책자금* 등 연계) 사업예산 확대 및 Fast Track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기업의 글로벌 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
- * 정책자금(중진공 운영) 실적: ('16년) 118억원 → ('17년) 311억원 → ('18년) 545억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개요

- 추진배경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창업 7년 이내 기업
- 지원규모 50개사('20년 예산(안) 108억원)
- 주요내용
 - 국내외 글로벌 창업기관 교육 및 코칭, 제품·디자인 현지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현지법인 설립 등 글로벌화 지원
 - * 글로벌 사업화 지원금 : 최대 2억원(총 사업비의 70% 이내)
- 시행일 2020년 2월(예정)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84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 즉, 현행 규정에 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발생 사유가 보다 확대됩니다.
 - 현행 :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
 - 개정 : 공급원가의 변동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
- 또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현행 규정에 비해 확대됩니다.
 - 현행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개정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개정법은 11월 말 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및 증액신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하도급법개정안 통과 보도참고자료('19.10.31.)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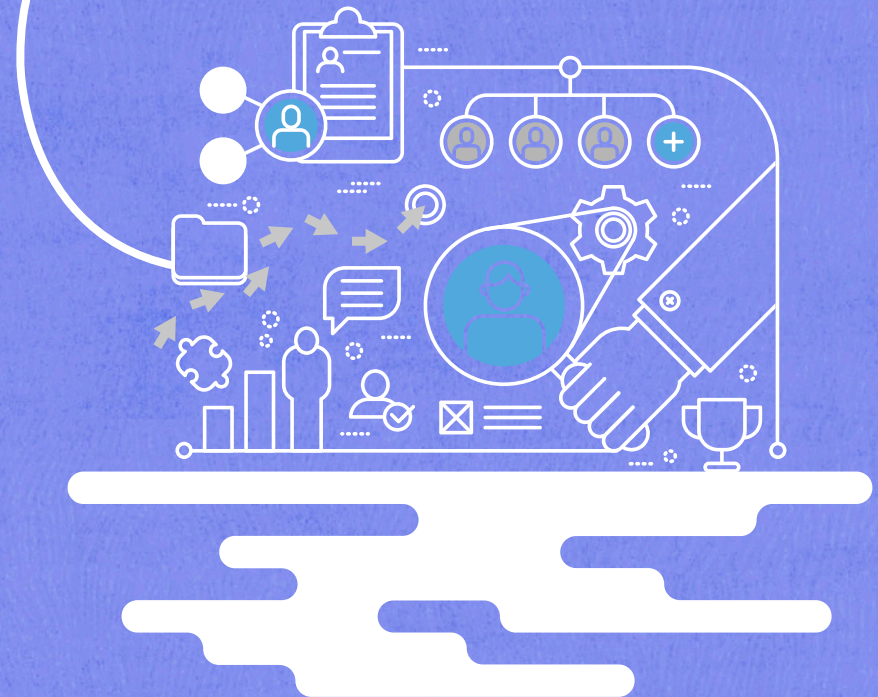
- **추진배경** 원·하도급업체 간 자율적 대금조정 유도 및 비용분담 합리화
- **주요내용**
 -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신청 가능
- **시행일** 2020년 5월(예정)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Health ·
Welfare ·Employment

보건·복지·고용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5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After

'20년부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합니다.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
- 연간 48만원 상당 지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읍·면·동 주민 센터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

• 시범지역 : 전국 27개 시·군



3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28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After

'20년 1월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25~64세 근로소득공제(30%)를 통해 일하는 수급자 보장 강화
- 수급권자 재산 기준 완화



2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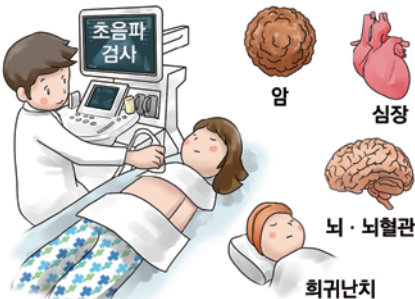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28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 : 2020년 상반기

Before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After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20년에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상), 흉부(유방)(20.하)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4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288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시행일 : 2020년 1월

Before

소득하위 20% 어르신(156만명)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After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확대할 계획

5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289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시행일 : 2020년

Before

'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지급



After

'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



•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7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291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시행일 : 2020년

Before

지금까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왔습니다.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필수의료 예산 지원
 - 시설·장비 지원 : 994억
 - 우수인력 파견 : 50명

- 지역내 필수의료 연계
 - 퇴원환자 의료복지 연계 등 지원 → 국립대병원 10개소

After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강화대책' 발표('19.11.11)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필수의료 예산 지원 확대
 - 시설·장비 지원 : 1,097억
 - 우수인력 파견 : 55명

- 지역내 필수의료 연계 확대
 - 퇴원환자 의료복지 연계 등 지원 → 국립대병원 12개소, 지방의료원 15개소

6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290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치매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 경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종전
치매안심센터 운영	• 인지지원등급 받기 전까지만 쉼터 이용 • 쉼터 이용시간 1일 3시간
치매전문병동 설치	•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치매전문병동 설치
치매공공후견 지원	• 후견심판절차비용, 중앙지원단 운영비 지원

After

'20년부터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관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구분	종전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	•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 이용 가능 • 쉼터 이용시간 1일 최대 7시간
치매전문병동 추가 설치	• 공립요양병원 5개소 치매전문병동 추가 설치
치매공공후견 지원 확대	• 후견활동비, 후견인 양성교육, 광역지원단 운영비 신규 지원



8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292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Before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원~11만5천원)의 30%를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 (환자 유형 예시)
 -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수술 직후, ③말기 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안공호흡기 등),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

After



9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293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시행일 : 2020년 1월

Before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강화,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After

'20년부터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강화합니다



10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294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그 동안 소아당뇨환자들은 하루 수차례씩 채혈침과 검사지를 통해 혈당을 체크하고, 주사기를 통해 인슐린을 주입해야 해서 학교생활 등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After

'20.1월부터는 제1형(소아)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금액의 70%(기준금액 이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어, 일상생활 중 혈당관리가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11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304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18년부터 주 최대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단계적)



After

'20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12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30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19년에는 최저임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After

'20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여전한 소상공·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3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306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20년부터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 실업, 재직 등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없이 하나의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
- ② (지원내용)
유효기간 5년(갱신 가능), 지원한도 300~500만원
- ③ (자부담 개편)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

After



국민내일
배움카드



• 취업성공패키지 | 유형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자부담을 경감

15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30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시행일 : 2020년 1월 16일

Before

-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합니다.
- 특히 하청 노동자들을 산업재해 사고로부터 보호할 필요 있습니다



After

-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20.1.16부터 시행됩니다.



1. 원청의 책임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2.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 등 제한하였습니다
3. 산재예방 능력 있는 수급인 선정 등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14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307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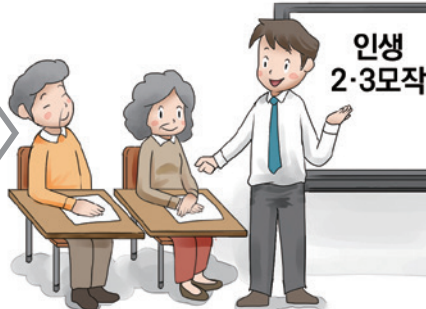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Before

'20.5월부터는 퇴직 이전부터 인생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함께 지원합니다.

- 대기업은 아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국가에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After



16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310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Before

'19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월 1,048,000원이었습니다.



2019년 부담기초액
현행 : 1,048,000원~
~1,745,150원(5단계)

After

'20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월 1,07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0년 부담기초액
개정 : 1,078,000원~
~1,795,310원(5단계)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324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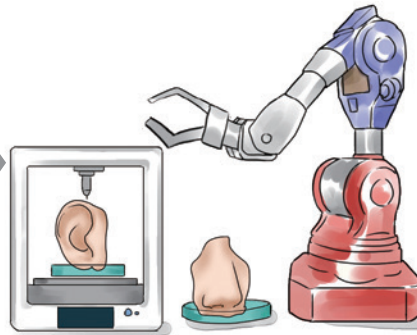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Before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19.4.30. 공포/20.5.1. 시행)에 따라, 새로운 혁신 기술이 포함된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촉진을 통한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의 경우에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통하여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조직, 세포, 혈액 등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기준 도입, 변경허가 내가티브 도입 등이 추진됩니다.

After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326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형태 조사

시행일 : 2020년

Before

'20년부터 생활하수를 분석하여,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을 추정하는 '신종·불법 마약류의 사용형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하수역학 기반 지역별·시기별 마약류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사용형태 자료 작성
- 모니터링 결과분석·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한 마약류 사용 예측 모니터링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
- 전국 57개소 공공하수처리장 생활하수 중 마약류 함량 분석

After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2)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합니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입니다.
 -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됩니다.
 - 시범지역 : ① 광역시·도 단위 사업(2곳): 충북, 제주
 - ② 시·군·구 단위 사업(14곳):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홍보>친환경농업육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 추진배경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
- 주요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읍·면·동 주민 센터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20년에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上), 흉부(유방)·심장(20.下)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상복부(18.4월), 하복부·비뇨기(19.2월), 응급·중환자(19.7월), 남성생식기(19.9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완료

■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上), 흉부·심장(20.下)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
 -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 **시행일** 2020년 상반기에 여성생식기, 하반기에 흉부·심장 초음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4)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집니다.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또한 기준에 아들·미혼의딸(30%)과 결혼한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부양능력 미약' 구간)인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부양비)으로 간주, 수급자격 및 급여 수준에 영향

■ 신규로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하여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가 없는 경우, 일해서 버는 소득만큼 생계급여 감소

■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 또는 급여가 감소하던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보도자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추진배경**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기본재산공제, 주거용재산한도 인상 등 재산기준 완화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1)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8.7.18)에 포함

-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156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 2020년부터는 인상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 향후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확대할 계획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1)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12월말 배포 예정)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배포 예정(12월 말)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어르신으로 확대
 - 현행 : 소득하위 20% 어르신(156만명)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개정 :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확대할 계획
- **시행일** 2020년 1월(잠정, 법 개정안 국회 심의중)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 **추진배경**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을 통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주요내용**
 -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2020년 1월(잠정, 개정안 국회 심의중)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044-202-3537)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연장됩니다.

- 2020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됩니다.
- 2019년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2020년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됩니다.
-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주요내용

- **추진배경** 치매환자와 환자가족의 고통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 **주요내용**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를 통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 치매환자 전문 치료·관리를 위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지속 확충
 - 치매환자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성년후견 이용지원 확대 등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044-202-2533)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합니다.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 기능보강 예산 [국비기준] : ('18) 530억 → ('19) 994억 → ('20) 1,097억(107% 증)
-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해 나갑니다.
 - * 파견 의료인력 지원 규모 [국비기준] : ('19) 50명 → ('20) 55명(10% 증)
- '20년부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나갑니다.
-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 * 협력사업 예산 [국비기준] : ('19) 권역 10개소 국립대병원(30억) → ('20) 권역 12개소 국립대병원(24억), 지역 15개소 지방의료원(18억)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 **추진배경**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19.11.11)
- **주요내용**
 -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필수의료 조정·연계
 - 17개 권역, 70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순차적 지정 및 필수의료 조정·연계 추진
 - 공공병원 필수의료 예산 지원 확대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지원 확대 : '20년 1,097억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20년 55억(55명)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확대 : '20년 42억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5)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이전에도 왕진은 가능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활성화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왕진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 의료기관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 사업에 따른 왕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환자 유형 예시) ①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 수술 직후, ③ 말기 질환, ④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 호흡기 등), ⑤ 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 욕창 및 궤양, ⑦ 정신과적 질환, ⑧ 인지장애 등
 -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원~11만5천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7)

노인일자리 64만개에서 74만개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에사회참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공익활동의 참여기간을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연중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9) 2만개 → ('20) 3.7만개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어르신이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
- **주요내용** ① 노인일자리 확대(64만개 → 74만개)
② 공익활동 참여 기간 연장 (9 → 최대 12개월)
③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기준 완화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만 65세 이상
- **시행일** 2020년 1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1)

앞으로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입니다.

* 연속혈당측정기 : 연간 84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 : 170만 원(5년 기준)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혈당 관리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은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도자료

1형
당뇨 환자에 대한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 추진배경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17년 11월)에 따른 급여 실시
- 주요내용
 - 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해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요양비 급여 실시
 - 기기별 기준금액(연속혈당측정기 84만원/1년, 인슐린자동주입기 170만원/5년)과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7)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보안을 강화합니다.

-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의 후속처치로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됩니다.

-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위험 상황을 예방하게 됩니다.

- 강화된 응급실 보안기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개정 보도자료

안전한 응급실
이용을 위한
응급실 보안 강화

- 추진배경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18.11월))
- 주요내용
 - 응급실 인력기준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 추가
 -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전담 보안인력 배치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보안인력이 응급실 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 가능
 - 응급실 시설기준에 CCTV 등 응급실 보안장비 설치 포함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청년저축계좌 신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2)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됩니다.

-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매칭·적립하여 -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 단, 정부지원금은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3)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활사업 참여시 자활급여 외에 매출액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월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했습니다.
- '20년에는 매출액 사용 구조를 개편하여 인센티브를 월 최대 70만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개정 보도자료

청년저축계좌 개요

- 추진배경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대상)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
 - (내용)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 (적립액) 3년 만기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마련
 - (지급요건)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③ 교육 이수, ④ 지원금의 50% 사용증빙 등
- 시행일 2019년 4월 1일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 추진배경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현행 월 최대 20만원 → 월 최대 70만원)
 - 자활사업 참여 우선 순위 폐지
 - 차상위자 등 유선 홍보 강화 및 참여절차 간소화
- 시행일 2019년 10월 1일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52)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1,5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7,000명으로 확대됩니다.
 - 또한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개최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 **추진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4,000명('20년)
 - 서비스내용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100시간 (단가 13,500원)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대상자 : 중·고등학교 재학 발달장애 학생 7,000명('20년)
 - 서비스내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단가 13,350원)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58, www.broso.or.kr)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60)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2020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보도자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요

- **추진배경**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비스 통합제공
- **주요내용**
 -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제공으로 상태악화방지, 장기요양진입예방
 - 읍면동 신청접수·대상발굴, 서비스제공계획 시·군·구 승인 등 서비스 전달의 공적개입 책임·강화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 043-719-7312)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보다 강화된 결핵 조기발견 및 1: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합니다.

■ 노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검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19) 일부지역(전남, 충남) 노인검진 시범사업(1,123백만원) → ('20)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등 취약노인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6,356백만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검진대상인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약 50만명), 재가와상노인(약 18만명)

■ 또한,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19) 7개소 지원(770백만원) → ('20) 10개소 지원(1,100백만원)

■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을 아래와 같이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 (PPM의료기관) '19년 258명(8,868백만원) → '20년 297명(+39)(9,786백만원)

- (보건소) '19년 259명(8,910백만원) → '20년 668명(+409)(16,193백만원(국비 50% + 지방비 50%))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 043-719-9207)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66개국에서 65개국으로 변경됩니다.(시행일 2020. 1. 1.)

■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유행 중인 검역감염병 7종*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콜레라,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페스트, 황열,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 ① (콜레라) 17개국 → 19개국
- ②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국 5개 성·시 → 4개 성·시
- ③ (중동호흡기증후군) 10개국(변동없음)
- ④ (폴리오) 8개국 → 9개국
- ⑤ (페스트) 1개국 → 2개국
- ⑥ (황열) 42개국(변동없음)
- ⑦ (에볼라바이러스병) 1개국(변동없음)

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감염병>해외질병>검역감염병 발생지역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선정 실시

- **추진배경** 최근 1년간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에 따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현행화
- **주요내용**
 - 오염지역 변경(66개국 → 65개국*) * 감염병별 중복 국가 포함
 - 지정 : (콜레라) 브룬디, 에티오피아, 아이티, 수단 (폴리오) 앙골라, 중앙아프리카 (페스트) 콩고민주공화국
 - 해제 : (콜레라) 말라위, 알제리 (폴리오) 케냐
 - 변경 : (AI) 중국 5개 성·시 → 4개 성·시*
 - * 중국 4개 성·시 : 광둥성,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 043-719-7128)

2020년에 A형간염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감염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되었던 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지원
-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하여 안내할 예정
 - 20~30대(1980~1999년생) :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 실시
 - 40대(1970~1979년생) : 지정 의료기관에서 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자에 한해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합니다.

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자료)보도자료 발표 예정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 추진배경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부담 및 사망률 감소
- 주요내용
 - 20~40대 만성 간질환자 무료 예방접종 2회 지원
 - 20~30대(1980~1999년생) :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 실시
 - 40대(1970~1979년생) : 항체검사 후 음성인 자에 한해 예방접종 실시
- 시행일 2020년 1월~12월까지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50)

2020년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 유행균주의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하여 지원합니다.
 - 현행: ('19) 3가 백신 지원, 1,381만명
 - 개정: ('20) 4가 백신 지원, 1,461만명
-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 현행: ('19)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 개정: ('20)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중학교 1학년
- 개정내용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작일(2020년 10월 이후 예정)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자료)보도자료 발표 예정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대상자 확대

- 추진배경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통한 질병부담 감소
-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지원 백신을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 현행 : 3가 백신,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 개정 : 4가 백신,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중학교 1학년
- 시행일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작일부터 (2020년 10월 이후 예정)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545, 7972)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 300인 이상 적용
 - 개정 : 50인 이상 적용
-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현행 :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 아님
 - 개정 :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은 제외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노동시간 단축 법안 적용

-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 주요내용
 -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 '18.7월 : 300인 이상(특례제외업종은 '19.7월부터)
 - '20.1월 : 50~299인
 - '21.7월 : 5~49인
 -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044-202-7783)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하여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합니다.

*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주요내용
 -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 *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3, 7322)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

-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훈련비 자비부담률*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됩니다.
 - 현행 : ▲실업자: 30% 수준, ▲재직자: 0~40%
 - 개편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자비부담률 경감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 **추진배경**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
② (지원내용) 유효기간 5년(갱신 가능), 지원한도 300~500만원
③ (자부담 개편)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18)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 1,000인)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고용정책기본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 **추진배경** 정년퇴직·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사전 준비
- **주요내용** ① 사업주가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 부여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
- **시행일** 2020년 5월 1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97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업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됩니다.

* ①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 기사, ⑥ 쿠팡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 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1.1.1.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됩니다.

구분	대상	내용
대표이사 (‘21.1.1. 시행)	①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회사 또는 ②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부여
발주자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단계별(계획, 설계, 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확인·이행 의무 부여
가맹본부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으로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	가맹점의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및 안전보건 정보제공 의무 부여

■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 ① 도급인의 책임장소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 하는 위험장소로 확대
 - ② 도급인의 의무 :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등
 - ③ 의무이행 강화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
- *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

■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제한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 (종전) 인가 시 사내도급 가능 → (개정) 사내도급 원칙적 금지*

* 단,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 허용

-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
↳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

■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 건설공사도급인 의무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 안전관리자 : 선임대상 공사 규모 확대(현행 : 120억→개정 : 50억)

■ 이외에도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작업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관리 대상에 ‘전기업’을 포함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16일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개정 사항도 시행됩니다.

- MSDS 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종전 : 양도·제공)하는 자로 변경
-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비공개 :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함유량 기재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추진배경**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 **주요내용**
 - ① 법의 보호대상 확대 : (종전)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
 - ②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
 - ③ 도급인의 책임 강화 : 책임범위 확대, 의무 부여 및 이행 강화 등
 - ④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및 제한
 - ⑤ 건설업 안전 강화
 - 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 변경 등
- **시행일** 2020년 1월 16일
(대표이사 책임 : 2021년 1월 1일, MSDS 제출 : 2021년 1월 16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48천원 이었으나,
-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고용률	2019년	2020년
고용의무 이행률이 3/4이상	월 1,048,000원(부담기초액)	월 1,078,000원(부담기초액)
고용의무 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월 1,110,880원	월 1,142,680원
고용의무 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월 1,257,600원	월 1,293,600원
고용의무 이행률이 1/4미만	월 1,467,200원	월 1,509,200원
장애인 미고용	월 1,745,150원(최저임금액)	월 1,795,310원(최저임금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
- **주요내용**
 - 부담기초액 상향
 - 현행 : 1,048,000원 ~ 1,745,150원(5단계)
 - 개정 : 1,078,000원 ~ 1,795,310원(5단계)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3)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 *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일자리창출)>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고용상황 악화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의 취업난을 고려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 중장년층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5)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정년 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6)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노동자 수의 20% 한도 지원(대규모 기업은 10%)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사업 관련 보도자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시
장려금 지원

- 추진배경**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의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
 -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제도시행일 이후 2년간 지원
 -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일의 3개월 이전부터 도입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제출하여야 함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중장년 참고

60세 이상 노동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 추진배경**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 주요내용**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052-704-733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시기) 평일 : ~ 이용일 7일전까지, 주말·연휴·성수기 : ~ 이용 직전 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welfare.kcomwel.or.kr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휴양콘도 신청
- (선정방법) 평일 : 선착순, 주말·연휴·성수기 : 점수제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뉴스/공지사항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여가문화 확산
- **주요내용**
 - ① (이용대상 확대)
 - 현행 : 저소득 노동자(평일, 주말, 연휴, 성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 사업주 주관 워크숍(평일)
 - 개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 주말, 연휴, 성수기)
 - 산재보험특례적용자, 부서장 등 친목·휴양목적 단체이용(평일)
 - ② (선정시기 및 선정방법)
 - 현행 : 선정시기(주 2회), 선정방법(평일 이외 우선순위* 적용)
 - * 이용률이 낮은 자 > 점수가 높은 자 >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
 - 개정 : 선정시기(월 1회, 매월 15일까지), 선정방법(평일 이외 점수제* 적용)
 - * 임금수준, 기업규모, 취약계층, 예약취소건 등을 반영
- **시행일** 2020년 3월 1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
-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적용됩니다.
 -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2020년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2021년 1월 1일 ~ 31일에 이루어지며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
-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부과
 - 현행 :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 개정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 추가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8)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합니다.

*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3.4%

-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앞으로는 월 30~8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추진배경 지급단가 인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 주요내용
 - 지급단가 인상 :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월 30~80만원 지원
 - 중증여성 60 → 80만원, 중증남성 50 → 60만원, 경증여성 40 → 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

-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신청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 추진배경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장애인 노동자 서비스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 현행 : 시급 8,350원
 - 개정 : 시급 8,590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 확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도 신청 가능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

-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해 직무지도원과 사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
- 훈련기간의 최대 6개월 연장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됩니다.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 추진배경 중증장애인의 충분한 훈련기회 제공을 통한 구직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 연장
 - 현행 : 최대 7주
 - 개정 : 최대 6개월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2019년에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 2020년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총 400명을 지원합니다.
-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지원대상) 비장년 → 10개 유형(중증만 참여가능)장년(50세 이상) → 전체 15개 유형(중·경증 무관)
 - ② (지원수준) 인턴지원금 → 약정임금의 80%(최대 6개월, 80만원 한도)정규직전환지원금 → 월 65만원(고용유지시, 최대 6개월)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시행

- 추진배경 취업 사각지대에 소외된 특정 유형, 연령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사업체 참여조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인턴 참여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 * 기타 제한요건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확인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 2019년에는 동료지원가 200명, 서비스 대상 9,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나,
- 2020년부터는 동료지원가 500명, 서비스 대상 10,0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자 수도도 신설합니다.
-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10,000명
 - ② (지원수준) 수행기관 : 기본운영비 48만원, 취업연계수당 20만원/참여자 : 1인당 1일 3천원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구직연령대임에도 경제활동을 포기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구직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개별 동료상담
참여자 자기결정력, 책임성 확보

집단 동료상담
동료 간 관계형성, 자존감 회복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약물, 위생, 체력) 등

설명자료 제공
알기쉬운 설명자료 안내

취업관련 기관 탐방
지역사회 내 취업업체 방문

지역사회 활용
테마 프로그램, 축제, 문화 참여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하여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총 90만원)이 지급됩니다.
- 또한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참여하시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 추진배경 생활 형편으로 인해 빠른 취업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취업준비 위주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 취업 지원
- 주요내용
 -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 운영
 - 기존 과정 외 취업실무위주 프로그램 과정 추가
 -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총 90만원) 지급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02-2100-6147)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정책 제안 및 문화혁신 활동을 중앙뿐 아니라 지역으로 확산합니다.

- 성평등 관점에서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청년 주도로 정책을 제안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 청년들의 경력단절문제, 건강문제, 주거생활 등 분야별 양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추진합니다.

청년참여플랫폼 사업 추진

- 추진배경 정부와의 소통을 성평등 관점의 미래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청년주도 문화 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필요
- 주요내용
 - 청년참여플랫폼 운영
 - (정책제안) 정책추진단 2기 구성 및 정책 활동 이행점검 지원 등
 - (문화혁신) 캠페인 및 콘텐츠 제작 등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 확산
 - 성별 갈등 진단 분석 및 대응
 - 청년세대 생애사 연구를 통해 '성별 갈등' 근본원인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 4개 시도단위에서 지역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
- 시행일 2020년 3월 1일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을 이수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이 창업을 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할당(10% 이내)하고,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시에도 가점(3점)을 부여 합니다.
- 또한, 여성전용 창업보육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가점 5점)이 주어집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설명>보도자료>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창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MOU 체결('19.11.13.)
- 주요내용
 - 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우대사항
 - 여성가장창업자금 할당제(총 자금의 10% 이내)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고 시 가점(3점 부여)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고 시 가점(5점 부여) 등
- 시행일 2020년 1월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62)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19.4.30. 공포/20.5.1. 시행)에 따라, 새로운 혁신 기술이 포함된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촉진을 통한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 의료기기의 경우에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통하여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조직, 세포, 혈액 등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 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기준 도입, 변경허가 네가티브 도입 등이 추진됩니다.
- 제정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추진배경** 혁신의료기기 개발·출현* 등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 기회 제공 및 미래 성장동력 견인 등을 위하여 법률 제정 필요
* IT·NT·BT 기술 등을 접목한 혁신 의료기기(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공학 적용 제품 등)
-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기 지정)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식약처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 등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구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 (혁신의료기기 허가 지원) 개발 단계별* 심사제 도입, 우선심사 등
* 1단계: 제품설계, 2단계: 성능시험, 3단계: 임상시험계획, 4단계: 임상자료 검토
 - (혁신소프트웨어 맞춤형 허가체계 개선) 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GMP 운영, 변경허가 네가티브 적용,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으로 임상시험실시 등
- **시행일** 2020년 5월 1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추진배경**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제도 기반 구축으로 개발·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조화를 통한 제도 선진화 도모 등으로 혁신성장 견인
*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일반의료기기와 달리 조직·혈액 등 검체를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관리체계 구축 필요
- **주요내용**
 - (동반진단제품 동시심사) 의약품과 함께 개발된 동반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품과 동반진단의료기기의 허가·심사 동시 신청·심사 가능
 - (임상적 성능시험) 체외진단 특성에 맞는 임상적 성능시험 체계 도입, 시험기관 지정 근거 및 준수사항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근거 마련 등
 - (변경허가 네가티브 적용)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사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외에는 변경보고 실시
 - (국가표준품 제조·보급)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품의 국가 제조·관리 및 분양 근거 마련
- **시행일** 2020년 5월 1일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043-719-2802)

생활하수를 분석하여,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을 추정하는 ‘신종·불법 마약류의 사용행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신종 마약류 등장,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장기적인 마약류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시행 전 : 수사·적발·단속 건수를 기반으로 마약류 사용량 추정
 - * 마약류 실제 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 부족으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시행 후 :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마약류 사용행태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전향적 마약류 관리 업무 수행 및 관련 정책 개발
 - * 불법마약류 종류 및 사용량 패턴 분석을 통한 사용 현황자료 작성
-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마약류 관리 정책방향 설정 및 불법 마약류 예방·단속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 추진배경 불법마약류 오남용은 확산추세이나 실제 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는 전무하여 선제적 마약류 안전관리 대응책 수립 등에 한계가 있음
- 주요내용
 - 하수역학 기반 지역별·시기별 마약류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사용행태 자료 작성
 - * 전국 57개소 공공하수처리장 생활하수 중 마약류 함량 분석
 - 모니터링 결과분석·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한 마약류 사용 예측 모니터링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
- 시행일 2020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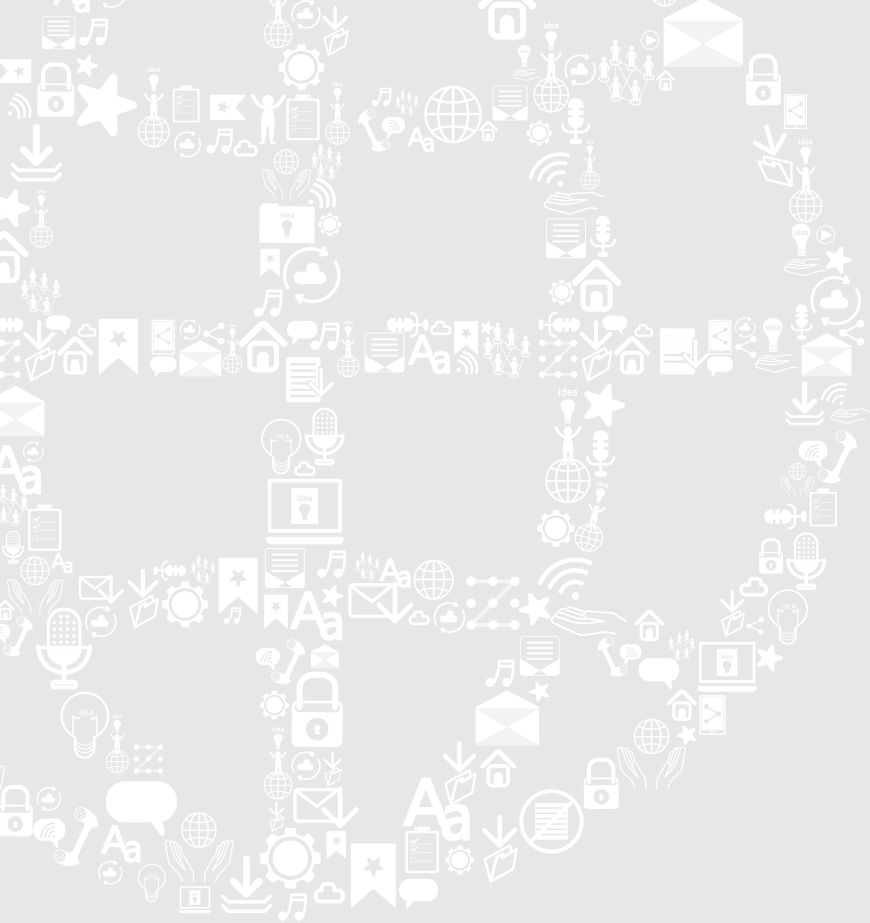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 043-719-289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의사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진료 환자나 의료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오남용 우려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합니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 설문조사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의 성별, 나이, 사는 지역, 소득 수준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 더불어,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마약류를 처방·투약 받는 경로, 횟수 등 다각적인 실태파악 및 통계 구축을 진행합니다.
- 향후,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 추진배경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 과다 투약 환자 등의 오남용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사 필요
- 주요내용
 - 의사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오남용 우려자 대상 선정
 -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실시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통계 데이터 구축 및 정책 활용
- 시행일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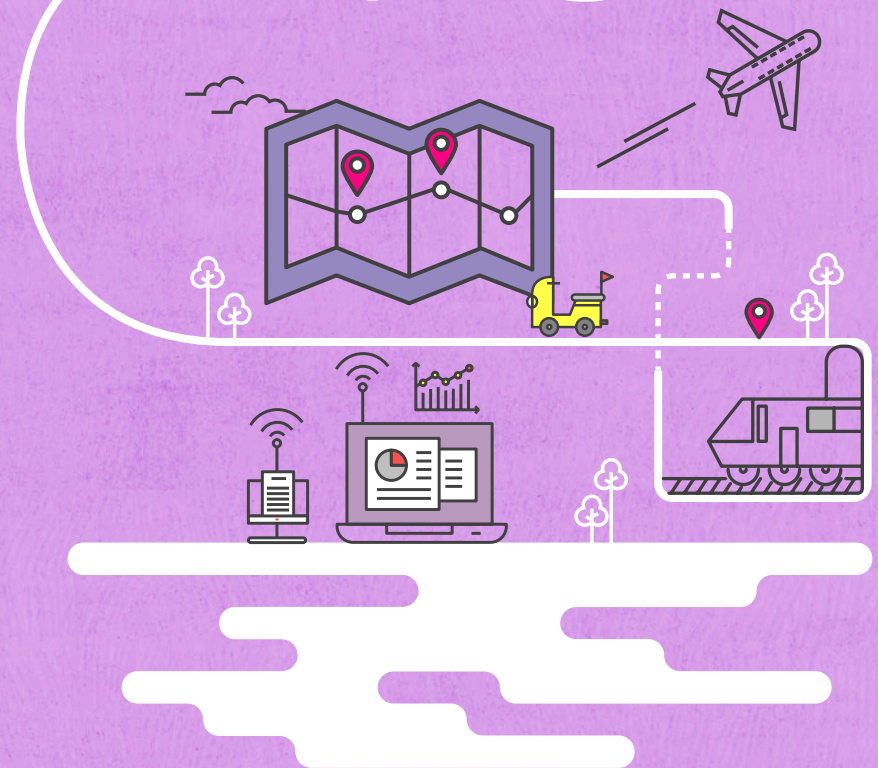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Land · Traffic

국토·교통



1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331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다소 미흡했습니다.



After

'20년 5월 1일부터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됩니다.



2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332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시행일 : 2020년 2월 21일

Before

부동산 실거래 신고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fter

'20년 2월 21일부터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 및 해제 신고 의무화 시장 질서 확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안전팀 ☎ 044-201-4750/4989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 매 2년 / 소유자 등이 점검자 지정
- 개정 : 준공 후 5년 내 최초, 매 3년 / 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공사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 초과하는 건축물

■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건축물관리법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건축물관리법 시행

- 추진배경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
- 주요내용
 -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절차 변경
 - 현행 :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 2년 주기 / 소유자·관리자가 점검자 지정
 - 개정 : 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 주기 / 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
 - 건축물 해체 허가 신설
 - 현행 :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철거 시 신고
 - 개정 :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 초과하는 건축물 해체 시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 감리 실시
- 시행일 2020년 5월 1일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044-201-4094)

연면적 1천㎡이상의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국토교통부, '19.6.21)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제도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됩니다.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에는 연면적 1천㎡이상의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2)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신고 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 실거래신고 기간 60일 이내

- 개정 : 실거래신고 기간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 30일 이내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입법예고>녹색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시행

- **추진배경** 국가 온실가스 목표상향, 에너지전환정책 등 여건이 변화되고, 악화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정책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2030년 모든 건축물(연면적 5백㎡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의 단계적 의무화가 2020년부터 시행
 - 2020년에는 연면적 1천㎡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도입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2019.8.2.)

실거래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 **추진배경**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 **주요내용**
 -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 현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신고
 - 개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신고
 - 해제 등 신고 의무화
 - 현행 : 〈신설〉
 - 개정 : 신고 된 사항이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시행일** 2020년 2월 21일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2-2064-8215)

우리나라 항공역사와 산업을 소개하고 체험과 교육·문화시설이 함께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2020년 개관합니다.

- 국립항공박물관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와 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김포공항에서 착공되었습니다.
 - 박물관은 4층 규모로 그 동안의 항공산업 발전 성과와 미래를 다양한 유물과 관람객 체험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 박물관 건축물은 2019년 말 완공되었으며 2020년 3월까지 전시물 설치를 완료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5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립항공박물관 인터넷 누리집: www.hanggong.or.kr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주요 내용

- **추진배경**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 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 (건물) 전시면적으로는 국립박물관 중 3위 규모
 - (위치)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맞은 편
 - (규모) 부지 15,000㎡, 연면적 18,593㎡(전시면적 7,128㎡), 지상4층
 - (주요 시설) 대강당(200석), 주차장(172대), 도서관, 식당
 - (주요 전시물) 자체개발 항공기(T-50, KC-100), 무인기(TR-100, EAV-2), 2인승 경량항공기(KLA-100) 등
- **시행일** 2020년 5월경 예정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044-201-4245)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합니다.

*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사서비스(이하 "항공교통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시범 운영에 따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 년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또는 계획)을 각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하게 됩니다.
- 2019.11.26 공포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2020~2022)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 동 제도의 정착을 통해 항공교통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투자를 증진하고, 항공안전 부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항공사 등
안전 투자공시제도
시범 시행

- **추진배경**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항공업계적 적극적인 안전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정부의 안전 규제활동만으로는 안전투자 증진에 한계
- **주요내용**
 - 해당 년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또는 계획)을 매년 1회 공시
 - 항공기 정비비·정비시설 투자비, 엔진·부품 등 구입비, 안전관련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교육훈련 투자, 안전증진 홍보 등에 대한 투자·지출
- **시행일** 2020년 5월(시범 시행)

모바일 승선권 확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3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됩니다.

-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0년 2월부터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전체 선사로 확대합니다.
 - 여객선 이용객이 '가보고 싶은 섬'(인터넷 또는 모바일App)에서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알림톡*을 통해 승선권 정보가 탑승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 * 알림톡으로 발행되는 모바일승선권을 모바일 App에서 승선권이 표출되도록 개선 예정('20년 상반기)
- 여객선 승선 시 스캐너로 승선권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 후 탑승하므로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권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섬여행이 더욱 편리해지게 될 것입니다.

모바일 승선권 확대 실시

- **추진배경**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확대하여 여객선 이용 편의 확대
- **주요내용**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및 시범 사업 확대 실시
 - ① (방침 확정)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방침 확정 및 인천지역 선사들과 시범사업 실시
 - ② (시범사업 확대 및 시스템 개선) 전 선사로 확대하고 알림톡으로 발행되는 모바일승선권을 모바일 App에서 승선권이 표출되도록 개선 예정
- **시행일** 2019년 2월 1일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악의적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신설〉	■ 악의적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한 감치 •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 •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 가능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	국세징수법 (‘20.1.1.잠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적용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통신판매업 등 31개 업종	■ 적용대상업종: 현행 업종에 '수도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회사 본부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 추가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조세법제제과 (044-215-413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를 상향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기업 7% • 적용기한: 2019년 12월 31일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대기업 2%(‘20년, 1년간) 중견 5% 중소기업 10% •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조세법제제과 (044-215-4133)
비과세종합저축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 가입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 적용기한 • 2019.12.31.	■ 가입대상 제한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적용기한 1년 연장 • 2020.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 세특례 신설	〈신설〉	■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 (대상) 공모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으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 (과세특례) 투자액 5천만원 이하 9% 분리과세 • (사후관리) 3년 미만 투자시 감면세액 추징 및 10% 가산세 부과 • (적용기한) 2021.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취권 양도 소득세 과세	■ 이취권* 양도에 대한 과세 -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취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 • 기타소득으로 과세	■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 양도소득으로 과세 - 다만, 이취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소득세법 (‘2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감정가액·환산취득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 • (적용대상)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 시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는 건물 • (가산세율) 환산가액의 5%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적용대상) 신축·증축(85㎡ 초과 증축에 한함) 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 시 * 취득일·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는 건물 • (가산세율)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5%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소득세법 (‘2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 (지정지역 외) - 기본세율* + 10%p 중과 • (지정지역 내) - 기본세율* + 20%p 중과 * 기본세율: 6% ~ 42% 〈단서 신설〉	■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20% 중과 대상 배제 • (지정지역 외) - 기본세율* + 10%p 중과 • (지정지역 내) - 기본세율* + 20%p 중과 * 기본세율: 6% ~ 42% -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20%p 중과배제 * 10%p 중과만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소득세법 (‘2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10년 • 고용유지 -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80% 이상 * 상속 개시 전 2년간 평균 고용 인원 -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 (중견기업은 120%) 이상 • 업종 유지 -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 •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5년내 10%) 금지 - 예외적 처분 허용 · 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 처분·대체취득시, 내용연수 도달 자산 등 〈추 가〉	■ 사후관리 완화 • 기간 단축: 10년 → 7년 •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완화 -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80% 이상 * 상속 개시 전 2년간 평균 고용 인원 -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 용인원의 100% 이상(중견기업도 동일) • 고용유지의무 이행시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 기준의 총급여액 기준 사용 가능 • 업종 유지 요건 완화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5년내 10%) 금지 -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필요시 등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잠정) <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신 설〉	■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 상속공제 혜택 배제 • ○ 요건 - ① (범죄행위)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 - ② (행위시기)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 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 ③ (처벌대상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잠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최대주주 보유주식 등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을 차등적용 <table border="1"><thead><tr><th>지분율</th><th>일반기업</th><th>중소기업</th></tr></thead><tbody><tr><td>50%이하</td><td>20%</td><td>10%</td></tr><tr><td>50%초과</td><td>30%</td><td>15%</td></tr></tbody></table>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적 용 배제(조특법)	지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	50%이하	20%	10%	50%초과	30%	15%	■ 기업규모 및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적용, 전반적인 할증률을 하향조정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일반기업</th><th>중소기업</th></tr></thead><tbody><tr><td>할증률</td><td>20%</td><td>0%</td></tr></tbody></table> ※ 조특법상 중소기업 할증배제 특례 삭제(상 증세법에 반영)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할증률	20%	0%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잠정)
	지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															
50%이하	20%	10%																
50%초과	30%	15%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할증률	20%	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 (공제율) 80% • (공제한도) 5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공제율) 100% • (공제한도) 6억원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 2019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잠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 특례 : 10년 또는 20년 연부 연납(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시) * 일반 연부연납: 5년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①(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이하 중견기업 ②(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대표 - (지분) 10년 이상 최대주주· 지분(상장 30%, 비상장 50%) 보유 - (대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 10년 이상*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 이사등을 승계하여 상속시 까지 계속 재직시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상속인) - 상속 전 2년 이상 기업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좌 동) •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①(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②(피상속인) - (지분) 10년 이상 → 5년 이상 - (대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 · 가업영위기간 중 50% → 30% 이상 · 10년 → 5년 · 10년 중 5년 → 5년 중 3년 ③(상속인) - (삭 제)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잠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 한도로 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적용 • (창업 업종요건) - 제조업 등 31개 업종* * (조특법§6③)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추 가〉 • (자금 사용요건) -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	■ 특례적용 요건완화 등 • (좌 동) • 업종 확대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 추가) • (자금 사용기한 연장)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잠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원칙: 10년 •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15년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10년 또는 15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 -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 할 재산이 명의개서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고 상속된 경우 - 국외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 의 명의로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제3자명의 재산을 상속·증여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 가〉	■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포함 • (좌 동)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확대 적용 - 제3자명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상속·증여 재산의 보유여부와 무관 - 상증법§45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 제의 경우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잠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	■ (과세표준) 주류 제조장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 ■ 세율 • 탁주 : 5%, • 맥주 : 72%	■ (과세표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 신고하는 수량 ■ 세율 • 탁주 : 41.7원/ℓ • 맥주 : 830.3원/ℓ – 생맥주는 2년간 20% 경감 • 세율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조정 ('21.3월 시행)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주세법 ('20.1.1.잠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신설)	■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원 한도)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능한 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	■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	국세기본법 ('20.1.1.잠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 (제10조) • 과학기술 R&D : 자체 R&D 비용, 위탁·공동 R&D 비용 • 서비스 R&D : 자체 R&D 비용	■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 과학기술 R&D : (현행과 같음) • 서비스 R&D : 자체 R&D 비용 + 위탁·공동 R&D 비용(다만,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가입대상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과세특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 2019.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2022.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 양도소득 계산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별도로 계산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불허	■ 양도소득 계산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계산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	소득세법 ('20.1.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1)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추가>	■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 대상자 – 신규사업자,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음료배달판매원 제외 •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비사업자→사업자로 등록 후 가산세 부과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소득세법 ('21.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종합 1억원, 근소 1.2억원 이하) 400만원(IRP 합산시 700만) • (종합 1억원, 근소 1.2억원 초과) 300만원(IRP 합산시 700만)	■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 (종합 1억원, 근소 1.2억원 이하)400만 (IRP 합산시 700만) → 600만원(IRP 합산시 900만 * 3년 한시운영)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추가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현행) 연 1,800만원 이내 →(개정) 연 1,800만원 + ISA 만기시 계좌금액 •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추가납입 당해연도에만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소득세법 ('20.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5)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 및 한도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 (한도) 2천만원 ■ 비과세 적용기한 • '20.12.31. 까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비과세 확대 •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추가 • 2천만원→3천만원 ■ 비과세 적용기한 • '21.12.31. 까지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 - 소득 구간 - 단독 400만원 이하 - 홀벌이 700만원 이하 - 맞벌이 800만원 이하 3 만원 ■ 부모 부양가구를 홀벌이가구로 인정 - 홀벌이 가구 70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 * 부모 각각 연소득 100만원 이하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상반기) 8.21 ~ 9.10 • (하반기) 2.21 ~ 3.10	■ 최소지급액 인상 - 소득 구간 - 단독 400만원 이하 - 홀벌이 700만원 이하 - 맞벌이 800만원 이하 10 만원 ■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홀벌이가구로 인정 - 홀벌이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 * 직계존속 각각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신청기간 조정 - 신청기간 • (상반기) 9.1 ~ 9.15 • (하반기) 3.1 ~ 3.15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일반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소득세 감면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20.1.1.)
설비투자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설비투자자에 대한 가속상각 대상자산 - 중소·중견기업·설비투자자산 전체 -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 취득기간: '18.7.1.~'19.12.31.	■ 가속상각 적용기한 연장 • 대상자산 : (좌 등) • 취득기간: '18.7.1.~'20.6.3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 2019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재·부품·장비 중소 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신설)	■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관련 기업에 공동출자 • 출자범위 : 피출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 • 세액공제 : 지분취득가액의 5%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2)
소재·부품·장비 외국 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신설)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M&A 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 인수방법 : 주식취득 및 자산·사업양수 • 세액공제 : 5%(중견7%, 중소1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2)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2% •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0.2%	■ 가산세 인상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5% •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 2019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 ('20.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3)
접대비 한도 상황	■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 - 일반기업 : 1,200만원 - 중소기업 : 2,400만원 • 수입금액 구간별 한도 - 100억원 이하 : 0.2% -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 초과분의 0.1%)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500억 초과분의 0.03%)	■ 접대비 한도 인상 • 기본한도 - 일반기업 : (좌동) - 중소기업 : 3,600만원 • 수입금액 구간별 한도 - 100억원 이하 : 0.3% -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 3천만원+(100억 초과분의 0.2%) -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500억 초과분의 0.03%)	법인세법 ('20.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출연금의 10%) • 적용대상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 기금 출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 • 적용기한 : '19.12.31.	■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 적용대상 확대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 적용기한 : '22.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2)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 현행 : 1000만원	■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 개정 : 1,500만원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시행령 ('20.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확대 등	■ 박물관 등 이전 시 양도소득세 특례 • (적용대상)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 • (적용요건)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중전시설)를 양도 * 신규시설 개관일부터 2년 내에 중전시설 양도 또는 중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시설 을 취득하여 개관(신축하는 경우 3년) • (양도세 특례)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 (적용기한) '19.12.31	■ 특례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 요건) -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 *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 내로 이전 • (특례 내용) - 2년 거치, 2년 균등 익금 산입 (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 (적용기한) '20.12.31.	■ 요건 완화 및 분납특례 확대 • (적용 요건) -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또는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 • (특례 내용) -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 (적용기한) '20.12.31.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 (적용 요건) - 공익사업시행으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특례 내용) - 3년 거치, 3년 균등 익금 산입 (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 (적용기한) '21.12.31.	■ 분납특례 확대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적용요건) -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 • (과세특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 8년 이상 임대: 50% - 10년 이상 임대: 70% 〈 신 설 〉	■ 적용기한 신설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대상) 사업안정고시 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 • (적용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음 • (과세특례) 양도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 양도세 감면: 15% - 대토 양도 시 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상 및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 (좌 동) •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상 - 양도세 감면: 40%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 종교법인·학교법인 제외 • 자산 100억원 이상 (추 가) ■ 위반시 가산세 부과 • 수입금액 × 0.07%	■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 (좌 동) •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잠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	■ 장애인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적용대상) - 장애인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자익신탁)하는 경우 (추 가) • (요건) - 장애인이 신탁의 수익자 -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 • (한도) 5억원 • (추징) 원금인출 등으로 신탁재산 감소시 증여세 추징 - 아래의 원금인출은 증여세 추징 제외 · 중증장애인 본인 의료비·특수교육비를 위한 인출 (추 가)	■ 장애인신탁 혜택 확대 - 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 (타익신탁)하는 경우 • (좌 동) • (좌 동) • 추징사유 완화 -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추가 · (좌 동) • 중증장애인 기초 생활비 용도 인출* * 신탁수익이 월 15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금인출은 '20년 상반기 적용 예정이며, 타익신탁은 '20.1.1.이후 잠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 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 : 위탁자	■ 신탁업자가 도시정비사업법 등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신탁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 : 수탁자로 변경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20.1.1.잠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 한연장 등	■ 소규모 개인음식업자 의제 매입 세액공제의 특례공제율 적용기한 • 19년 말까지 ■ 과세유통장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4/104	■ 소규모 개인음식업자 의제 매입세액공제의 특례공제를 적용기한 • 21년 말까지 ■ 과세유통장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2/102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20.1.1.잠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세금계산서 가산세 규정 정비	■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 2%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 : 2%	■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 1%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 : 2% (과다기재 부분만 가산세 적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20.1.1.잠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신설)	■ 등유, 부생연료, 용제를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 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1.잠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 매월 과세표준(제조장 반출수량)의 0.5%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현실화 • 0.5% → 0.2%로 축소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4.1.잠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신설)	■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에 불법행위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	관세법 (‘20.4.1.잠정)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6)
관세 납부불성실가산 세와 가산금을 납부지 연가산세로 통합	■ 납부불성실가산세①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 ■ 가산금 • (미납세액 × 3%)①+ 매 1개월 마다 월 0.75%②	■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①+②+3%③	관세법 (‘20.1.1.잠정)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신설)	■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총괄 •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관세조사에 대한 불복 등) 심의	관세법 (‘20.7.1.잠정)
		■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신설 • ①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1차 세관, 2차 관세청) → ②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 ③결과 통지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신설)	■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부담 • 공익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검사하는 경우 • 검사결과 수출입법령(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관세법 (‘20.7.1.잠정)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통고처분 면제 가능	(신설)	■ 통고처분의 면제 가능 근거 마련 • 신분, 전과, 법 위반 동기,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면제 가능 • 면제 기준 : 범칙금 30만원(추징금·물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법 (‘20.1.1.잠정)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신설)	■ 관세사의 의무 신설 •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 등록 및 징계시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 기록 • 수입 업무실적 관세사회 제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관세법 (‘20.4.1.잠정)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8)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FTA관세법 (‘20.4.1.)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215-4472)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 허용	■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 관세법상 세율 적용	■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 수입자가 적용세율 선택가능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FTA관세법 (‘20.1.1.)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215-4472)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의무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여부 선택 • 과태료 폐지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FTA관세법 (‘20.1.1.)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215-4472)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 어로·양식 소득을 합하여 3천만원까지 비과세	■ 어로, 양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은 5천만원, 양식소득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 • 어로·양식을 겸업하는 경우 최대 소득 8천만원 비과세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12.11)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상반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택연금 가입연령 인하	■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 ('19.11.13일 배포)	주택공법 시행령 ('20.1분기)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 시행	(신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의무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산업성장 기반 마련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보도자료	주금공법 시행령 ('20.1분기)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등급제→점수제)	■ 개인신용평가 체계를등급제 (1~10등급)로 운영	■ 개인신용평가 체계를점수제(1~10등급)로 운영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미정)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신규)	■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마련, '약관이용 가이드북' 신설 ■ 보험상품명 정비, 특약 부가체계 개선, '맞춤형 약관' 교부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보험약관 쉬워지고 착해집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20년 중)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525)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45)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신규)	■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를 한번에 조회 가능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19.12.30. 보도예정)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사업	(신규)	■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법률 구제책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및 부수사건(반환 청구 등) 소송대리 무료 지원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0년 1/4분기 보도예정)	채권추심법 법률구조법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3)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 연금 계좌(개인형IRP·연금저축 계좌)간 이동시 기존 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와 신규 금융회사 영업점에 모두 방문(총 2회) 필요 → '19.11.25일부터는 신규 금융회사 영업점회 방문으로 연금 계좌간 이체가 가능해지도록 간소화	■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도 PC·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연금계좌간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보도자료>'11.25.(월)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20.1월 말, 잠정)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2)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02-3145-5199)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신설)	■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중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하는 제도 ■ 대상회사: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 실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9.11.1.)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2693)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원화대출금 원화에수금 ≤ 100%	■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법인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 * 가계대출 100%→115%, 법인대출 100%→85%, 개인사업자대출 100%→100%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보도자료 ('18.7.11.)	은행업 감독규정 ('20.1.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실시	■ '20년 고등학교 2·3학년 실시 ※ ('21년) 고등학교 전학년 실시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홍보자료>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됩니다' 등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2020학년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17)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 확대	■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지원 금액 동일	■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 항목 지원금액 약 60% 인상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20. 3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 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 수업일수 • 220일(주5일제 미실시) • 205일(주5일제 주2회 실시) • 190일(주5일제 실시) ■ 휴업일 • 토요일·공휴일에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수업일수에 포함 ■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미인정	■ 수업일수 • 190일(주5일제 실시) ■ 휴업일 • 토요일·공휴일에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수업일수에 포함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 3.1.)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044-203-6730)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 4개월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 4~6개월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여성농어업인육성법 (‘20.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6)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동수당 지급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247만명)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263만명)	아동수당법 제4조 (아동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 (‘19.9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5)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희망자가 센터에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	■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다함께돌봄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서비스 이용신청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6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 당 지급 대상 확대	■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	■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 아동일시보호·보호치료시설보호종료 아동도 포함	아동복지법시행령 (‘20.1.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46)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족돌봄휴가 신설	(신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신설 ■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20.1.1.)
		☞ (참고)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여성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월 상한액 180만원	■ 월 상한 200만원으로 인상	고용보험법 ('20.1.1.)
		☞ (참고)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여성 > 출산·육아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35개소 운영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확대 • ('19년) 35개소 → ('20년) 60개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0.1.1.)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20년 경력단절예방정책 강화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4)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 서비스 신청 시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대기 신청 후 연계 시가지 제공받는 정보 부재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간편 신청 기능 추가 ■ 서비스 대기 순번, 예상 대기 기간 등의 관련 정보 제공	아이돌봄지원법 ('20.1월)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6366)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볼 공동체 활동 지원 부재 ■ 공동육아나눔터 218개소 운영 ■ 가족센터 운영	■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 ■ 돌봄 지원 강화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19년) 218개소 → ('20년) 268개소 ■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확대(착공기준) • ('19년) 5개소 → ('20년) 64개소	건강가정기본법 아이돌봄지원법 ('20. 상반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32, 6331)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지원	(신설)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가정의 임신·출산, 질병치료 시 의료 급여 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20.1월)
		☞ (참고) 한부모가족상담 : 1644-662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2)
청소년의 정책·지역 사회 참여기회 확대	■ 청소년정책위원회, 학교밖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에 청소년 미포함 ■ 청소년 참여포털을 통해 정책제안 한시적 운영	■ 청소년정책위원회,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청소년 신규 위촉 ■ 청소년 참여포털을 통한 정책제안 상시 운영 ■ 청소년 원탁회의 신규 실시	청소년기본법 ('20.1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8)
사각지대 없는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1개소 ■ 청소년동반자 1,313명 ■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시범운영 (5개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8개소 ■ 청소년동반자 1,377명 확대 ■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설치(9개소)(신규) ■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17개소)(신규)	청소년복지지원법 ('20.1월)
		☞ (참고) 지원문의 : 청소년전화 1388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 6276)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꿈드림센터 214개소 ■ 꿈드림센터 전용공간 52개소 ■ 찾아가는 출장건강검진 10개 지역(1,000명) 실시 ■ 방문 또는 우편으로 건강검진 신청	■ 꿈드림센터 222개소로 확대 ■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 지원 ■ 꿈드림센터 전용공간 72개소로 확대 ■ 찾아가는 출장건강검진 12개 지역 (1,200명) 실시 ■ 온라인(전자메일 등)으로도 건강검진 신청 가능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상반기)
		☞ (지원문의) 꿈드림 홈페이지 (www.kdream.or.kr), 청소년 전화(1388)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9)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80개소 운영 ■ 진로체험 프로그램 9개소 시범 운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규 30개소 확대 * ('19년) 280개소 → ('20년) 310개소 ■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전국 확대 * ('19년) 9개소 시범운영 → ('20년) 전국 310개소 확대 ☞ (참고) 인근 운영기관 찾기: www.youth.go.kr/yaca	청소년기본법 ('20.1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0, 6259)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되는 경우(입영일 14일 전 출산, 유산 포함)	■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소집기간 21일 전·후와 중복되는 경우 (입영일 21일 전 출산, 유산 포함)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20.3월)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770)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 입학연도 기준 '17세 이상 21세 미만'	■ 입학연도 기준 '17세 이상 42세 미만'. 제대군인은 최장 3년까지 입학연령 상한 연장 ■ (제대군인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20년 신입생 선발부터) 경찰청 교육정책과 (02-3150-0935)

03 국방·병무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잠정)	■ 「군인사법」상 병의 징계종류 <table><tr><th>현행</th></tr><tr><td>강등</td></tr><tr><td>영창</td></tr><tr><td>휴가제한</td></tr><tr><td>근신</td></tr></table>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 「군인사법」상 병의 징계종류 6가지로 변경 <table><tr><th>개정</th></tr><tr><td>(좌동)</td></tr><tr><td>군기교육</td></tr><tr><td>감봉</td></tr><tr><td>휴가단축</td></tr><tr><td>(좌동)</td></tr><tr><td>견책</td></tr></table> -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을 도입 - 감봉·견책 신설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군인사법개정 보도자료	개정	(좌동)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좌동)	견책	군인사법 (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02-748-6818)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개정																							
(좌동)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좌동)																							
견책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병 자기개발 활동 지원 <table><tr><th>2019년</th></tr><tr><td>1인당 연간 최대 5만원</td></tr><tr><td>본임부담, 비용의 50%</td></tr></table>	2019년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	본임부담, 비용의 50%	■ 병 자기개발 활동 지원 확대 <table><tr><th>2020년</th></tr><tr><td>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td></tr><tr><td>본임부담, 비용의 20%</td></tr></table>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도 국방예산 확정	2020년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본임부담, 비용의 20%	- ('20.1.)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02-748-5122)														
2019년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																							
본임부담, 비용의 50%																							
2020년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본임부담, 비용의 20%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18년: '17년 최저임금의 30% <table><tr><th>구분</th><th>봉급액</th></tr><tr><td>병장</td><td>405,700</td></tr><tr><td>상병</td><td>366,200</td></tr><tr><td>일병</td><td>331,300</td></tr><tr><td>이병</td><td>306,100</td></tr></table>	구분	봉급액	병장	405,700	상병	366,200	일병	331,300	이병	306,100	■ '20년: '17년 최저임금의 40% <table><tr><th>구분</th><th>봉급액</th></tr><tr><td>병장</td><td>540,900</td></tr><tr><td>상병</td><td>488,200</td></tr><tr><td>일병</td><td>441,700</td></tr><tr><td>이병</td><td>408,100</td></tr></table>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도 국방예산 확정	구분	봉급액	병장	540,900	상병	488,200	일병	441,700	이병	408,100	- ('20.1.)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구분	봉급액																						
병장	405,700																						
상병	366,200																						
일병	331,300																						
이병	306,100																						
구분	봉급액																						
병장	540,900																						
상병	488,200																						
일병	441,700																						
이병	408,100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예비군 훈련 보상비 : 3.2만원 ■ 지역예비군훈련 실비 : 1.3만원 • 교통비 : 7천원(+116.14원/km) • 중식비 : 6천원	■ 예비군 훈련 보상비 : 4.2만원 ■ 지역예비군훈련 실비 : 1.5만원 • 교통비 : 8천원(+131.82원/km) • 중식비 : 7천원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20.3.)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4)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 마스크 지급일수 : 18일 (연간 약40만개)	■ 공기청정기 신규보급 : 2,631대 ■ 마스크 지급일수 : 50일(101만개)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20.3.)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4)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최전방 부대 근무 병사 124,250명 ■ 일용품 현금지급액: 연 68,976원	■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20년 입대 병사 전체 ■ 캠프셔츠 신규 보급 ■ 일용품 현금지급액: 연 94,440원	- (‘20.1.)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6)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 시행	(신설)	•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려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 등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 •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 으로 편입되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복무	대체역법 (‘20.1.1.)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1932)
다음해 입영일자 조기결정 시스템 구축·시행	■ 다음해 '입영월' 본인선택 • 본인선택 접수기간 : 3~11월 • 입영일자(부대)를 12월에 확정, 의무자 안내	■ 다음해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 (‘입영월’ 선택 폐지) • 본인선택 접수기간 : 7~11월 * 다음연도 군소요 접수: 6월 말 • 입영일자 확정시기를 최대 5개월 단축 (12월→7월) • 입영부대는 입영일자 선택과 동시에 전산으로 분류	제도 개선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확대	•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 확진자 검사장 방문, 신체검사 실시 후 병역감면	•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 확진자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병역감면 • 대상 질환 :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관해 후 5년이상 경과한 혈액암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20.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와 (042-481-2918)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 민원상담소(09:00~18:00) 근무시간 민원상담 가능 • 민원신청과 상담 별개의 절차로 진행	• 단순상담 24시간·365일 민원상담 가능 • 대화형 민원신청 시스템으로 상담과 동시에 민원신청 가능	제도 개선
			병무청 정보기획과 (042-481-2646)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 병역의무이행 온라인민원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보훈처에서 병적증명서 요청 시 병무청 방문하여 종이증명서 제출	•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 없이 민원 신청 가능 • 보훈처에서 병적증명 신청 동의 시 전자증명서 자동 전송	제도 개선
			병무청 정보기획과 (042-481-2652)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원 확대	• 교통비 : 116.14원/km	• 교통비 : 131.82원/km	병역의무자여비 지급 기준 (‘20.1.1.)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15)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제대군인 전직지원 서비스 인프라 확대	■ 전국 7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인천, 춘천, 창원 추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반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7)
민원지원 서비스 강화	■ 정부24 즉시발급 민원 미존재	■ 정부24,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민원 신청 및 결과 확인 • 정부24 즉시발급민원 10종 • 처 자체 페이지 제공 온라인 발급민원 9종	'20.2.29.(예정)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 (044-202-5238)
나만의 예우찾기 서비스	■ 홈페이지 자기정보조회 (현재 약 9종 조회가능) ■ 자격 변동 시 수혜내용의 변경사항 예측 불가	■ 보훈서비스 수혜사항 안내 (보훈수혜:46종, 타법지원:37종) ■ 자격 변동 시 수혜내용 예측(모의계산) 가능	'20.2.29.(예정)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 (044-202-5238)

04 행정·안전·질서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유지에 지방자치 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신설)	■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생활SOC 전대 허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유재산법 개정 보도자료	국유재산법 (‘20.7월.잠정)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성범죄자의 농어촌 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신설)	■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장소는 1년간 농어촌민박 사업 금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	농어촌정비법 (‘20.7월)(잠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신설)	■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 강화 ■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 1시간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 통>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	농어촌정비법 (‘19.12.3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의무자를 식물을 재배하는 자로 규정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의무자에 식물 병해충을 조사·연구한 연구자를 포함 ■ 연구자가 병해충을 최초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신고대상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추가 ■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법령>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20.3.11.)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신설)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 시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보도자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20.8.21.)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61)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린이 놀이기구	■ 기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작 시 새로운 모델로 검사 ■ 사용가능한 목재를 EN350의 해외 목재로 규정	■ 기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작 시 유해물질 검사 면제 ■ EN350과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사용 가능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20.4.1.)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574)
전동보드	(신설)	■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 ■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하여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요구사항을 추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20.2.14.)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1)
휴대용 사다리	(신설)	■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 (스텝 스톨)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을 신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20.6.1.)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60)
건전지	(신설)	■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기준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20.11.14.)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8)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활동공간 (5개) 1. 어린이놀이시설 2. 어린이집(보육실) 3. 유치원(교실) 4. 초등학교(교실, 학교도서관) 5. 특수학교(교실) (신설)	■ 어린이활동공간 (7개)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기타유원시설 경영 영업소 (붕붕뽀뽀 등 3종 설치 영업소) 7.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완구) 제공 영업소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1. 녹 및 크랙 금지 2. 중금속 농도 제한(납 600ppm 이하 등) 3. 실내공기질 농도 제한 (TVOC 400μg/m³ 이하 등) 4. 기생충란 발견출 * 환경안전관리기준 미준수시 지자체는 개선명령 시행, 개선명령 미이행시 벌칙 부과 ■ 확인검사 이행(신·증축, 수선시)	환경보건법시행령 (‘19.12월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 1,000분의 3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 1,000분의 3→1,000분의 6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 (고용노동부 고시) (‘20.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 이주여성이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 입국전후 교육참여(현지 사전교육,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업무 상담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연계	다문화가족지원법 (‘20.1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열람가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상반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 공공, 교육, 민간사업장, 문화예술 분야별 신고센터 개별운영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및 분야별 신고센터 운영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1월)
			법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점검단 (02-2100-616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신설)	■ (신고의무 기관확대)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추가 ■ (취업제한 기관확대) • 국제학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5.27.)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8)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 어선안전조업국 교신 미가입 : 영업정지 30일/ 45일/ 60일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어선안전조업법 (‘20.8.28.)
	■ 위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 통지 : 영업정지 30일/ 45일/ 60일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험 및 대파신호에 불응한 자 : 영업정지 경고/ 10일/ 15일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기관이 없는 항포구 출입항: 영업정지 경고/ 10일/ 15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044-200-5527)
	■ 기항지 인근 신고기관에 미신고 : 규정 없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미청취 : 면허정지 견책/ 30일/ 45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자 : 규정 없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조업교육 미이수자 : 영업정지 경고/ 10일/ 15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광선,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 의무화	(신설)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선박을 신규 발주 시 친환경선박 (LNG추진선 등) 발주 의무화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 뉴스)보도자료)관광선, 친환경선박으로 본격 전환한다 (2019.10.28.)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20.1.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6, 5838)
우수 선화주의 인증제도 시행	(신설)	■ 화주의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 법령정보)입법예고)“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9.11.18.)	해운법 (‘20. 2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0)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도서민 여객선운임의 20%지원 ■ 도서민 소유의 5톤미만 화물차량 운임의 20% 지원	■ 단거리 생활구간(8,340원 미만) 운임 50%까지 지원 확대 ■ 도서민 소유 생활차량(5톤미만 화물차량) 운임 50%까지 지원확대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섬마을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크게 낮춘다 (2019.6.28.)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20. 1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3)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 도서민이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해 발권 및 승선 시 매번 신분증 제시	■ 도서민 운임지원 시스템에 사진 정보를 등록한 도서민은 시스템상의 사진정보와 실물 대조를 통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승선권 발권 및 여객선 승선 (단, 도서민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신분증을 소지하여함)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도서민 여러분, 여객선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2019.10.22.)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20. 1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3)
어선에서 사용 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 어선에서사용가능한 소화기의 종류 • 어선용 소화기 • 육상용 소화기	■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의 종류 다변화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총톤수 10톤 미만 소형기선 기준” 및 “어선설비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1. 잠정)	어선법 (‘20.2.1.)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044-200-5523)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	(신설)	■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 ■ 5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 ■ 일정 규모의 경미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 ■ 변경 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가 가능	항만법 (‘20. 6월 예정)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 단일선저(홀겹 바닥)구조 허용	■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 의무화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2019.2.1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20.1.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규정 없음	■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여객정원 2.5퍼센트 이상)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도 꼭 비치해야 합니다(2019.6.4.)	선박구명설비기준 (‘20.1.1.)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20.1.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 소비자가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매 가능	■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향료나 색소를 추가하여 만든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나만의 제품’을 구매 가능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 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국가자격 시험 시행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 및 제3조의2 등 (‘20.3.14.)
			화장품법 제3조의4 (‘20.3.14.)
			식품의약품 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2-719-3403)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확대	■ 기존 외자 국제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인쇄물 형태로 접수 및 평가함에 따른 입찰기업의 비용 및 시간 등의 부담이 발생함 ■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의 보관 및 관리에 있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	■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입찰기업의 인쇄물 제본비용 및 방문에 따른 비용의 절감 효과 발생 ■ 외자 국제입찰의 제안서 접수부터 평가까지 e발주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국제입찰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임	-
			조달청 해외물자과 (042-724-7311)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신설)	■ 외국국적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국내거소신고한 한 재외동포에 한해 운전면허를 발급	도로교통법 (‘19.12월말)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597)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경찰서에 서 사전통지서 교부 후 지방경찰청에서 취소처분 결정 후 우편 통지	■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장(경찰서)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3.1.)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장비 관리 강화	(신설)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20.3월말)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252)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 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만 처벌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	도로교통법 (‘19.12월말)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597)

소방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6층 이상 모든층 - 600㎡ 이상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000㎡ 이상 인 중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600㎡ 미만 요양병원·정신 의료기관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8.6.) * 소급 ‘22.8.31.까지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 종합정밀점검 대상 - 5천㎡ 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아파트는 11층 이상만 해당)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면적 무관) - 5천㎡ 이상 + 물분무등 소화설비 (아파트 포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8.14.)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소방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체점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30일	■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7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8.14.)
			소방청 화재예방과 (042-205-744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 강화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 -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
			소방청 화재예방과 (042-205-7447)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 위험평가 실시	■ 신종 업종의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로 신고만으로 영업가능	■ 신종 업종을 화재위험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업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법령개정시점
			소방청 화재예방과 (042-205-7452)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	■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 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하여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을 보장 →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피난안내정보가 미흡하여 피난안내 내용 인식 어려움을 개선	2020.4.22.
			소방청 화재예방과 (042-205-7452)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특허심사 진행	■ 융·복합 기술에 대해 3인의 심사관이 협의하여 심사 진행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융·복합분야의 출원이 증가하여 이에 적극 대응 • 심사관 눈높이가 달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하여 심사 일관성 제고 ☞ (참고) 특허청홈페이지> 보도자료>특허 청, 융·복합 기술분야 합의형 협의 심사 실시	- (‘19.11.1.)
			특허청 인공지능· 빅데이터심사과 (042-481-5800)
온라인 전송 SW 보호	없음	■ SW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도 실시 에 포함 • 방법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특허권의 효력 제한 •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는 침해임을 알면서 한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침 ☞ (참고) 특허청홈페이지> 보도자료> SW 온라인 전송 특허로 보호된다 (계재예정)	특허법 (‘20.3.11.)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042-481-5736)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정해진 항목을 기재해야 함	■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경우 명세서 제출 형식을 자유롭게 제출 가능하도록 함 • 명세서 작성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출원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자출원시 PDF, 한글파일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제출 가능	특허법 시행규칙 (‘20.2월(잠정))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042-481-5399)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신청료 감면	(신설)	■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 출원에 대해 2024년까지 우선심사 신청을 할 경우 연간 10건까지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0.상반기)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신설)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하면 전액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명단공표 대상 ■ 부정청구등 신고 시, 신분보장 및 보상금·포상금 수령 가능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20.1.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044-200-7613)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 (대상) 모든 외부강의등 ■ (기한) 외부강의등 실시 전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 (대상)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기한)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 (참고)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보도자료 > 2019년 11월1일 보도자료	청탁금지법 (‘20.5.27.)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개선으로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제공	■ 창작준비금 지원자 수 : 5,500명 ■ 소득 심의 대상 부양의무자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 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 제출서류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확 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해당자에 한해)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 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 창작준비금 지원자 수 : 12,000명 ■ 소득 심의 대상 부양의무자: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참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사업안내>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복지법 (’20.1.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 2722)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 노인, 유소년)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유소년)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2급) 취득 시 필기 (필수 특수체육론, 선택과목 4과목) → 실기·구술 → 연수 (90시간)를 거쳐야 함	■ 필기시험 및 연수 간소화 ■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 실기·구술 → 연수(40시간)로 간소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 1인당 연 8만 원 지원	■ 1인당 연 9만 원으로 지원금 1만 원 인상 ☞ (참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	문화예술진흥법 (’20.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19)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 최소 지원기간 7개월 ☞ (참고)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svoucher.kspo.or.kr)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6, 3137)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립공원 탐방인프라/ 프로그램 확충	(확충)	■ (대피소 판매물품)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응급 및 안전용품만 판매 ■ (무장애 탐방인프라) 무장애 탐방로 누적 기준, '19년 42개소 39.3km → '20년 47개소 45.3km, 무장애 야영지 누적기준, '19년 104동 → '20년 123동 ■ (스탬프 투어) '20. 하반기부터 전국 22개 국립공원 연계한 스탬프 투어 신설	-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26)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 마리나업의 등록, 변경, 양도, 양수, 합병 시 수수료 납부	■ 수수료 납부 폐지 ☞ (참고)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종료된 입법예고>"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8.12.26, 의안번호 201762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월 중)
선박·계류시설 사용 (등록)기간 삭제	■ 마리나업 등록 시 사용권 등 확보 필요 • 마리나선박 : 3년 이상 사용권 확보 • 계류시설 :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 확보	■ 마리나대여업 등록 시점에서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면 등록 가능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11.1.)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75)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승선신고서 작성의무 없음	■ 사업자의 마리나선박 승선신고서 작성, 제출 및 보관 의무화 ☞ (참고)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종료된 입법예고>"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8.12.26, 의안번호 201762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7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75)

문화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신설)	■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권고 ■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등 보고	문화재보호법 (19.12.25.)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관련 규정 없음	■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음	문화재보호법 (20.5.27.)
문화재매매업 자격 요건 완화	(신설) (변경) ■ 문화재 관련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하도록 함	■ 자격요건 완화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도 문화재매매업 영위 가능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한 사람도 매매업 자격요건 충족 -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문화재보호법 (19.5.27.)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신설)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개관 •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정보·디지털 콘텐츠 공유를 위한 거점공간 운영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042-481-4923)
			해당없음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4)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 기존 9개의 직불제 운영 •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경영이양, FTA 피해보전, FTA 폐업지원	■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농업, 경관보전)를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 •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 소규모농가 대상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운영 •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 –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 가능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보도자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5.1.)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강화	■ 62개 품목	■ 쌀,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5개 품목 추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농어업 재해보험법 ('20. 2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
	■ 모든 농가 보험료 50% 국고 지원	■ 영세농가 70%, 일반농가 50% 보험료 국고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 2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조건 개선	■ 정책자금 지원조건 • 최대 3억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정책자금 지원조건 • 최대 3억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지침 ('20.1.1.)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 제외) 으로 확대	■ 지원대상 • 졸업후 농업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농업계 대학 3~4학년 재학생	■ 지원대상 • 졸업후 농업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농업계 및 비농업계 대학 3~4학년 재학생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농식품 취창업 의무장 학금 사업시행지침 ('20.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8)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축산물 이력제 적용품목 : 소·돼지 • (신설) ■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등 축산물 이력번호 공개범위 : 수입산 소·돼지	■ 닭·오리, 계란 등 가금산물까지 축산물 이력제 적용 확대 ■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 (소, 돼지, 닭, 오리) 거래 시 이동신고 의무가 부여 ■ 국내산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등으로 공개 범위 확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축산물이력법(법률 제16114호)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0.1.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6)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65세	■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70세로 변경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법령정보> 최근제개정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7월, 잠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8)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어촌빈집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 위대한 빈집 정비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명령 및 작권 철거 가능	■ 정비명령 전 사전 조치로 「공익신고 → 빈집조사 → 행정지도, 철차 신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	농어촌정비법 (‘20.7월, 잠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8)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 •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환액 • 3,000만원	■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 •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환액 • 4,000만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2020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시행지침 (‘20.1.1.)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9)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신설)	■ 등록정보의 유효기간(3년) 도입 - 최초 및 변경등록 후 3년동안 경영정보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등록정보 말소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 (‘20.7.1.잠정)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044-201-1410)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 의무화	(신설)	■ 사업시행자는 정책자금 지원시 농업인 신청정보와 경영체 등록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장이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신청정보와 등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 • 불일치하는 경우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 (‘20.7.1.잠정)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044-201-1410)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 친환경축산물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친환경축산물 : 유기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인증으로 운영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축산법 개정 보도자료	축산법 (‘20.8월, 잠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제도 도입	■ 일시납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회에 걸쳐 분할납부 • (집정안)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에 걸쳐 분할납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초지법 개정 보도자료	초지법 (‘20.6.1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신설)	■ ‘고령친화식품 표준’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19.12)하여, ■ 2020년부터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본격 실시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제도시행 보도 자료(예정)	(‘20.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21)
원유의 국가잔류물질 검사 제도 도입	(신설)	■ 현행 집유장 책임수 의사 검사에 의한 원유 잔류물질검사에 국가잔류물질검사를 추가하여 안전 관리 강화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홍보>정책분야별 자료 >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농식품부·식약처 공동 고시) 제정 알림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 (‘20.7.1.)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8)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45)
김치의 날 제정	(신설)	■ 11월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 *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법령시행 보도자료(예정)	김치산업 진흥법 (2020년 하반기, 잠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2)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신설)	■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기술 개발 신규 중점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20.1~2.)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8)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농기계 분야 연구 개발 지원	(신설)	■ 국내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농기계 및 부품의 국산화 신규 중점 지원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20.1~2.)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8)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신설)	■ 농식품부 특화 현장 수요 및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특수대학원 설립 등 인력 양성 중점 지원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19.12.)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8)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신설)	■ 농업·농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을 통한 국민 참여형 R&D 신규 추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20.1~2월)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8)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신설)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농업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신규 지원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20.1~2.)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8)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 친환경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 경영 관련 자료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 제출서류 추가 •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증명자료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20.1.1.)						
		<table border="1"><tr><td>과정명</td><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tr><tr><td>교육주기</td><td>2년에 1회</td></tr><tr><td>교육시간</td><td>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td></tr><tr><td>교육기관</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tr></table>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도입 보도자료 (‘19.6.28.)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산직불금 인상	■ 직불금 단가: 연 65만원/어가	■ 직불금 단가: 연 70만원/어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15.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3)
해양공간에서의 이용·개발 계획에 대한 적합성협의 필요	신규	■ 해역별 해양공간계획 수립(~’21) 및 해양 용도구역(9종) 설정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강화한다	해양공간계획법 (‘19.4.18.)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48개 계획 및 지구·구역 등 개발계획 수립 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실시 •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여장 및 해양에너지 • 해양공간에서의 광물, 골재 등의 채취,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제정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1)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계란 냉장차량 지원 (차량 구입비) 사업	(신설)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대상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59)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신설)	■ 수입김치의 유통 중 보관온도의 준수여부, 보관창고의 위생 등 유통관리 실태 조사를 하여 위생 취약 부분을 개선	수입식품법 (‘20.1월~12월)
		■ 유통관리 실태조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함으로써 수입김치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신뢰도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043-719-6259)
원유의 국가잔류물질 검사 제도 도입	(신설)	■ 현행 집유장 책임수의사 검사에 의한 원유 잔류물질검사에 국가잔류물질검사를 추가하여 안전 관리 강화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 (‘20.하반기)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정책분야별 자료>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농식품부·식약처 공동 고시) 제정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45)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8)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	■ 목재 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	목재이용법 (‘20.1.9.)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75)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 사무실 구비 ※ 사무실을 별도 정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에 사무용 건축물로 보도록 하고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례 10-0447]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7.9.)
		■ 전문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 • 1천만원~3천만원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4-481-1841)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신설)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 의무화	산림보호법 (‘20.6.4.)
		■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 인력기준 •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전문가를 배치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7.9.)
		■ 인력기준 완화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등록 가능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4-481-1841)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신설)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를 위한 판정표 및 해제절차 마련	산림보호법 (‘20.초)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개정 시 신설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8844)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 일원화	산림보호법 (‘20.초)
		■ 판정표 내 조사인자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개정 시 반영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8844)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17·18·19년도 업종 (발전·증기·폐기물처리·철강·비철·유기화학·석유정제·무기화학·정밀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시행	20년도 적용 업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시행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21년까지 단계적 시행)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보도자료 (‘19.11.6)	
관리체계	개별 지자체별, 개별 오염원별 관리	- 권역중심의 광역적·체계적 관리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5년 주기) - 권역내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구성·운영 (중앙·지방, 민간)	대기관리권역법 (‘20.4.3.)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044-201-7584)
배출시설 관리	사업장 배출허용기준관리 (농도 관리)	-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대한 총량관리제 추가 시행 5년마다 연도별로 사업장별배출허용총량 할당 - 권역 내 배출권 거래 가능 5년 할당 기간 내 최적방지시설 설치 및 TMS 부착 의무 - 기본부과금 면제, 농도기준완화(3종만) 등 특례	대기관리권역법 (‘20.4.3.)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044-201-7582)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	- 일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 경유자동차에 저공해조치명령 가능(조례)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명령가능 (조례)	- 특정경유자동차(5등급 경유차량) 배출가스 관리 강화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강화 및 종합검사 의무화 - 기준 초과차량 저공해조치 의무 - 상시 운행제한 가능(조례) - 통학차량, 택배차량의 경유차사용 금지 (‘23.4월 시행) - 특정건설기계 관리 강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는저공해 조치 완료된 건설기계·경유차만 사용	대기관리권역법 (‘20.4.3.)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8, 6933)
기타 배출원 관리	(신규)	- 항만·선박 저감대책 수립 - 공항 대기개선헌획 수립 -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오염물질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명령 가능(조례) -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 및 공급·판매 의무화	대기관리권역법 (‘20.4.3.)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044-201-6926, 6903)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 배출 시설 수질기준 항목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폐수 배출시설 부착 대상 수질자동측정기기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수질 자동측정기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 처리업자 보유 측정기기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측정기기	-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 수질 기준 항목 - 총유기탄소량(TOC) - 폐수 배출시설 부착 대상 수질자동측정기기 -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보유 측정기기 -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기기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물환경보전법 (‘20.1.1.)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7)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혈액·배설물 등이 함유된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	-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 냉장차량으로 운반,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 - 경과기간에 따라 병원과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계약 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기저귀를 위탁 처리가능	폐기물관리법 (‘19.10.29.)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강화)	- 국가차원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 -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국가적 대응, 야생 동물-사람-가축간 상호작용하는 주요질 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확립 등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부 생물자원기관건립 추진단 (044-201-7259)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신설)	■ (정의·원칙)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공급·조절·문화·지지서비스) ■ (평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자연자산 및 생태계서비스를 평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주요 보호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	생물다양성법 ('20.6월)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2)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신설)	■ (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로 피해가 많은 지역 ■ (방식) 공모를 통해 10개소를 선정,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 등 저감사업 진행 예정	-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키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1)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제품(GR인증)	• 법률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 명시(온실가스 감축 기여 추가) •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 하반기)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1)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 매년 3월(3.16~3.31) 일시납부시 10% 감면	• 국민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동일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 추가 - 1월 : 1.16~1.31 (자동차세 일시납부기간과 일치) - 3월 : 3.16~3.3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0.1.16.)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4)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 전국 확대	■ 수도권지역 ■ 의무구매 임차비율 70%	■ 전국 시행 ■ 의무구매·임차 비율('20년 100%)	대기환경보전법 ('20.1.1.)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신설)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대기환경보전법 ('20.4.3.)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 개정 의결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3)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강화)	■ 배출허용기준 30% 이상 강화 ■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 123만 8,000kCal/hr 이상 흡수식 냉난방 기기 등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1.)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보도자료>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6)
질소산화물 대기배출 부과금 부과	(강화)	■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 추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20.1.1.)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6)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 조기폐차시 보조금 전액(100%) 지급	■ 조기폐차 시 70%(1단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2단계)를 추가 지급	대기환경보전법 (‘20.1.1.)
		☞ (참고)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3)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이행점검 평가	(신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른 국가 감축목표의 범부처 이행점검 및 평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19.10.22.)
		☞ (참고) 환경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기후전략과 (044-201-6647)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 농기계 구입, 농기구 수리시설·생산품 공동저장소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지원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 농기계 구입 및 유지관리, 농기구 수리 시설·생산품 공동저장소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지원 - 주민의 마을환경 개선활동 지원 추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20.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6)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개선	① 보유·대여한 시설·장비 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③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④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⑤ 보유 현금 ⑥ 입차 사무실·창고 등의 보증금	① 보유·대여한 시설·장비 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③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④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⑤ 보유 현금 ⑥ 입차 사무실·창고 등의 보증금 ⑦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19.11.12.)
			환경부 토양지하수와 (044-201-7180)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신설)	■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 성능검사 의무 ■ 성능검사 판정 후 5년마다 갱신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 제공 ■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하게 성능검사를 받은 자 등에 벌칙부과	물환경보전법 (‘20.10.17.)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44-201-7049)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신설)	■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도입 •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연 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검사	가축분뇨법 (‘20.3.25.)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0)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신설)	■ 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 ■ 유망 중소 물기업 지원을 통한 국내 물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대	물산업진흥법 (‘20.1월)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2)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 연단위로 고정(일 최대사용량 x365일)된 사전 하천수 허가량에 대해 사용료 부과	■ 실제 하천수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하천수 사용량을 달리하여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하천수 제도개선 보도자료	하천법시행령 (‘20.1월 이후)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환경부 고시) (‘19.12월) (‘20.1월, 잠정)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044-201-7652)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차량 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PM10, 이산화탄소) ■ 차량 내 공기질 측정 권고 (2년에 1회)	■ 차량 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조정·강화 (PM10→PM2.5 관리 전환 및 농도기준 강화) ■ 차량 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1년에 1회)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한다’ 보도자료	실내공기질 관리법 (‘20.4.3.)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관리대상 잔류성오염 물질 확대	■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물질 중 26종의 취급(제조, 수출입, 사용)을 관리	■ 미나마타협약의 신규 가입 - 협약에서 제조/수출입을 금지하는 수은첨가제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취급 금지 - 수은 수출 시 환경부 장관의 수출승인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미나마 타협약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0.2.20.)
		■ 스톡홀름협약에서 2종의 화학물질을 신규 등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도 수용(비준) 잔류성물질법에 따라 제조, 수출입,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에 협약 신규물질 추가 (상업용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 단쇄염화파라핀)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정책자료>스톡홀 름협약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 황 함유량 0.05 ~ 3.5%	■ 황 함유량 0.5%이하 (국내용 경우는 기존과 동일, 0.05%)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 뉴스>보도자료>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된다 (2019.6.2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1.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5대 대형 항만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지정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5%(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5%)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1%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 령정보>행정예고>“황산화물배출규 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8.28.)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20.9.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마련	(신규)	■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제작시기 및 엔진출력 기준으로 마련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 법령정보>입법예고>“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2019.11.19.)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20.1.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윈도우 7 기술지원 종료		■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위협에 노출 ■ 운영체제 교체 및 업그레이드 권장 ☞ (참고) 보로나라 홈페이지 (www.boho.or.kr)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20.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1)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양수, 합병 가능	(신설)	■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양도·합병 절차 기준을 신설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업무안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19.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1)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신설)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농업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신규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공고 (‘20.1~2.)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8)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 신설	(신설)	■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 (참고)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알림소식>법령정보>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20.1.1.)	‘20년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20.1.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2)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벤처투자촉진법 시행	(신설)	■ 벤처투자조합 제도 통합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 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총 운용자산(자본금+운용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 기준으로 조정 ■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벤처투자 촉진법 (‘20. 6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2-481-1643)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은 39세이하의 청년층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을 내년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 1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042-481-1688)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신규)	-	■ 중소기업부는 스타트업의 창업초기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단계 까지 패키지형 일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설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 2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042-481-4523)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규사업을 통해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	■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제품의 인증기준 및 제품 개선 지원 사업 부재	■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제품 및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 지원 ■ 개발된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융합신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 지원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인증 기술개발사업 (‘20. 1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2)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신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재산 : 임대·매각 수익계약, 장기임대 가능 (최대 50년) ■ 국가·지자체 재산 : 임대료 산정 및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20.3.11.)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044-203-409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기간 연장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사신청 가능	■ 조사신청 기간 변경 • 1년 이내 → 2년 이내 ※ (참고)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정보·자료>무역구제법령	불공정무역조사법 (‘20.6.1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044-203-5881)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수출입에 대한 벌칙수준 변경	■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행위에 대한 벌칙수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수준 변경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외무역법」상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변경 ※ (참고)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정보·자료>무역구제법령	불공정무역조사법 (‘20.7.1.)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044-203-5881)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 냉열이용 시 발생하는 천연가스는 자가소비만 가능	■ LNG냉열이용자를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수요자에 포함	도시가스사업법 (‘20.3.10.)
		■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가스사업자와 자회사 등에 제한적으로 처분 가능	
		■ 가스공사는 제한적 처분을 위한 냉열이용자에 천연가스를 공급 중단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업무마당> 최근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7)
신규사업을 통해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	■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 특례 제품의 인증기준 및 제품 개선 지원 사업 부재	■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제품 및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 지원	규제샌드박스융합 신제품인증기술 개발사업 (‘20년. 1월)
		■ 개발된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융합신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2)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 기존 종합쇼핑몰은 상용품·규격화된 제품위주로 거래되어 혁신조달업체의 진입장벽이 높고 혁신제품의 등록·거래에 어려움 존재	■ 조달청이 단가계약하는 기존 소품몰형태가 아닌 열린장터(Open Market) 형태의 혁신제품 전용몰을 구축	-
		● 혁신조달업체는 개발한 제품을 자유롭게 등록·판매할 수 있어 판로개척에 큰 도움	
	■ 정부기관이 필요로하는 혁신수요와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부재 → 정부기관과 업체 모두 수요탐색, 제품탐색에 상당한 기간 소요	■ 정부기관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향상된 제품·솔루션을 쉽게 비교검색하여 구매가능	
	■ 종합쇼핑몰, 벤처나라, 나라장터 등 개별적인 시스템을 각각 검색하여 정보획득	■ 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정부부처의 한 단계 높은 수요제시 → 제시된 수요를 기반으로 기업은 제품·솔루션을 개발 → 특허 거래전문가 등 전문가pool을 통한 수요공급 매칭으로 정보비대칭 해소하여 수요와 공급간 신속한 매칭 지원	
		■ 인공지능(AI) 기반의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종합쇼핑몰, 벤처나라, 나라장터에 존재하는 제품정보, 업체정보, 입찰공고 내용 등을 통합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편의를 크게 제고	조달청 혁신조달과 (042-724-7347)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별도 실시 (신설)	■ 실태조사, 보안감사 통합 실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20.2.)
		■ 통합실태조사 결과 제언서 반영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02-2079-6983)
방산원가 구조 개선	■ 실 발생비용 보상	■ 표준원가 개념 도입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등 (‘20.1.1.)
		■ 복잡한 이윤구조(13개) - 수출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이윤 구조 개선	
	■ 선검증·후적용의 원가업무 방식	■ 선적용·후검증의 「성실성 추정 원칙」 도입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02-2079-6932)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신설	(신설)	■ 공정위「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방산 분야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작성/배포 ■ 하도급계약 형태별(확정/정산) 원가검토 및 제출 기준 등에 대한 개선내용을 사용 지침에 포함	신설 (‘20.1.1.)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02-2079-6958) 한국방위산업진흥회 (02-3270-6033)
		☞ (참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방산정보>업무서식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 심사 감점 방안 마련	(신설)	■ 불공정행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의 행위 이력에 대한 감점 신설 ■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무효 또는 취소 확정 전이라면 평가에 반영	국가계약법 (‘19.11.28.)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27)
민간분야 국방 참여 확대 및 국내 기술협력 강화	■ TRA 조사 대상 :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 TRA 조사 대상 : 기존 대상외에 일반 정부출연연구소로 확대	기술성숙도평가(TRA) 업무지침 (‘20.1.1.)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보도자료> 민간 기술자원을 국방 연구개발로 활용 확대	방위사업청 기술품질원 기획총괄팀 (055-751-5409, 5418)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납품시기 지연 시 하도급대금 증액 또는 조정신청 가능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 사유 •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등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이 증액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 되는 경우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 사유 확대 •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등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추가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 확대 •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추가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하도급법개정안 보도참고자료(19.10.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5.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	(신설)	■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연간 48만원 상당) 공급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홍보>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농어업법 (‘20.1.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성생식기, 흉부(유방)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는 필수 급여, 그 외는 비급여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해당 질환자 및 의심자등까지 건강 보험 적용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등 (‘20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① (신설) ② 아들·미혼의 딸30% / 결혼한 딸 15% 부양비 부과율 적용 ③ 24세↓·65세↑·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 대상 근로소득 공제 ④ 기본재산공제액(대도시) 5400만원(중소도시) 3400만원(농어촌) 2900만원 ⑤ 주거용재산한도액(대도시) 1억원(중소도시) 6800만원(농어촌) 3800만원	①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② 남·녀 동일하게 10% 부양비 부과율 적용 ③ 25~64세에 근로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④ 기본재산공제액(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농어촌) 3500만원 ⑤ 주거용재산한도액(대도시) 1억2000만원 (중소도시) 9000만원(농어촌) 5200만원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보도자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20.1.1.)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 소득하위 20~70% 어르신 : 월 최대 25.3만원 지급	■ 소득하위 4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 소득하위 40%~70% 어르신 : 월 최대 25.5만원(예상) 지급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12월말 예정)	기초연금법 (‘20.1월, 잠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원	■ (‘19.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1)전체 수급자	■ (‘19.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0.) 주거·교육·차상위계층 수급자 → (‘21.) 전체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20.1월, 잠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	■ 인지지원등급 받기 전까지만 센터 이용 ■ 센터 이용시간 1일 3시간	■ 인지지원등급자도 센터 이용 가능 ■ 센터 이용시간 1일 최대 7시간	치매관리법 (‘18.12.13.)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044-202-3532)
치매전문병동 추가 설치	■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치매전문 병동 설치	■ 공립요양병원 5개소 치매전문병동 추가 설치	치매관리법 (‘18.12.13.)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044-202-3537)
치매공공후견 지원 확대	■ 후견심판절차비용, 중앙지원단 운영비 지원	■ 후견활동비, 후견인 양성교육, 광역지원단 운영비 신규 지원	치매관리법 (‘18.9.20.)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044-202-3531)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 공공병원 필수의료 예산 지원 • 시설·장비 지원 : 994억 • 우수인력 파견 : 50명 ■ 지역내 의료복지 연계 • 퇴원환자 의료복지 연계 지원 : 국립대병원 10개소	■ 공공병원 필수의료 예산 지원 확대 • 시설·장비 지원 : 1,097억 • 우수인력 파견 : 55명 ■ 지역내 의료복지 연계 확대 • 퇴원환자 의료복지 연계 지원 : 국립대병원 12개소, 지방의료원 15개소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꼭 필요한 병원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지역의료 강화대책)’ 보도자료	(‘20.1.1.)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3)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 (신설)	■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기관에서 왕진 서비스 제공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19.6.1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기준 완화	• 일자리수: 64만개 • 공익활동 참여기간 : 9개월 • 사회서비스형 참여기준: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일자리수: 74만개 • 공익활동 참여기간 : 최대 12개월 (10~12개월) • 사회서비스형 참여기준: 만65세이상	(‘20.1.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044-202-3477)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실시	(신설)	■ 대상자 : 제1형 당뇨 환자 ■ 급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급여액 : 기기별 기준금액 및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1.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신설)	■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 (청원경찰, 경비원 등) 24시간 상주 배치	응급의료법 (‘20.7.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7)
응급실 보안장비 배치	(신설)	■ 응급실 시설 기준에 CCTV 등 보안장비 추가	응급의료법 (‘20.7.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7)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 자활사업 자립성과금 지원 • 월 최대 20만원	■ 자활사업 자립성과금 지원 • 월 최대 7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3)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1,500명 대상으로 월 88시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방과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4,000명 대상으로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이용권(바우처) 제공 ※바우처 단가 12,960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마당>보도자료>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 (주간활동) 바우처 대상자 4,000명으로 확대 ■ (방과후활동) 바우처 대상자 7,000명으로 확대 ※ 바우처 단가 12,960원 →13,350원으로 인상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9)
사업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 개별사업 간 중복지원이 금지되어, 해당사업의 정해진 서비스만 제공 가능	■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서비스내용을 다양화함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음 •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 됩니다" 보도자료	노인복지법 (‘20.1.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은둔형, 우울형 노인 에 대한 특화서비스 확대	■ '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추진 중 * ('14년) 60개소, 3,605명 → (‘17년) 80개소, 3,853명 → (‘19년) 115개소, 6,900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수행기관 확대 • 115개소 → 164개소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년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 됩니다" 보도자료	노인복지법 (‘20.1.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을 통한 결핵 조기 발견 및 사각지대 해소	■ 일부지역(전남, 충남) 노인결핵 검진 시범사업 실시 ■ 결핵안심벨트 7개소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 외상노인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 ■ 결핵안심벨트 10개소 지원	결핵예방법 (‘19.6.12.)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043-719-7312)
결핵관리전담요원 확대 배치	■ (PPM의료기관)258명 ■ (보건소)259명	■ (PPM의료기관)297명(+39) ■ (보건소)668명(+409)	결핵예방법 (‘19.6.12.)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043-719-7325)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변경	• 66개국 지정	• 65개국으로 변경* - 콜레라: 예멘, 필리핀 등 19개국 - AI: 중국 4개 성·시 - 메르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10개국 - 폴리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9개국 - 황열: 아프리카, 중남미 42개국(동일) - 페스트: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 에볼라바이러스병: 콩고민주공화국 ※ 감염병별 중복국가 포함 ☞ (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감염병> 해외질병 > 검역감염병 발생지역	검역법 (‘20.1.1.)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043-719-9207)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 (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자료> 보도자료 발표 예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043-719-7128)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지원 확대	■ 인플루엔자 3가 백신 지원	■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지원 ☞ (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자료> 보도자료 발표 예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0.1.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50)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 주 최대 52시간제 • 300인 이상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의무화 • 신설	■ 주 최대 52시간제 • 50인 이상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의무화 (단, 일요일 제외) • 300인 이상 적용('22년까지 5인 이상 단계적 적용)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근로기준법 ('20.1.1.)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5, 797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5(13)만원(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5인 미만) 월 15만원(5~30인 미만) 월 13만원 지원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1(9)만원(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5인 미만) 월 11만원(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참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업소개 (지원대상·요건 등)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 ('20.1.1.)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 (044-202-7783)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table><tr><th>구 분</th><th>실업자</th><th>재직자</th></tr><tr><td>신청방법</td><td>방문</td><td>온라인</td></tr><tr><td>훈련비</td><td colspan="2">1~3년간 200~300만원</td></tr><tr><td>자부담률</td><td>약 30%</td><td>0~40%</td></tr></table>	구 분	실업자	재직자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훈련비	1~3년간 200~300만원		자부담률	약 30%	0~40%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통합,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에서 신청 ■ 5년간 200~300만원 훈련비지원 ■ 자비부담률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로 개편 ※(참고) 고용노동부>보도자료>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20.1.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3, 7322)
	구 분	실업자	재직자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훈련비	1~3년간 200~300만원														
자부담률	약 30%	0~40%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신설)	■ 이직 예정인 노동자를 위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 ※(참고) 고용노동부>보도자료>고용정책 기본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20.5.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18)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신설)	■ 법의 보호대상 확대 •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가 보호범위에 포함 ■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 (단, 대표이사 책임은 '21.1.1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앱 등을 통해 물건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20.1.16.)
		■ 도급인의 책임범위 •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 ■ 도급인의 처벌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7)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제한 •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은 인가시 사내도급 가능	■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제한 •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 물질 제조·사용 작업은 원칙적 사내도급 금지 - 단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의 전문 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을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건설업 안전 강화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공사 규모 120억원 이상	■ 건설업 안전 강화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 건설공사 도급인 의무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 함유량 등 비공개 :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사업주 자체판단) 되는 경우 비공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단, '21.1.16 시행) • 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 함유량 등 비공개 :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 ※(참고) 고용노동부)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공포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현행 : 1,048,000원	■ 변경: 1,078,000원 ※(참고)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부담기초액 고시 ('20.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신설)	■ 취업패 II유형 참여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포함 ■ 지원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 ※(참고) 고용노동부)정책자료)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 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0.1.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신설)	■ 청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 ※(참고) 고용노동부)보도자료)사업 관련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5)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 현행: 분기당 27만원	■ 변경: 분기당 30만원 ※(참고) 고용노동부)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중장년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1.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5)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 저소득 노동자('19년 기준 월 평균소득 251만원 이하) * 일반 노동자 평일만 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 ■ 사업주 주관 워크숍 및 교육 목적으로 단체이용 (평일)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평일/주말/연휴/성수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평일/주말/연휴/성수기) ■ 산재보험 특례적용자(노동자가 없는 1인 사업자) 평일 이용 ■ 부서장, 팀장, 사내동호회 회장 등 주관 단체전목 및 휴양목적 확대(평일)	근로복지기본법 (‘20.3.1.)
		☞(참고) 근로복지서비스>뉴스/공지사항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	(미적용)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1.)
		☞(참고)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지급단가: 월 30~60만원 - 경증남성 30, 경증여성 40, 중증남성 50, 중증여성 60	■ 지급단가: 월 30~80만원 - 경증남성 30, 경증여성 45, 중증남성 60, 중증여성 80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20.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8)
		☞(참고)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 지원단가 • 시간당 8,350원 * 수어통역 및 점역교정 근로지원인(9,980원)	■ 지원단가 • 시간당 8,350원 → 시간당 8,590원 * 수어통역 및 점역교정 근로지원인(10,270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0.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참고)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 현장훈련기간 • 최대 7주	■ 현장훈련기간 • 최대 7주 → 최대 6개월	장애인 취업지원업무 처리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0.1.1.)
		☞(참고)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시행	■ 중증장애인 지원 (신설)	■ 중증장애인 + 장년경증 포함지원	장애인 취업지원업무 처리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0.1.1.)
		☞(참고)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 지원대상 9,600명 ■ 기본운영비 1인 20만원	■ 지원대상 10,000명 ■ 기본운영비 1인 48만원 ■ 참여자 수당 1인당 1일 3천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1.)
		☞(참고)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 지원규모 : 8,000명	■ 지원규모 : 9,000명 * 1유형 8,000명, 2유형 1,000명 ■ 저소득층 지원 유형(2유형) * 저소득층 특화 취업준비 위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최대 90만원)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0.1.1.)
		☞(참고)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	(신설)	■ 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창업 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우대 : 여성가장창업자금 할당,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및 창업보육실 가점 부여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설명>보도자료>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0.1.1.)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8)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 청년주도로 성평등 관점의 정책 제안과 문화혁신	■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 중앙 → 지역으로 확산	양성평등기본법 (‘20.3.1.)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100-6147)

10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건축물관리법 시행	• 정기점검 시기 - 준공 후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 • 점검기관지정 절차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기관 지정 • 수시점검 대상 - 안전이 우려되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 정기점검 시기 - 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 • 점검기관지정 절차 - 지자체장이 점검기관 지정 • 긴급점검 - 안전이 우려되는 모든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20.5.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0)
건축물 해체	• 건축물 철거 시 철거신고	•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고, 해체계획서 제출 후 전문가 검토 시행 및 감리자 지정 등	건축물관리법 (‘20.5.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044-201-4989)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신설)	■ 연면적 1천㎡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도입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입법예고>녹색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20.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094)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간 단축	■ 실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	■ 실거래신고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법 (‘20.2.2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해제신고의무화	(신설)	■ 신고 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 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9.8.2.)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신설)	■ (위치) 서울 강서구 하늘길 177(김포공항 내) ■ (일정) 2020년 5월경 ☞ (참고) www.hanggong.or.kr	(‘20.5월경)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2-2064-8215)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 시제도 시범 시행	(신설)	■ 항공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20.5~) ■ 사업자별 안전투자 및 지출에 대한 실적과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	항공안전법 (‘20.5, 시범운영)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45)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모바일 승선권 확대	■ 여객선 이용객이 사전에 모바일을 통해 승선권 예매 후 현장발권 창구를 방문 하여 신분증 제시 후 승선권 수령	■ 여객선 이용객이 모바일을 통해 승선권을 예매하면 알림톡을 통해 승선권 정보를 예매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별도의 발권창구 방문 없이 모바일 승선권 제시 후 여객선 승선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20.2.1.)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3)

